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교재

- 강사용 -

2012. 4

여 성 가 족 부

본 보고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I . 총 론	1
1.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5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23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25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40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56
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통계	73
II . 각 론	101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03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105
2)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125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65
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167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192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33
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235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267
참고문헌	303

I 총 론

- | | |
|---------------------|----|
| 1.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 3 |
|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 23 |
| 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통계 | 73 |

1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1. 정책은 중립적인가?	5
2. 정책에서의 성별요구도	7
3. 성인지적 감수성을 위한 정책사례	9
4. 마무리 말	22

1.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1. 정책은 중립적인가?

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 공공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향해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 기대이며, 이렇게 형성된 정책을 중립적이라고 말한다. 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적 합리성 모델은 정책은 중립적이며 산출된 정책은 최선의 집합적(collective)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책의 중립성은 종종 시빗거리가 된다. “결국 부자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간다”, 또는 “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왜 이렇게 도와야하느냐”는 식의 비판은 정책의 중립성을 불신하는 단적인 표현이다.

정책 결정의 합리주의 모델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자는 문제의 상황과 해법이 초래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합리성 모델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판받는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은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종종 지배계층의 이익과 주류적인 사고방식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또 정책결정과정이 순수하게 합리적 절차에 의해 유도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정책결정자의 자기 이해에 따른 판단이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분석자가 모든 상황을 꿰뚫고 통합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정책의 중립성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 논점은 ‘가치’와 ‘사실’의 문제이다. 합리주의 모델은 정책결정과정이 가치는 배제한 채 사실로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가치와 사실이 그렇게 명확히 분리되지는 않는다. 정책 참여자들이 자신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사실’로 인식 되는가”에는 이미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신문기사에서 보는 내용을 예로 들어보자. “10대들에 의해 영아(嬰兒)가 버려지고 있다”가 문제로 인식될 때 이것은 사회 문제 현상이며 사실이라고 주

6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교재 – 강사용

장할 수 있다. 그러면 “10대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어떠한가? 아이가 버려지는 현상은 동일할 수 있지만 무엇을 문제 사실로 인식하는가는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의 형태도 달라진다. 전자는 아이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우선적으로 전제함으로써 아이를 버리는 10대의 비윤리성과 무책임을 문제로 삼게 한다. 대안 역시 아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10대에게 윤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후자에서는 10대 출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학교공부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조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미비 등을 문제로 주목할 수 있다. 이 경우 마련할 수 있는 대안 역시 문제 인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일하지 않는 청년’과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청년’이라는 두 가지 제목의 기사가 있다고 했을 때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일하지 않는 청년’에 포함된 의미는 일자는 많은데 청년들이 게으르거나, 너무 따지길 좋아해서 ‘좋은’ 직장이 아니면 가길 싫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럴 경우 정책은 게으른 청년이나 좋은 곳만 바라는 청년을 계몽시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청년’ 문구는 청년은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직업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정체감도 얻고 싶은데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매우 낮은 임금 또는 인간적 존중이 부족한 상황,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일자는 장기적으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정책은 한국사회의 일자를 계층, 연령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확대하는 것이고, 그 일자가 좋은 일자가 되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엇이 문제로 등장하는가’는 사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가 함께 결합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과정이 사실만이 아니라 가치를 다루는 과정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정책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치를 생산하도록 관여한다는 점을 목과하기 쉽다. 정책은 중립성을 지향한다. 하지만 중립성을 도달하려는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실현된 현실로 여기면 법과 정책은 오히려 가치 편파적이 되고 가치를 겨룰 수 있는 통로마저 제한할 수 있다. 정책이 중립적이 되도록 추구하는 것은 중립적이라는 믿음에서가 아니라 정책이 전제하고 또 만들어 내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것을 정책 문제의 출발로 삼는 것이 될 수 있다.

2. 정책에서의 성별요구도

일반적으로 ‘젠더’와 관련된 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여러 사회 제도와 체계 안에 성별에 대한 사회 규범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젠더규범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도 전제되어 있으며,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정책, 건설정책, 관광정책 등 일반 정책 역시 젠더를 특정하게 구조화하는 효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정부 정책을 주제별로 구분하더라도 노동정책, 복지정책, 도시정책, 지역개발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등 모든 정책 영역이 젠더를 구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젠더를 구성해낸다.

어떤 주제가 정책의 대상으로 되는가는 사회적 요구 및 그 수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장애인정책, 다문화정책 등이 그 예이다. 인권에 대한 요구가 상승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이제는 ‘왜 우리가 장애인 정책을 시행해야 하느냐’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결혼을 통해 이주함으로서 인구변화가 발생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정착하고, 자신들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중이다.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이 놀림의 대상도 되곤 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여성운동의 힘으로 여성과 남성이 처한 현실과 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이 수용되면서 각 사회정책분야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차별이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고 제도가 마련되어 왔다. 물론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실제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때론 역풍을 맞아 침체되기도 한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제도를 보완하고, 실제적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넓혀 가도록 해야 한다.

결정된 정책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 역시 젠더를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행위가 작용한다. 성별 규범과 가치는 “무엇을 문제로 발견하는가”, “어떤 대안을 제안 하는가”, “무엇을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하는가”,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등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각 과정

8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교재 – 강사용

은 이것의 (재)생산에 영향을 준다.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역시 젠더화된 주체이며, 이들은 각각의 정책과정을 젠더화 시키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책의 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정책참여자의 성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제안된다. 정책행위자들이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개인이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정책의 성평등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이란 누구에게나 합당한 기준이기 보다는 힘의 역학에서 우위에 있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규범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편성’의 편향적 성격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참여자가 다양해지는 것은 정책의 가치 편향성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참여 자체로 정책결정의 성평등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책형성과정, 정책참여자, 산출된 정책 모두가 젠더규범과 젠더화된 주체를 구성하는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젠더화된 가치와 규범이 정책 구성에 관여하며 정책은 젠더를 사회적으로 구성하는데 개입한다.

성 중립적인 정책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나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 차별적인 현실을 간과함으로써 성별 불평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젠더 관점에서 정책수행의 전체 과정(입안, 집행, 평가)을 평가하고, 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분석해야 한다.

성 분석은 프로젝트/프로그램에 젠더 이슈를 주류화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성별화된 불형평(inequities)과 불평등(inequalities)을 조사하고 불형평의 구조적 요인을 드러냄으로써 성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정책은 성별 차이와 불평등의 형태를 인식하고 변화를 강조하는 성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조정, 변화될 수 있다.

성 분석은 정책, 프로그램, 법률, 예산 등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성 분석은 정책이 성 중립적이지 않다고 전제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영향의 결과는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성 분석은 여성과 남성들 내에도 인종, 연령, 학력, 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지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성 분석은 젠더가 다양한 차이와 사회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범주일 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

는 원리라고 보고, 정책 과정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인지 통계가 다른 요인(인종, 소득, 직업 등)을 고려하여 수집, 활용되어야 한다.

정책의 성 분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성하는 성역할이 사회적으로 구성 된다는 것이다. 성역할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다른 기대와 역할, 일, 가치를 갖도록 하며 그에 따른 평가는 여성과 남성의 위계와 권력관계를 결정짓는다.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자원에 대한 접근과 혜택도 달라지는데, 그 결과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interests)와 요구(needs)를 갖게 된다. 젠더 이해(gender interests)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몰리뉴(Maxine Molyneux)는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젠더 속성과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성평등을 요구하는 전략적인 이해(strategical interests)와 현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실용적 이해(practical interests)로 구분하였다. 모저(Moser)는 몰리뉴의 이해 개념을 발전 시켜 이해가 요구로 변환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실 중심적인 실용적 젠더 요구와 전략적 젠더 요구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실용적 젠더 요구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지금까지 수행해오던 다중 역할을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이다. 이러한 실용적 젠더 요구에 따르는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즉각적으로 여성의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성별권력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반면 전략적 젠더 요구는 사회에서 주어진 여성과 남성의 역할, 권리, 수혜에서의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며, 세력화를 통한 여성의 지위 향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젠더 요구와 구분된다.

3. 성인지적 감수성을 위한 정책사례

1) 보이지 않는 가치와 정책

국가에서 이미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 중에서 해당 사안이 정책이나 사업으로 시행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인색한 측면이 많았고,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그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따라서 여

성주의자들은 여성이 하는 일이나 여성이 피해자가 된 사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켜 그 의미를 부각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시행하였다.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는 각종 돌봄노동, 가사노동에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부여되었고, 여성이 피해자인 각종 폭력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저하여 왔다.

① 모유 수유의 가치와 정책

한 예를 들어보자. 스미스(Smith, 2005)는 각 국에서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모유 수유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계산하였다. “모유 수유의 경제적 가치와 공공정책의 왜곡”이라는 제목 하에 스미스는 호주의 연간 모유 생산량은 호주 총 식량 생산의 6%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1992년 호주의 모유 생산은 3,300만 kg이었으며 모유의 시장 가치는 18억에서 25억 호주달러(약 1조 6천억원에서 2조 3천억원)로 중요한 식량인 모유가 국민 경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국민 식량 생산과 소비 활동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1980년대 호주에서 모유 수유의 증가는 경제 생산성을 감소시킨 반면, 1960–1970년대 모유 수유율의 급격한 감소는 유아 식품과 건강 비용 지출을 통해 국민 식량 생산과 경제적 성장을 향상시켰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해 여성주의자들이 그 시장가치를 밝혀냄으로서 여성노동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였던 노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처럼 한국의 여성이 수유하고 있는 모유량을 계산하고 식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앞으로 알아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모유는 중요한 식량일 뿐 아니라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건강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모유 수유의 중요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모유시간 확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실질적인 사용, 해당기간동안의 경력 인정, 휴직기간동안의 일정비율의 임금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2) 주제별 사례와 성인지적 이슈

여기서는 정책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안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자. 총 7개 분야의 정책이나 사업의 성별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서 향후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시설: 육교설치 등

도시 건설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육교 설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육교 설치는 건축물일 뿐 젠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육교 설치를 통해 자동차 이용자는 도로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보도 이용자 역시 큰 불편은 없다. 그러나 목발이나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동반한 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계단만 있는 육교가 시내에 대한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아이를 동반한 여성은 시내 중심에 있는 서점이나 교육 장소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림 1]의 왼쪽 사진에 나타난 투명한 계단 역시 장애인, 노인, 환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 등이 불편하지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다. 어떤 길이의 치마를 입고 다니는가는 여성의 개인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계단설치를 위한 정책은 계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오른쪽 사진처럼 가파르지 않고, 밑에서 올려다 볼 수 없는 계단으로 바뀐 것은 다양한 사용자가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성 중립적이라고 간주되는 정책이 어떻게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최근에는 도시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지자체가 점차 육교를 없애가고 있으며, 육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녀시간의 차이를 고려한 화장실 개수나 남성의 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시설의 차원에서 젠더를 고려한 정책결과이다.

[그림 1] 젠더적 관점에서 본 계단 설치 비교



② 지역개발: 개발과 성매매, HIV 확대 등

갯벌 간척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 주체나 지방 정부는 갯벌을 근거로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집행해야 한다. 보상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납부영수증 등의 소득증빙서류에 근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여성 어민은 조개 채취 등 갯벌 맨손 어업에 종사하고 시장을 통해 채취한 물건을 직거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 기준으로는 여성이 소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 사례는 정책 집행 과정에 적용된 원칙이 경제활동에 대한 성별화된 가치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갯벌 어업을 보상할 방책이 없다는 것은 공식영역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인식하지 않거나 보조적인 위상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라오스의 동서 회랑(Corridor) 프로젝트(1999)이다. 그동안 개발 원조사업 중 라오스의 도로 인프라 확충을 원조하던 호주국제개발청(AusAid)과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의 한계점을 점검해보았다. 그 동안 도로 및 교통 인프라가 사회적/경제적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져 원조가 많이 제공되었고, 그 결과 여행조건이 보다 편안해지면서 연료를 수집하거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포장도로로 인한 먼지 오염 감소 등은 청소 및 빨래에 투여되는 여성의 노동을 감소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건강과 교육,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여성과 어린이의 보건과 교육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도로확충으로 인해 (국경)이동이 쉬워짐에 따라 도로망이 확충된 지역을 중심으로 성 산업이 확대되고, HIV/AIDS 전염이 증가하며, 여성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도 증가하였다. 즉 지역개발의 장점도 있지만 특히 성병, 에이즈 등의 전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HIV 전염, 인신매매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프로젝트 초기부터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지역에서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는 여성의 점유율 분석을 하였고,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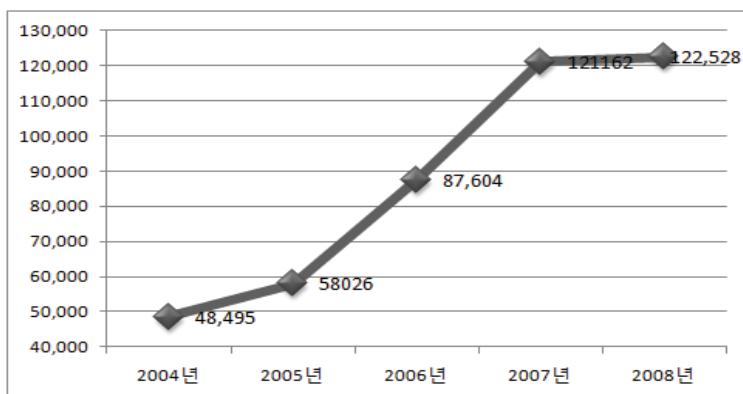
여성에 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건설 단계에서부터 원조를 제공받는 수원국 정부와 함께 성병 및 에이즈 문제/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시행하였다.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계약자에게 개발

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전략을 시행하였다. 고속도로를 따라 관련 게시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NGO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출처 : 인프라 및 도시 개발 -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스웨덴 Sida)

③ 보건: 하지정맥류

여성의 하지정맥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지정맥류 환자는 매년 연평균 27.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정맥류 환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2004년 48,495명, 2008년 122,528명으로 2004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다.

[그림 2] 하지정맥류 환자 추이(2004-2008년)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위의 그림은 하지정맥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니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하지정맥류 문제가 심각하였다. 게다가 매년 여성 환자수가 남성비율에 비해 약간씩 더 증가(2004년 남녀비율 37.1%:62.9% → 2008년 남녀비율 31.4%:68.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하지정맥류 증가율은 남성이 연평균 22.5%, 여성이 연평균 30.2%로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다. 5년간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이 148,530명, 여성이 289,285명으로 여성의 발병률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지정맥류는 30~59

세의 연령층 환자가 전체의 70.3%를 차지하였으며, 이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도별, 성별 진료인원

구분		남	여	합계
2004년	실인원(명)	18,006	30,489	48,495
	비율(%)	37.1	62.9	100
2005년	실인원(명)	21,018	37,008	58,026
	비율(%)	36.2	63.8	100
2006년	실인원(명)	30,265	57,339	87,604
	비율(%)	34.5	65.5	100
2007년	실인원(명)	40,756	80,406	121,162
	비율(%)	33.6	66.4	100
2008년	실인원(명)	38,485	84,043	122,528
	비율(%)	31.4	68.6	100

출처 : 보건복지기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하지정맥류로 인한 통증은 크지 않고 다리가 붓거나 저리고, 쑤시는 정도여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맥류가 생기면 혈관염증으로 발전, 피부가 변색되기도 할 뿐 아니라 심하면 피부괴사, 전신질환, 심장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미용을 위해 꽉 조이는 옷, 지나치게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것, 한 가지 자세로 오래 앉거나 서는 직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꽉 조이는 옷, 지나치게 굽이 높은 신발착용이 하지정맥류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예방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높은 구두를 신으면서) 오래 서 있는 서비스직의 경우 기업의 규칙을 변경하여 구두의 높이는 낮추고, 오래 서 있는 시간을 단축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정착되어야 한다.

④ 경제: 중소기업육성자금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경영성과와 신용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정책자금은 주로 중소기업의 시설구조개선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시설구조개선 사업지원금(생산설비 자동화 도입,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이 기계금속 등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여성기업 수혜비중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실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은 서비스업 분야(서적,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여성중소기업인의 수혜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분야에 지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여성가족부 (2010d). 29쪽 중소기업청 관계자 문의. 2010.12.13.)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인이 주로 하는 업종에 대해 자금지원 배분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하였다. 기존에 제조업 중심의 시설구조개선 사업 지원 비중을 축소하고, 여성중소기업인들이 비교적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시설구조개선 사업은 9,700억(2006년)→8,850억원(2007년)으로 축소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에는 948억(2006년)→1,000억원(2007년)으로 확대하였다. 지원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여성기업주와 남성기업주의 지원상황이 달라진다. 남녀중소기업주의 성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업종에 배분하는 지원금의 비율을 달리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여성기업주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2008년 서울시의 한 자치구가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상황을 분석한 결과 응자지원업체는 대부분 남성기업으로 여성기업의 참여율이나 응자지원금액이 6~7%대에 불과하여 여성기업의 경우 경영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해당 자치구의 남녀기업주의 비율은 78 : 22이었으나 실제 자금의 수혜자 비율의 남녀 비율을 보니 88 : 12로 여성기업주의 수혜율이 모집단의 여성비율 보다 낮았다. 더 나아가 자금수혜비율은 남녀비율 85 : 15로 남성기업주에게 더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일반적인 추세로 보이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자금 현황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⑤ 노동: 일자리정책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 하에서 추진된 노동시장 정책 중 하나인 뉴딜정책을 알아보자. 영국에서 시행된 뉴딜정책에서 1999년까지 여성은 청년뉴딜 프로그램

참가자 중 27%, 장기실업 뉴딜 참가자 중 16%. 한부모 뉴딜의 경우 95%를 차지하였다. 뉴딜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청년실업 프로그램에는 57%, 장기실업자 프로그램에는 23%, 한부모 프로그램에는 8%만이 배분되어 있었는데 유난히 여성은 가장 예산이 적게 투여된 한부모 프로그램에만 몰려 있었다. 뉴딜정책의 전체적인 지출수준의 차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규모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개인 당 지출비용의 차이를 낳았다. 청년뉴딜과 장기실업 뉴딜참여자 1인당 지출은 각각 1,560 파운드(약310만원)와 1,370 파운드(약 280만원)로 비슷하였고 이에 비해 한부모 뉴딜은 참여자 1인당 지출이 위의 절반에 가까운 700파운드(약 140만원) 정도였다. 여성의 수혜가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뉴딜과 장기실업 뉴딜 참여자 1인당 지출은 각각 1,560 파운드(약310만원)와 1,370 파운드(약 280만원)로 비슷하였다. 이에 비해 한부모 뉴딜은 참여자 1인당 지출이 위의 절반에 가까운 700파운드(약 140만원) 정도였다.

뉴딜프로그램은 의도적으로 특정 성을 배제하고자 하지 않았으나 분석 결과 여성과 남성이 뉴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에서의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성들은 혜택의 범위가 좁고 불안정한 단기적 일자리만이 가능한 한부모 뉴딜에서는 높은 비중(95%)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의 혜택이 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청년뉴딜에서는 27%를 장기 실업 뉴딜에서는 16%만을 차지하였다. 여성의 낮은 참여는 청년뉴딜이나 장기 실업 뉴딜프로그램이 여성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과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기준 – 즉 실업자 등록 및 실업기간 – 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프로그램이 여성의 처한 조건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파악하지 않고 정책이 실현되었을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하고 장기화될 추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남성실업자는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남는데 비해 여성 실업자는 취업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실망실업)함에 따라 실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여 실업율을 산출해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월등히 실업율이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출처 : Rake, K.(2000), “Into the Mainstreaming?: Why gender audit is an essential tool for policymakers?”, New Economy, London School of Economics를 마경희(2009)에서 요약함)

⑥ 교육: 여성농업인육성 교육 등

가. 여성농업인육성 교육

농촌진흥청은 경쟁력 있는 후계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성공하는 농업 CEO를 양성하고자 한국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농업대학 입학지원자 가운데 여성지원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4년 35명에서 2008년에는 99명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2008년까지 전체 졸업생 1,840명 중에서 여성졸업생 비율은 8.7%를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에 여성농업인은 과거처럼 부수적으로 농사일을 돋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영농현장에 참여하여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기술 및 경영의 전문성을 높여나 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참여율을 높여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농촌진흥청은 젊은 정예 여성후계인력을 양성하고자, “성공한 농업 CEO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초빙하는 여성강사 비율을 2008년 23%에서 2009년에는 30%까지 확대하였다. 또 여성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농업 등 5개 강좌를 1학기에 개설하였고, 2학기에는 전통발표식품 등 3개 강좌를 개설하였다. 그 외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부모 240명을 대상으로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여성농업인 및 자녀의 양성평등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제까지 여성은 남성농업인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 여성도 보다 주체적으로 새로운 농법을 배우기를 원했고,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는 더 야심차게 농업에 투자하여 개척해보기를 원했다. 이들 여성에게는 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교육내용과 롤모델을 해 줄 수 있는 강사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 스포츠 프로그램

스위스 체육부(the Swiss Federal Office for Sport)는 10세~20세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증진하고, 스포츠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있었다. 총 예산은 약 52백만 스위스 프랑(CHF, Y)으로 스포츠 활동보조금 48백만 프랑(CHF, S)과 스포츠 트레이너 4백만 프랑으로 나뉘어 있었다. Y+S 스포츠 활동 이용자 중 소녀는 40.2%, 소녀에게 지출된 비용은 전체 보조금 중 37.3%를 차지하여 소년보다 참가자 수나 예산배분에 있어 적게 받고 있었다. 소녀들이 많이 참여하는 두 개 부문의 스포츠에 예산의 19.3%, 소년들이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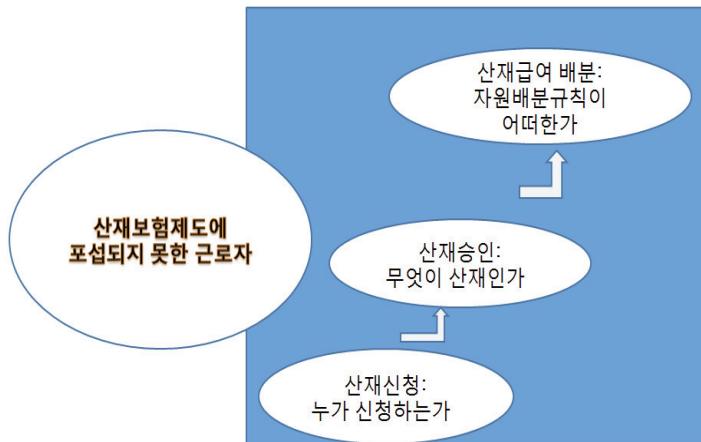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는 32.9%가 배분된 것이다. Y+S 보조금의 약 1/4(24.3%)은 소년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에 할당되었고 소녀가 90%가 넘는 프로그램에는 2.3%만이 할당되었다. 결국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스포츠 활동에 덜 참여하며, 소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분야가 소년들보다 예산을 덜 지원 받고 있었다. Y+S 프로그램은 스위스 스포츠 증진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스포츠 보조금은 소녀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성별에 따른 편견이 구조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성별고정관점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의 성별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소녀 축구단, 소년 발레단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 스포츠증진과 함께 성별 스포츠 활동의 성별분리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⑦ 사회보장: 산재보험

한국의 산재보험제도는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그 인지도가 가장 낮은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2:8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산재보험 수혜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연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지, 여성은 남성보다 더 건강한 것인지, 또 산재보험제도에 문제로 인해 여성의 보험수혜가 낮은 것인지 등의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되어야 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인정받아 승인을 받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산재보험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과 명시적인 보험제도상의 규정이 있다.

[그림 3] 산재보험 수혜과정 및 결정요인



산재보험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지만 가사서비스업이나 일부 건설업(건설업 대부분은 적용)은 제외되고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다. 가사서비스업에는 대부분 여성이고, 건설업에는 남성이 주로 종사하고 있어 이 분야의 여성과 남성은 상대적으로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

또 일과 관련하여 산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역자료를 사용해 성별차이를 알아 본 결과 남녀 모두 실제 발생되는 직업병에 비해 산재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10~20% 정도에 불과하였다.

산재발생건수 중 직업성질병의 경우 남성의 14%가 산재신청을 한 반면, 여성은 10%만 산재신청을 하였다. 즉 현행 산재보험 체계로 편입되지 못한 사람 중 여성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괄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한국에는 부재하므로 산재발생이후 실제 신청을 한 근로자의 비율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시범사업을 한 지역에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남녀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가운데도 남녀비율의 신청율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신청비율이 높았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산재보상보험 손상군은 여성이 20.3%, 남성이 79.7%였는데 건강보험에서 손상으로 업무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여성이 28.0%, 남성이 72.0%로 산재보상보험에 아닌 건강보험으로 대체한 여성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산재보상보험 적용대상자임에도 적용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성불평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자료(한국비정규센터, 2007) 분석결과 산재발생 이후 남성은 23.4%, 여성은 13.0%만이 산재신청을 하였다. 여성의 10.9%는 공상으로, 71.7%는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 반면, 남성은 43.8%가 공상으로 26.5%가 개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즉 남녀 모두 산재은폐가 많았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 공공보험이 수혜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산재발생시 산재보험을 신청한다하여도 질병판정위원회가 신청한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신청대비 승인율에 대한 총괄적 자료만 존재하고 성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의 문헌을 살펴보면 여성의 일과 건강에 관한 연구의 부족은 산재승인의 근거부족으로 작동하여 공장의 남성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은 인정이 쉬운 반면 탁아소 보모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승인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은 다른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성이 높기 때문에 동일 질환이 업무의 성격 때문인지, 여성의 높은 질환보고율 때문인지 혼재되기 쉬운데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실제 근골격계질환을 측정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질환이 실제 더 많이 발생하고 남성에 비해 특정부위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정진주 2001; Nordander et al, 2008).

산재보험 급여 중 요양급여를 특정 질환에 제한해 분석하였더니 2007년 요추부염좌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 총 요양일수는 남성 100.8일 여성 85.1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7일 길었고 중위수로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요양일수가 무려 18일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평균요양급여는 남성 2,102천원, 여성 1,633천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1.3배가 높은 요양급여를 지불받았다. 실제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 외에 산재가 발생하고서도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회사나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를 합치면 남녀 모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특정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에서 여성의 남성보다 급여가 적은 이유는 더 연구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 건강상태 및 직업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 산재를 승인받지 못한 사람, 아예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산재보험의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광업,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변화가 요구된다(출처: 정진주 외 (2008), 『산재보험급여 지급의 성별평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⑧ 환경: 국제원조에서 환경복구 사업

환경분야의 성인지성은 인도의 환경복구와 소득증대 성공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의 가장 오래된 산맥인 아라발리힐(Aravalli Hills)은 타르(Thar) 사막과 라자스탄(Rajasthan) 평원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오랫동안, 또 최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료, 식량, 사료를 얻는 곳으로 이 산맥에 의존하게 되면서 매우 황폐해졌다. 그 결과 토양은 침식되었고, 이 곳에서 삶의 자원을 의지하는 모든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각 가정의 연료, 식량, 사료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폐화된 곳보다 더 멀리 이러한 자원을 구하러 다녀야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인도의 환경파괴에 대응해 유럽에서 23백만 유로의 비용으로 이 산맥의 녹지를 복구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결정하였다. 여성들은 가정의 연료와 사료, 물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관리 방식과 산의 녹지 복구에 밀접한 관심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유럽의 인도에 대한 원조는 여성들을 환경복구사업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로 간주하고 지역여성과 함께 초원을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환경을 복구하는데 있어 여성들은 294개의 마을 숲 위원회(Village Forest Committee)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남편이 아니라 여성 자신이 땅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성들은 묘목을 기르는 법을 배우고, 풀의 씨앗을 모으고, 나무 연료를 절약하는 기구들을 만들어 냈다. 또한 여성들은 가계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만든 유제품과 손바느질 수공예품을 팔도록 장려되었다.

9년의 시간 동안 두 번의 환경 산림복구 상이 주어졌고, 38,050헥타르(약 여의도 면적의 5배)의 공유지에 나무와 풀이 심어지고, 야채의 경작지가 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82만 5천명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특히 농촌지역의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그녀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또한 아라발리(Aravalli) 산맥의 사막화가 지속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공동체의 실제 주요 행위자인 여성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성과 연대하여 이들의 참여를 통해 소득 증진 및 환경보호를 동시에 일구어 낸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출처: 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India, Bhatan, Maldives and Nepal. European Commission(2004), Section 2 p20 in 『Toolkit: on 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in EC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재인용).

4. 마무리 말

이 글은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정책을 성주류화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작성되었다. 정책은 중립적인 듯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가 경쟁하여, 정책으로 선정되고 집행과정에서도 반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의 현실을 파악하여, 이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제 예산을 이러한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현상도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 및 현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민으로서의 이들의 권리를 반영 할 수 있는 정책시행이 시급하다.

이제까지는 성주류화의 과정은 남성과 여성 두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향후에는 여성 집단내부의 다양성, 남성 집단내부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젠더와 연령, 계층, 학력, 지역 등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이 어떻게 결합하여 정책 개선을 해야 할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1. 성인지¹⁾ 관점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이란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 및 현상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한 대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실천력을 전제로 한다. 정부정책에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추진목적을 감안할 때 성인지 관점은 제도수행을 위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 특징과 기능이 다르고,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성별조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욕구와 이해(利害), 조건과 행동양식을 가지게 되며 국가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도 성별로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성별역할이나 특성에 대한 가치평가는 사회문화적으로 기대하는 성정체성(gender-identity)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성이 나타내는 성별고정관념 하에서의 남성적 특성이나 남성이 나타내는 성별고정관념 하에서의 여성적 특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일상적인 삶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도 유사하여 성중립성(gender neutral)을 가정한 몰성적(gender blinded) 기준이나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성

1) 여성발전기본법 제 21조의 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에 의하면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체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책과 사업수행의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등으로 성을 구분하지 않거나 생물학적·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정책과 사업수행결과의 수혜에 성별격차가 나타나고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성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거나 고정관념이 반영되게 되면 성역할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가정책이나 예산에 성별조건과 특성, 기대와 요구를 고려한 성인지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정책은 모든 국민의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모든 국민의 형평성 있는 수혜를 고려하여 수립,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 도시, 농촌, 근로자, 장애인 등과 같이 계층별·지역별 요소를 고려하듯이 성별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대상을 다양한 기준으로 집단화할 수 있으나, 가장 큰 집단으로 묶어낼 수 있는 기준이 성별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특성,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별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성별로 균등한 정책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성인지 정책이며 이를 위한 정책도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인 것이다. 이러한 성인지적 정책은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수용하고 성·연령·직업·계층·학력·지역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이는 국제적인 정책 형성의 추세(trend)라고 할 수 있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성별로 형평성 있는 수혜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정책과 사업, 법령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평등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서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18개조항) 및 동법 시행령(14개조항),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정책의 분석·평가), 10조의 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조(정의)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및 현황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으로 정책에 대한 성분석의 필요성이 명시되고 이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4년 시범사업을 실시 이후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통과로 제도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까지 정부부처와 국회,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연도별로 참여기관 및 분석대상과제수의 변화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 연도별 참여기관 및 과제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참여기관	9	53	187	278	295	298	292	293
대상과제	10	85	314	720	1,531	1,908	2,401	2,954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평가지표를 개발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지원해 왔다. 2004년도에는 법무부 등 9개 기관이 1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사업을 실시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였다. 2006년도에는 적용대상을 넓혀 기초자치단체가 시범 참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의무 참여하고 시·도교육청이 시범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대상과제가 1,531개에 이르는 등 급증하였다. 2011년에는 국가성평등지수에 근거를 두고 지정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주요도구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성인지 예산과 연계하기 위하여 추진일정과 지표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지속적 증가는 과제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찾고, 이를 환류하기 위한 본 제도의 의미를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며 그동안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 등이 활성화되고 대상사업 수가 급증하고 관심도가 제고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시행의 성과도 있으나 대상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개선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지만 대상과제가 얼마나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정책과 사업이었는지,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관점훈련은 충분했는지, 분석결과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는지,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기관내의 관심과 노력을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것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시행과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요인을 보완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나 부서 간 협조가 미흡한 상황에서 담당자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스템화 되지 않은 업무수행절차 등 인프라도 미흡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은 국민과 주민에게 직접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책대상자가 아니거나 혹은 정책의 전후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지 않은 경우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시스템에 관한 개선사항도 제안되고 있으나 이것이 실행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긴 경우 역시 체감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011년 하반기에 통과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총칙, 분석평가의 실시, 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로 구성되며 분석평가 대상, 시기, 기준, 분석평가서 작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관련교육 및 자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등 제도운영을 위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미비한 법적근거로 인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소극적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국가정책의 큰 틀이 중앙행정기관에서 결정되고 정책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분석결과가 성인지 예산에 연계될 가능성도 커지게 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미

법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제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며 그 관계와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법이 남녀관계를 규율할 때 당시의 사회질서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게 되므로 사회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질서와 남성관과 여성관이 변화하면 법도 변화하며, 법이 변화하면 기존의 사회질서와 남녀관계에 변화가 초래되는 순환적 관계가 성립된다. 법은 다양한 가치관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회구성원의 관계를 조화롭게 규율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된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인권에 있어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는 입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령 제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반영함으로서 가능하게 된 성인지 입법은 현법과 괴리된 현실과의 다리를 놓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선도하거나 시범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책 사업에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게 되는 계기이며 동시에 정책의 책임과 지속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법률이 남성적 규범인가, 숨겨진 차별이 존재하는가, 남녀의 현재 상황이 고려되었는가,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는가 등을 분석해야 한다.

법은 사회적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운영의 기본원칙이며 인권보장의 기준이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때 처리하는 기준이 되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

능을 가진다. 이외에도 정부정책의 수립근거가 되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다.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된 국민생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질서유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제정 혹은 개정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도 중앙행정기관의 국회에 비견되는 지방의회를 통하여 제·개정된다. 지금까지 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이를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주체들이 대부분이 남성이었다. 이는 법이 남성중심적 가치관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성적 가치기준과 특성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은 합리적이고 따라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관념과 가치판단기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성별과 관련된 사항은 고정관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에 담겨진 내용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성별 현황과 조건, 통념 등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법조항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규정은 차별적이지 않지만 적용결과를 보면 한쪽 성에게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법의 형성과 작동과정에 남성이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차별적인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성별영향분석평이다. 입법과정에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내재하는 성차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법령 제·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미인 것이다.

이처럼 법령 제·개정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 것은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많은 규정들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성별에 따라 영향이 다르고, 성평등한 결과 혹은 성차별적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법률은 당대 사회의 현실이나 사상을 반영한 가치기준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법률의 성에 대한 관점과 기준을 변화시킨다면 이를 통해 성정체성이 변화하며 더불어 사회변화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성평등을 추구하는 입법활동을 위해서는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찾아 개선해야 하며, 성인지 관점에 기반하여 성별로 다른 삶의 조건과 상황, 특성과 요구 등을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기여해

야 한다. 또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전제로 성차별을 제거하고, 전통적인 성역 할로부터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른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선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5조(분석평가 대상)와 시행령 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1항에 의하면 제·개정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행정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제·개정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7조)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4조)하도록 되어 있다.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법령,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기준

대상여부	세부항목
제외 법령	•기관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 -예) 직제, 기록물 등

대상여부	세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알기쉬운 법령 정비대상(법제처) ※ 알기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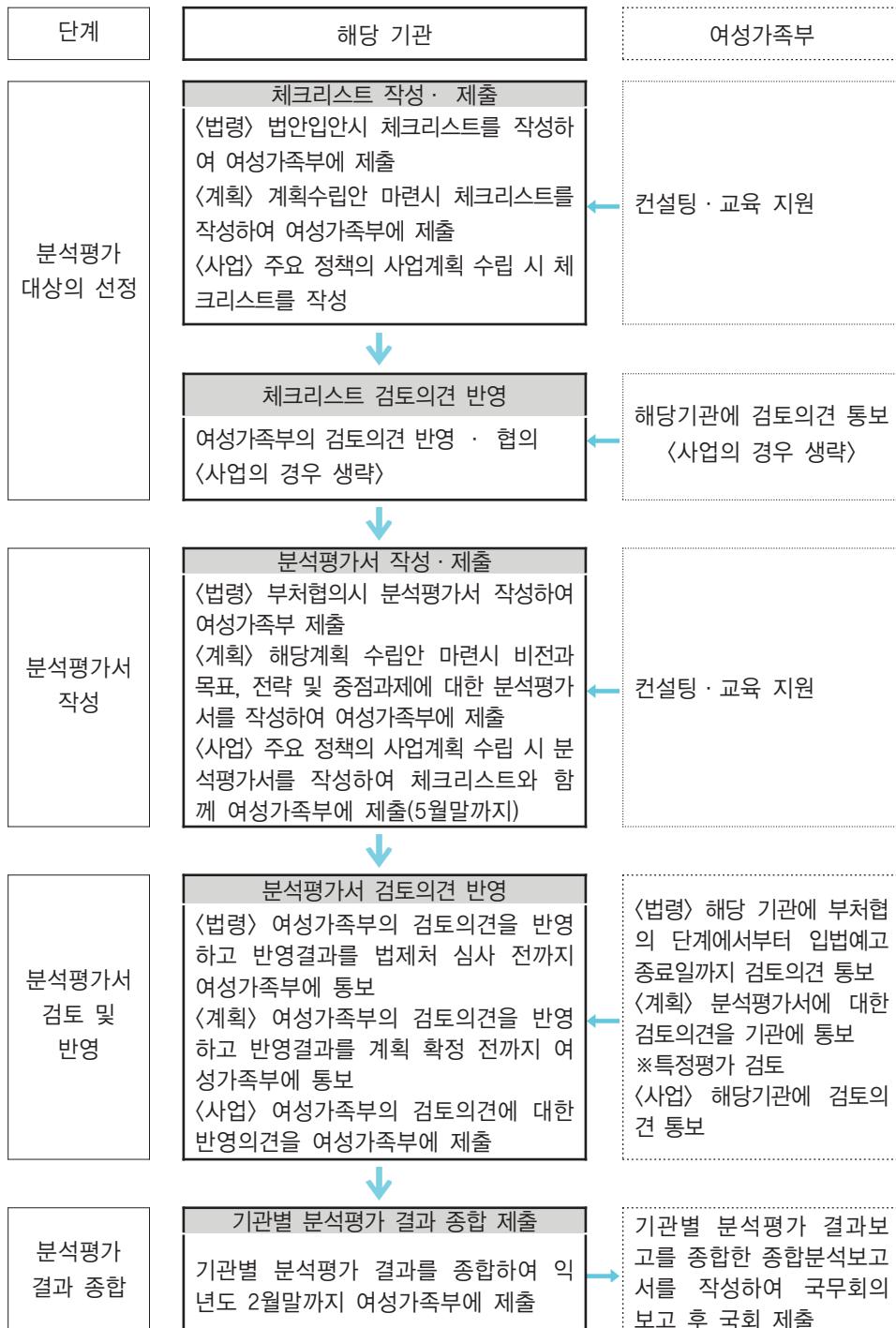
분석대상 선정기준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을 제외하는 것은 성별조건을 고려한 적극적 조치차원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과 알기쉽게 정비하는 법령의 표현만 정비하는 경우는 성별구분이 의미가 미흡하거나 젠더이슈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시기는 법 7조(분석평가의 시기)에 의하면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4조(분석평가의 시기)에 의하면 지자체의 경우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하도록 하며 계획의 경우 해당계획의 수립이 전에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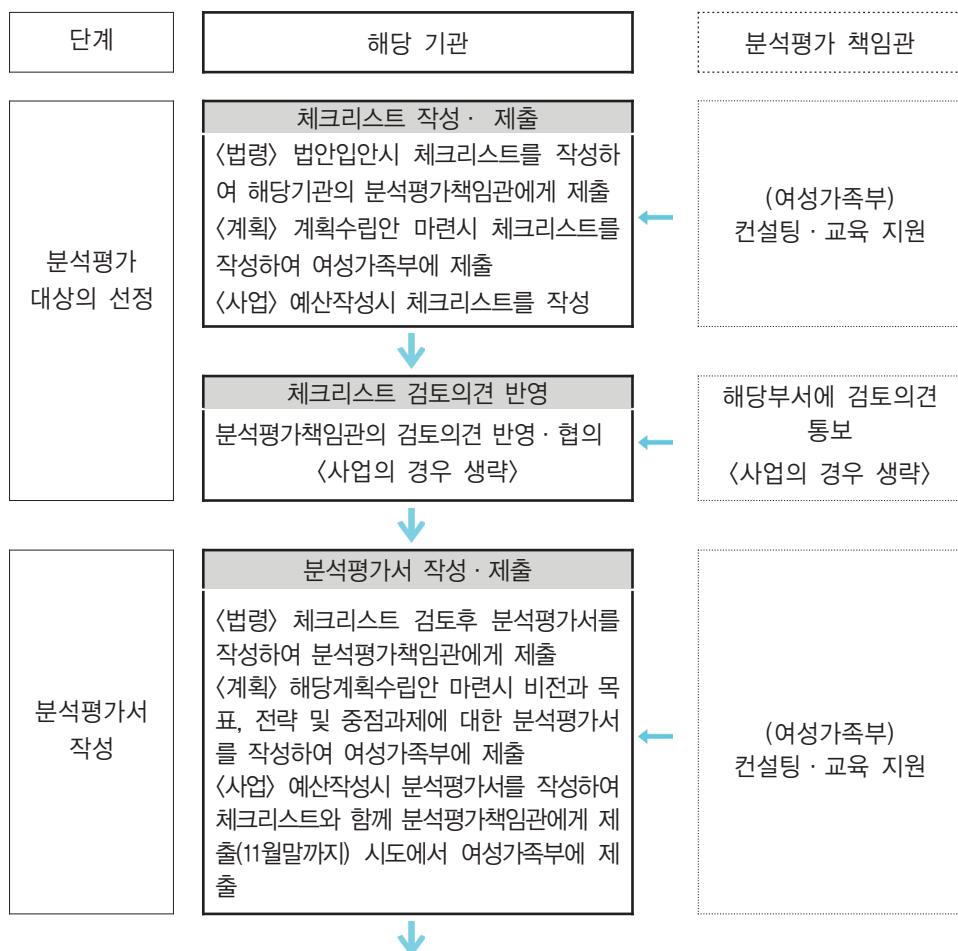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기준과 절차가 제시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가 선정되면 각 대상과제별로 분석시기에 맞추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법령의 경우 부처협의 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법제처 심사 전까지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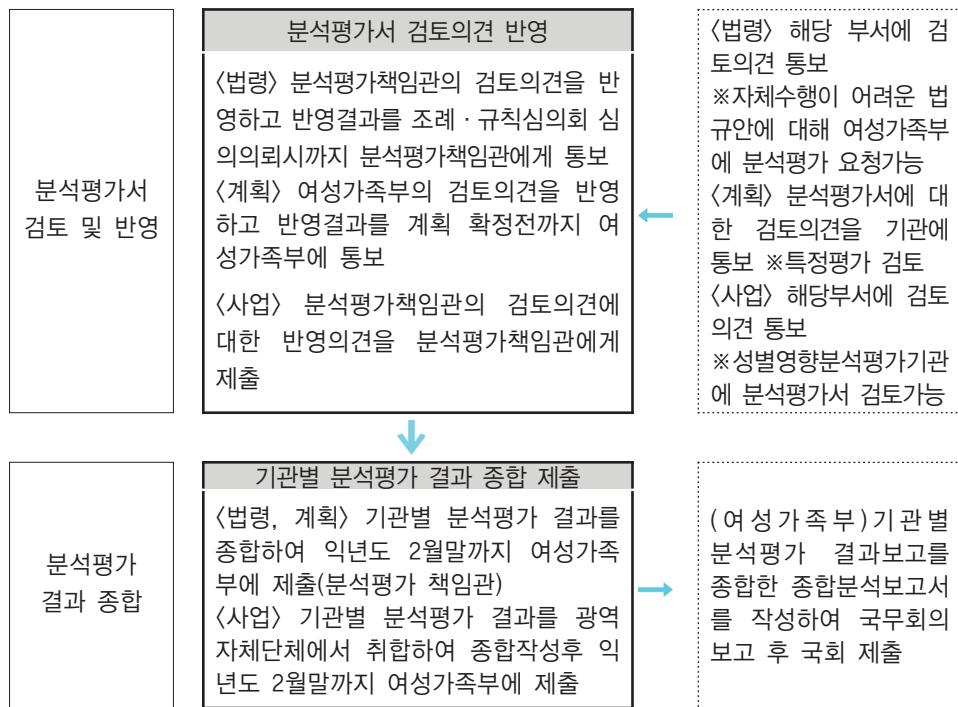
<표 3>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및 규칙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 심사이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출하듯이 조례 및 규칙심의위원회 이전에 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평가 책임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는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한다. 또한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차년도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5. 성별특성 및 요구도 파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제·개정이나, 주요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조건과 특성, 요구를 반영하여 성평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 사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법령의 경우도 관련 정책유형에 따라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차이가 있으며 정책영역별로 성별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정책영역별 성별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고려사항

정책 영역	고려할 사항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 정의는 가구 내 여성의 역할을 포함할 만큼 충분히 포함적인가? •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사와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가? 그렇다면, 그것

36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교재 – 강사용

정책 영역	고려할 사항
	<p>은 가정 내에서 성별관계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계획에서 한부모 가구와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목표나 이상적 인간상의 정의가 남성을 중심으로 하여 정의된 것은 아닌가? 여학생과 남학생은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대학 전공을 결정하는가? 여학생과 남학생이 받은 교육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사회는 고학력 여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성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차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진로지도나 생활지도상에 성별 조건을 고려하는가? 남성과 여성의 교육기회는 실질적으로 동등한가? 그렇지 않다면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는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가? 법과 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왔는가? 인력육성의 영역별 성별 교육기회는 형평한가?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우 성중립적으로 판단하여 참여기회나 수급의 성별차이는 없는가? 대학교수의 성별비율은 어떠한가? 전공영역별 성별비율 및 여자대학 교수의 성별비율은 어떠한가? 보직교수의 성별비율은 어떠한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원인과 현황에 대하여 성별차이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는가?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고려하여 정의되는가? 여성과 남성간의 사망률과 유병률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험유형에 따른 성별 가입율 및 보험비용현황은 어떠한가? 여성관련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험료 적용여부는 어떠한가? 여성과 여학생이 건강관리나 금연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문화적인 혹은 다른 장애물이 있는가? 의료보험 수급의 성별차이는 없는가? 수급회수와 수급비용에서 성별차이는 어떠한가?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율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실업율의 산출이 여성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가? 같은 가치의 일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과 같은 보수를 받는가?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이 국가 통계에서 다루어지는가? 인구 조사와 다른 조사들이 가정 안팎의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성별로 다른 고용분야가 있는가? 성별임금격차가 있는가? 고용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규정이 있는가? 이 규정들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법이나 관습에 따라 여성의 수가 압도적이거나, 여성만 종사하는 직업이 있는가? 여성이 의사결정직에 오르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리한 시설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선반의 높이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시설이나 건축물의 이용자로 여성의 조건을 고려하는가? 시설이나 건축물 허가기준에 여성과 노인, 아동의 조건이 반영되는가? 시설이나 건축물의 안전성에 여성의 조건을 고려하는가?

정책 영역	고려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위치나 실별 배치에 여성과 노인, 아동의 조건이 반영되는가? • 재개발 지역의 이주민 가운데 여성 가구주 가구와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토지개발이나 지역개발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가? • 공원에 마련된 운동기구가 여성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중소 기업 및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산업종별로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이 어떠한가? • 중소기업 산업종별로 성별참여율의 차이와 정부지원금의 크기는 어떠한가? • 중소기업 산업종별 성별참여율과 일자리의 수에 있어 현황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 중소기업 산업종별 성별참여율과 임금 및 고용안정성은 어떠한가? • 중소기업의 규모별 성별참여율은 어떠한가? • 중소기업 관련지원금의 성별요구도와 관련 산업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공공 질서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비행원인별 성별차이를 반영한 예방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범죄유형별로 경·검찰 공무원의 성별비율은 적절한가? 특히 여성관련 범죄담당공무원의 성별비율은 어떠한가? • 폭력관련 현황조사에서 성별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 범죄가해자 교육에 성별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 위기청소년의 성별현황은 어떠한가? 성별로 다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가? •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정책, 위기요인,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성별요구도는 어떠한가? •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성별인식은 어떠한가?
농어업 농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구의 성별비율과 농가주(토지소유)의 성별비율은 어떠한가? • 농어촌 자금지원에 대한 성별요구도는 파악하고 있는가? • 농어촌 주민의 생활시간의 성별차이는 있는가? • 농어업 관련 기술유형의 성별요구도의 차이는 있는가? • 농기계 유형별 성별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있는가? • 농기계 훈련의 종목별 성별요구도는 파악하고 있는가? • 농촌지역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대표자의 성별은 어떠한가? • 농업 작목별 성별참여현황과 요구도는 어떠한가?
문화 체육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로 여가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 성별에 따른 관광(여행)의 특징, 유형 및 패턴은 어떠한가? • 각 지역의 공원 및 유원지의 이용자 편의, 안정성 증진 등 성별에 따른 고려를 통한 인프라가 적절한가? • 지역별로 나타나는 성별 관광유형 반영여부는 어떠한가? • 관광 분야 종사자(운영인력, 해설가 등)의 성별지위 및 임금은 어떠한가?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가구주의 성비는 어떠한가? • 공적연금가입자의 성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중 여성가입자 비율은? • 수급권자의 성별 생활실태는 어떠한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분석대상과제가 성별구분조항이 있는지와 타당한지, 성별고정관념 반영여부, 자격요건 관련 한 성별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이 필요하다. 분석대상 법령이 여성과 남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는지, 변화하는 성역할에 부응하는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는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분석 대상법령의 영역, 정책수행수단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통계 및 관련 현황자료에 기반하여 도출된 객관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인지적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성별영향분석지표의 의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에 의하면 분석평가서를 작성 할 때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5조(분석평가서의 작성)에 따르면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 정책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보고서는 대상과제에 따라 분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 법령의 경우 제·개정하고자 하는 법령에 성별구분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경우 성별구분 타당성이 및 개선필요성이 있는지 분석하며 성별구분개선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별고정관념관련 조항이 있는지, 성별고정관념 개선조치의 필요성과 개선계획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성평등한 법령이 마련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법령의 경우 자격요건조항이 있는지, 자격요건조항의 성별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와 성별특성 반영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법시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6>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I. 성별구분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 제개정 법령의 적용대상에 성별구분조항이 있는지 확인
	2.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성별구분 조항이 있을 경우 이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성별구분조항이 추가로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 -성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
	3. 성별구분 개선 계획 : 성별구분 조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제개정하는 법조항에 반영
II. 성별 고정관념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제개정 법령의 내용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고정관념(근로, 생계, 출산,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는지 -특정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법령상의 특정조치가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것인지 점검
	5.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 성별고정관념과 관련한 조항이 있을 경우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성별고정관념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제 · 개정하는 법조항에 반영
III. 성별 특성 반영	7. 자격 · 요건 조항 유무 : 자격요건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 결과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격 요건조항이 있는지 확인
	8.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자격 요건조항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이 필요한지 판단하며 자격요건 조항이 추가로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 -법령의 적용대상에 성별구분이 없더라도 여성과 남성이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 -연령, 종교, 인종, 거주지역, 소득, 교육수준, 신체적 조건 등 차이 또는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언급한 규정의 경우 성별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 -위원회 관련규정에서 위원자격요건이 성별로 균형을 이룰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점검
	9.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자격요건 조항의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1. 계획과 성별영향분석평가

1) 법적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평가 수단이다.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제204절 a)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정책 결정의 영향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고, 우리나라로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무화하였다. 2004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체단체에 이르기까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제도 개선을 시행하여 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책이 평등한 사회 조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보고 최대한 성 차별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은 주로 사전 평가보다는 사후 평가와 해당 개선안을 다음 년도 정책·사업에 반영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법령과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무화 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년 3월 16일 시행)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에 대한 방대한 정책들과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시행하고 분석평가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성인지적 정책 기획과 집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성별영향분석이 주로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면 계획에 대한 성

별영향분석은 세부사업의 추진 방향을 큰 틀에서 성인지적으로 틀 지움으로서 종체적인 정책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은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 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의

계획은 비전-목표-추진 과제와 추진체계 및 예산계획을 기본구조로 작성된다. 또한 계획이 미래에 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계획 기간 동안의 정책 환경 변화를 예측한 부분 또한 포함되어 있다.

<표 2> 계획의 구성

계획의 일반적인 구성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사례)
1. 추진배경 및 경과	목 차
2. 환경변화 등의 현황분석	I. 기후변화 현황 및 국제사회의 노력 1.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2. 국제사회의 노력
3. 추진방향 - 비전, 목표, 정책추진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II.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현황 1.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4. 목표(분야)별 추진과제 * 담당부처, 예산 등의 참고자료	2. 그간의 추진경과 및 평가 III.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목표 IV. 추진 전략 V.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 VI. 목표별 추진과제 1.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VII. 2012년 우리사회의 변화된 모습 <붙임> 1. 조세 및 재정 체계 개편 방향 2. 종합기본계획 점검, 평가 방안 3. 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 4.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향 5.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별 역할
---------------------------------------	--

계획²⁾은 관련 분야의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관련 분야 정책에 대한 로드맵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하위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³⁾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8년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의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본계획’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 시행된 이후 기후 친화 산업의 부상 등의 산업 트렌드를 변화시켰고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등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다른 계획에 비

2) 계획은 대상 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해당 계획의 추진 기간(3년, 5년, 10년, 20년) 동안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본 철학, 전체 목표를 제시한다. 여기에 추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방향별 정책과제와 세부과제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소관부처 및 중장기 예산 투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3)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계획은 시·군·구 단위의 관련 사업의 목표와 범위 또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각각의 개별법령에서는 법령 내에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상·하위계획과의 위계를 설정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종합 및 기본계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승인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계획은 중앙정부가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체단체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 중심의 행정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정책 기획이 일차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한편,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성인지적 계획을 만드는 것을 전국적인 파급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대상 사업의 추진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중앙 정부가 작성한 지침과의 상충이 있다면 변화가 쉽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성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전략과 관련된 국가 기조계획(meta plan)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계획이 그려내는 목표와 추진 전략은 포괄적인 의미의 삶의 환경과 시장 및 직업 구조, 조직과 개인의 행위 방향 변화의 틀을 예고함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주목하는 것 또한 개별적인 사업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방향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비전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래에 대한 구상 또는 미래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계획에서의 비전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상태를 기술해 놓은 것이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큰 방향이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21세기에 기후변화가 최우선 국제의제로 급부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비전)”을 우리사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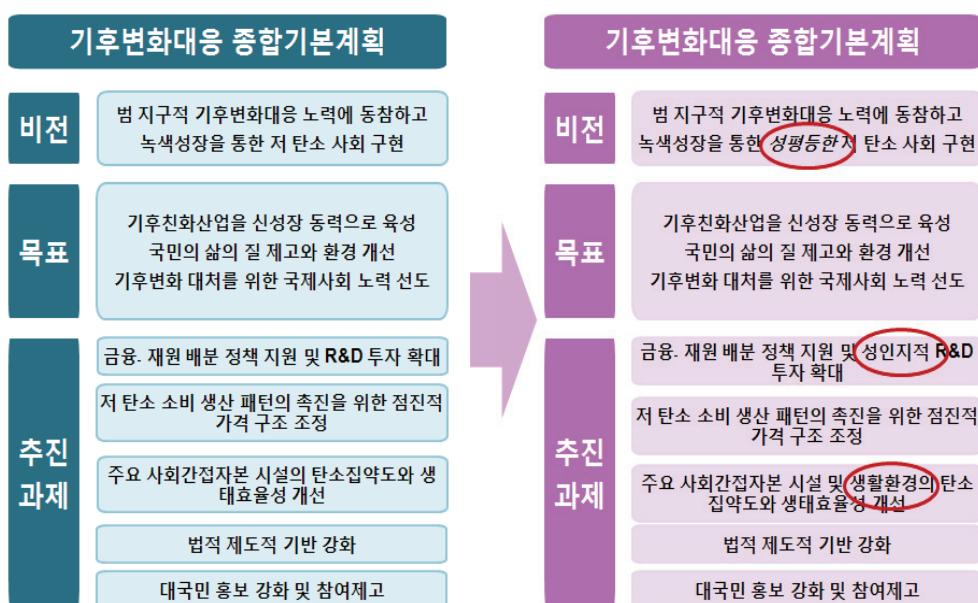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첫째, 지구적 감축계획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비용 증대로 기존 산업계의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변화되어 저탄소형 기술 및 산업 관련 거대시장이 등장 둘째, 기후변화적응을 위하여 인간생활 의식주 전반에 점진적인 변화, 셋째, 생태계 교란과 각종 기상재해 및 빙ゴ충,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 등의 악화 등을 주된 변화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에 기반한 대응 전략으로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를 정책이 추진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저탄소사회에 대한 비전 달성을 방법과 저탄소 사회에 대한 청사진은 다소 변화될 수 있다. 기후친화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산업에 여성 기업 및 취업자 비중이 낮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는 남성이 92%이고, 그나마 기술인력 중 여성은 환경교육 · 홍보나 위해성 평가관리 · 요소 등의 몇몇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인식된다면 4년간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추진 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결여된 여성들의 무권력(disempowerment)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친화산업 발전을 국가의 발전 전략으로 설정하는 데에 있어 성인지적 R&D와 인력개발계획을 함께 고려하여야 다가올 미

래의 저탄소사회는 형평성을 갖출 수 있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제고가 저탄소 사회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라면 경제적 이득과 친환경적 경영이 주는 기업 이익에 대한 무게 중심을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다소 이전시킬 필요도 있다. 더불어, 각종 자원 및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과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정책 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 형성 과정을 경험한 북반구 여성들이 유통업계 및 제조업 전반의 기후 친화적 실천과 생산을 도모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탄소 소비패턴은 단순히 가격구조 조정만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그림 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이처럼 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과제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삶의 현실과 요구를 인식하여 식품·환경·건강·가정경제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일자리나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 등 돌봄 노동(care work)에 대한 지원책들을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 및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 역할 분리와 권력 관계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을 제안하려는 의식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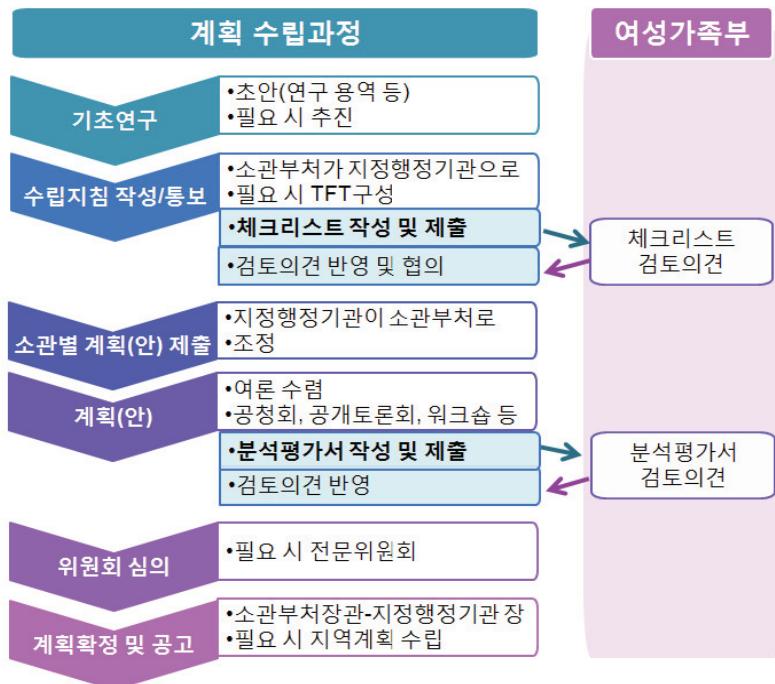
1)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기

계획은 관련 법률의 제정,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또는 현황 분석, 계획(안)수립 및 부처협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자문회의,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3년~20년을 주기로 재수립되는 계획들과 다르게, 신규로 만들어지는 계획은 기초조사 또는 현황분석 이전에 의제선정관련 연구용역이나 실무위원회, T/F 실무팀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계획(안) 수립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당 분야 정책의 청사진을 만드는 계획의 성별 영향성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방향을 성평등 증진에 지지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세부적인 단위 사업들의 성 인지적 추진의 근거를 생산하는 것이자 성 평등에 우호적인 정책 추진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안) 심의 이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계획(안)에 분석결과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012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따르면, 최종적인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제출 이전에 계획(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별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비전과 목표에 가려진 남성과 여성 간의 인식 또는 입장이나 요구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 역할에 따른 경제적·사회문화적 위치의 차이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2] 계획 수립과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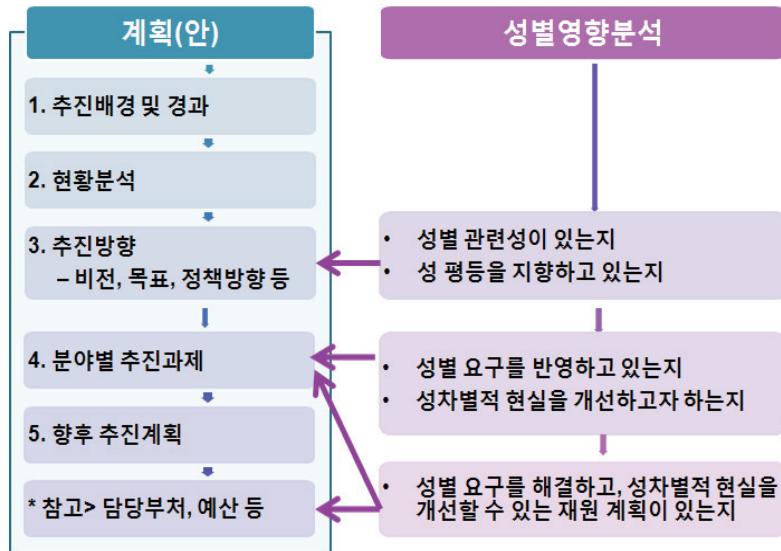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

(1) 개요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계획의 비전-목표-추진과제 및 예산 등에 있어 모두 성별 요구와 현실의 차이를 반영하여 성평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계획의 비전과 목표가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전략 및 중점과제가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도를 반영하고 있는지, 예산과 수혜에 있어서 성별 협평성을 보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평가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획 추진을 성 평등한 결과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법령과 예산,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그림 3] 계획(안)의 구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2) 분석평가 대상 선정

수립 예정인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성 평등 촉진을 목표로 만들어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동일하게 고용촉진을 목표로 만들어진 계획이지만 계획 수립의 목표가 처음부터 성 평등 촉진을 의도한 계획이 아니라면 성별영향을 분석하여 고령자 고용에 있어 성 차별적 요인을 규명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3> 과제선정 체크리스트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대상 계획	•인적 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임신·출산지원, 취약계층 아동지원,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기회 증진위한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목표
	•시설설치·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교통 환경 조성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예를 들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은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여성 전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 기회 제고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획은 여성 전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 기회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별로 다른 특성 및 요구들을 인식한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즉,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담당하는 가사와 자녀양육, 노부모 돌봄과 같은 무급 돌봄 담당자라는 성별분업 현실이 사회경제적으로 여성의 독립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 가정 내 무급 돌봄을 담당하는 조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불리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여성의 돌봄 부담으로 인한 잦은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 등 경력단절은 노동시장 내부의 성별분업과 고용차별, 저임금 구조를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미래의 신체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활력있는 고령사회(Active ageing) 실현’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고령자 확보와 오래 일하기, 전직 중심의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또는 중립적으로 보여지는 전직 활성화와 같은 정책 과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했을 때 고령자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공식영역에서 일 할 기회가 적었던 여성 노인들은 전직을 지원하는 정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 직업을 가져 본 경험이 희소하기 때문에, 전직을 생각할만한 여건이 아니거나 전직 훈련 희망자 간 경쟁에서 낙오될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별로 다른 사회문화적·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노

동시장과 지역사회 참여에서의 남녀 노인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 방향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성평등을 목표로 추진된 계획이 아니라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3) 분석 지표의 적용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4개 평가항목 9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추진한다.

<표 4> 분석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해당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고,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를 파악
II. 전략 및 중점과제	2. 성별 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③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진입장벽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 반영 방안을 모색 ④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성별에 따른 질병률, 안전에 대한 인식 등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 반영 방안을 모색
	3. 성별 형평성	⑤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재원배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성별특성을 고려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 도출을 위한 방안 모색 ⑥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예산배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성별특성을 고려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 도출을 위한 방안 모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p>⑦ 법령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도출</p> <p>⑧ 예산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예산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도출</p> <p>⑨ 사업내용 ·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사업내용 · 수행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도출</p>

*2.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②~④)은 통합 작성 가능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따라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는 첫째, 계획(안)에서 비전과 목표를 찾아서 비전과 목표가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답변하고, 둘째, 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전략 및 중점과제를 찾아서 중점과제들 각각이 남녀의 경제·사회문화·신체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제안되고 있는 요구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계획(안)들 중에는 비전은 이념이나 지향 등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비전이나 목표 중 어느 하나만을 서술한 경우도 있다.

분석평가 첫 번째 지표인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획(안)이 제안한 가장 큰 그림인 비전과 두 번째 큰 그림인 추진방향 또는 목표를 찾아서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느냐를 분석해야 한다. 비전과 목표가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언하는 것은 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이다.

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계획이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추진을 목표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고, 성평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목표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이 밖에도 도로나 시설물 또는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공공시설 인프라 관련 계획이라 할지라도 성별 요구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 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해당 계획 분야와 관련된 성인지 연구를 활용하여 어떤 젠더 의제가 있고 해당 계획이 젠더 의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통합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결과 성평등 관점이 통합되지 않았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전략 및 중점과제에서 판단해야 하는 성별 요구 차이는 실태조사나 통계에서 찾을 수 있는 남성과 여성 간의 인식 또는 입장이나 요구의 차이 뿐만 아니라 성별 역할에 따른 경제적·사회문화적 위치의 차이를 보고 분석할 수 있다. 전략 및 중점 과제에 대한 분석은 계획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과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할 것인지를 제안하기 위함이다.

성평등한 과제로의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별로 차이가 있는 요구도를 반영하여 양성 모두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남녀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위치와 신체적 여건에 따라서 차별적인 생활환경, 태도, 자원 이용 및 접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 과제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남녀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적인 생활환경이 만들어지고 성별로 다른 요구를 발생시키는지는 다음의 가족생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⁴⁾.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어머니의 하루 일과는 대단히 짧은 시간 단위에 복잡한 동선을 갖고 있다. 반면 전일제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긴 동선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동일 학력에 결혼 전의 일 경험도 유사하지만 현재 부인은 돌봄 부담으로 인하여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원거리로 출퇴근하고 있다.

<표 5> 역할에 따른 일과의 차이

일/돌봄 병행 역할	전일제 생계부양자 역할
6:00 – 기상, 옷입기, 아이들 옷 입히기 아침식사 준비, 아이들 오전간식 준비, 세탁 7:00 – 딸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다주기 7:30 – 아들 지역 초등학교 태워다주기, 직장 출근 8:00~12:00 – 사무실 근무 12:00 – 아들 학교에서 데려옴, 오는 길에 점심거리 쇼핑	6:30 – 옷 입기,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 하기 7:30 – 직장 출근(직접 운전) * 버스·기차 운행간격이 너무 길어 자동차 이용 8:00 – 근무 시작 12:00~12:30 – 점심시간, 은행에 가고 싶지만, 은행은 정오에 문을 닫음 12:30~17:00 – 근무

4) EU 지역개발(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젠더 알프 지역에서 수행된 성별 요구 분석은 두 아이를 돌보면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여성(캐롤라인)과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는 남성(로버트)의 생활패턴에 대한 조사이다.

일/돌봄 병행 역할	전일제 생계부양자 역할
<p>12:30 – 점심준비, 아들과 점심 먹기, 세탁물 널기 13:30 – 딸 학교에서 돌아옴 14:00 – 딸 점심 준비 14:30 – 딸 숙제 도와주기 15:30– 아들 <u>스포츠클럽</u>에 데려다주기. 딸 이웃 마을 밸레교습소에 데려다주기 16:45 – 아이들 집에 데려오기 위해 출발 17:15 – 아이들 집에 데려오기 18:00 – 남편 퇴근 18:30 – 저녁식사 준비,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 19:00 – 아이들 재우기 20:00 – 다림질</p>	<p>17:00 – 볼일 보기 18:00 – 집에 도착 18:30 –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19:30 – 아이들 재우기 20:00 – 밴드 연습을 위해 차로 이동 22:30 – 집에 돌아옴</p>

출처 : Office for Women' Affairs & Gender Equality(2006), Gender Alp!. Spatial Development for Women and Men, Salzburg.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지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시간 구분 및 이동 거리와 동반자가 상이한 두 사람의 일상생활에 대한 요구는 상이하다. 즉, 여성이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한 사회문화적 위치와 고용형태와 같은 경제적인 위치로부터 비롯된 생활 여건의 차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차별적인 요구를 낳게 된다.

전일제 생계부양자 역할만 하는 남편에게 보육이나 안전, 늦게까지 영업하는 상점 등에 대한 요구는 발생하지 않았고, 스포츠/레저 시설도 주로 혼자 이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와의 거리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부인은 교통, 돌봄 서비스, 의료시설, 도로와 공원 등 지역의 공간구조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요구가 있다.

<표 6> 역할에 따른 요구 차이

요구	일/돌봄 병행 역할	전일제 생계부양자 역할
공통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교통 : 가까운 곳에 고속도로 진입로 위치 · <u>스포츠/레저시설</u> : 가까운 곳에 위치 · 쇼, 이벤트 등의 다양한 문화 생활 · 가까운 곳에 평생교육기관 위치 · 고용기회 : 유연한 근무시간, 남성의 출산휴가 	
개별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교통 : 인근지역까지 정기적으로 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 소득이 많아지기를 원함

요구	일/돌봄 병행 역할	전일제 생계부양자 역할
	<p>행하는 기차 또는 버스 (일요일, 공휴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좋은 상점 : 늦게까지 영업 (월~금 19:00, 토 17:00) ·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 방과 후 클럽, 오후 시간에 어린이를 돌봐주는 보육시설, 가정 보육교사 · 의료시설 : 의사, 약사 · 지역계획 : 넓은 오솔길, 신호등 센서 등 · 안전 : 시계의 중요성-거리 조명, 지하철 	

출처 : Office for Women' Affairs & Gender Equality (2006), Gender Alp!. Spatial Development for Women and Men, Salzburg.

이와 같은 요구조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동패턴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여도 가사와 돌봄에서 자유로운 일상과 그렇지 못한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동거리와 동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질 수 있다(오스트리아(2003), 이동패턴을 반영한 교통 연결체계 개선과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 도시). 아래 [그림 4]의 왼쪽 그림은 전일제 생계부양자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남성의 이동패턴 그림이다. 오른쪽 그림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의 일반적인 이동패턴 그림이다. 남성의 이동패턴 그림은 일정한 시간대에 직장과 가정의 두 목표점 사이를 이동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여성은 여러 목표점- 유치원, 학교, 상점, 병원, 레저 시설, 주택과 자신의 직장을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 여성이 짧고 복합적인 동선을 움직이는 것은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동선 내에서 아이나 노인을 동반하고 움직이는 경우도 빈번했다. 그런 점에서 가사와 돌봄에서 자유로운 일상과 그렇지 못한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동일한 도로 · 교통체계에 대한 편익이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림 4] 성별에 따른 동선의 차이



출처 : Land Salzburg(2006), Gender Practice and Criteria in Spatial Planning

이상과 같은 이동 패턴 분석과 생활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성인지적 분석에 따라서 교통 발전 계획이 수정되었다. 즉 장거리 교통과 근거리 교통 간 연결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중심지, 주거지 부근의 인프라와 소매점 등의 혼합 등의 다기능 시설화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의 도시를 만들게 된 것이다. 뮌헨시에서도 시민 이동성에 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여성은 장보기와 보호동반 일을 더 많이 맡고 있어 남성보다 동선연결이 더 복잡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뮌헨시 도로·교통 계획에 안전한 정류소 통로, 넓은 대기 장소, 악천후 대피소, 휠체어와 유모차에 적합한 정류소, 장애물 없는 차량통로, 전차 시간표와 노선도 정보, 높이 등에서 장애물 제거 등을 포함시켜 추진하였다⁵⁾.

세 번째, ‘전략 및 중점 과제’에서 ‘성별 형평성’에 대한 평가는 한편으로는 중점과제가 남녀의 신체·경제·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5) 뮌헨시가 지역개발 및 공간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르게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뮌헨시 의회가 발의한 도시발전구상(PERSPEKTIVE MÜNCHEN)에서 “...사회(복지)적 지방자치정책의 중점은 ... 도시발전에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시각과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정책 활성화와 더불어, 연방 정부 역시 양성에게 모두 공정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독일 연방건축법 제1장(일반도시건축법) 제1부(건축지도계획) 제1조 건축지도계획의 과제, 개념, 원칙은 계획 수립에서 주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3. 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 특히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의 욕구,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르게 미치는 영향 및 교육체계와 스포츠, 여가, 휴식의 중요성”을 삽입하였다(2007년 2월부터 효력).

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성별 요구가 골고루 해소될 수 있도록 과제가 계획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예산은 커다란 사업 영역별 – 추진 목표 또는 정책 방향 또는 추진 전략의 수준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로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수준으로만 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세한 분석 보다는 남녀의 신체·경제·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 과제에 적절한 예산이 할당되어야 하며, 여성에 대한 배제 등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은 향후 개선 계획의 방향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조치 사항은 두 측면에서 모두 제안될 필요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별 요구도와 성별 형평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개선안을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의 과정에서 성평등 한 계획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발견된 필요한 조치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양성에게 모두 공정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 방법으로 민관협력 방법이 추진될 예정이라면 ‘양성에게 모두 공정한 과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여성단체를 포함시킬 필요성을 제안할 수도 있다. 또는 성별 요구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기구에 여성가족부나 여성 전문가가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 평등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입을 제안할 수도 있다.

특히,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수립되는 계획이 ‘성평등에 유용할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다양한 부처의 중점 과제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에는 분석되고 제안된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1. 성인지⁶⁾ 관점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이란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 및 현상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한 대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실천력을 전제로 한다. 정부정책에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추진목적을 감안할 때 성인지 관점은 제도수행을 위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 특징과 기능이 다르고,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성별조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욕구와 이해(利害), 조건과 행동양식을 가지게 되며 국가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도 성별로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성별역할이나 특성에 대한 가치평가는 사회문화적으로 기대하는 성정체성(gender-identity)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성이 나타내는 성별고정관념 하에서의 남성적 특성이나 남성이 나타내는 성별고정관념 하에서의 여성적 특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일상적인 삶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도 유사하여 성중립성(gender neutral)을 가정한 몰성적(gender blinded) 기준이나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정체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책과 사업수행의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등으로 성을 구분하지 않거나 생물학적·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정책과 사업수행결과의 수혜에 성별격차가 나타나고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거나 고정관념이 반영되게 되면 성역할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6) 여성발전기본법 제 21조의 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에 의하면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국가정책이나 예산에 성별조건과 특성, 기대와 요구를 고려한 성인지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정책은 모든 국민의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모든 국민의 형평성 있는 수혜를 고려하여 수립,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 도시, 농촌, 근로자, 장애인 등과 같이 계층별·지역별 요소를 고려하듯이 성별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대상을 다양한 기준으로 집단화할 수 있으나, 가장 큰 집단으로 묶어낼 수 있는 기준이 성별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특성,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별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성별로 균등한 정책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성인지 정책이며 이를 위한 정책도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인 것이다. 이러한 성 인지적 정책은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수용하고 성·연령·직업·계층·학력·지역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이는 국제적인 정책 형성의 추세(trend)라고 할 수 있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성별 있도록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정책과 사업, 법령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평등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서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18개조항) 및 동법 시행령(14개조항),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정책의 분석·평가), 10조의 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조(정의)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및 현황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으로 정책에 대한 성 분석의 필요성이 명시되고 이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4년 시범사업을 실시 이후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통과로 제도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까지 정부부처와 국회,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연도별로 참여기관 및 분석대상과제수의 변화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 연도별 참여기관 및 과제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참여기관	9	53	187	278	295	298	292	293
대상과제	10	85	314	720	1,531	1,908	2,401	2,954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평가지표를 개발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지원해 왔다. 2004년도에는 법무부 등 9개 기관이 1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였다. 2006년도에는 적용대상을 넓혀 기초자치단체가 시범 참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의무 참여하고 시·도교육청이 시범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대상과제가 1,531개에 이르는 등 급증하였다. 2011년에는 국가성평등지수에 근거를 두고 지정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주요도구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성인지 예산과 연계하기 위하여 추진일정과 지표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지속적 증가는 과제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찾고, 이를 환류하기 위한 본 제도의 의미를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며 그동안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 등이 활성화되고 대상사업 수가 급증하고 관심도가 제고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시행의 성과도 있으나 대상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개선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지만 대상과제가 얼마나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정책과 사업이었는지,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관점훈련은 충분했는지, 분석결과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는지,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기관내의 관심과 노력은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것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시행과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요인을 보완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나 부서 간 협조가 미흡한 상황에서 담당자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스템화 되지 않은 업무수행절차 등 인프라도 미흡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은 국민과 주민에게 직접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책대상자가 아니거나 혹은 정책의 전후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지 않은 경우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시스템에 관한 개선사항도 제안되고 있으나 이것이 실행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긴 경우 역시 체감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011년 하반기에 통과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총칙, 분석평가의 실시, 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로 구성되며 분석평가 대상, 시기, 기준, 분석평가서 작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관련교육 및 자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등 제도운영을 위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미비한 법적근거로 인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소극적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국가정책의 큰 틀이 중앙행정기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분석결과가 성인지 예산에 연계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으며, 행정라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미

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정 정책 또는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성과 남성의 삶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자원·책임 및 권한에 있어서의 성별 불평등이 자원의 분배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제도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 결과에서의 성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성별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성형평성(gender equity)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결과가 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을 어떻게 계획, 집행할 것인가를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 based policy)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의 형성, 시행 및 평가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를 재구성하여 각 단계에서 성(젠더)관련 쟁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검토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Fin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99, 김양희, 2006에서 재인용). 대상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물, 유사사업의 성별현황, 정책대상자에 대한 현황분석 등을 참고로 하여 사업현황자료와 관련 통계, 법적근거와 지침 등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대상사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분석의 의미와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이다.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이 전제되어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 파악이 가능하고 분석결과의 타당성과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이다.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의

국민들의 삶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분야, 교육분야, 교통 및 시설분야, 경제활동 및 소득 분야, 문화 및 정보분야, 안전분야 등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분야의 대부분의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큰 방향을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전달받아 수행하며, 생활밀착형의 대민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분석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차별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별조건과 특성,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과 사업결과의 성별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성별로 다른 현실과 요구를 전제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기획,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거기반 대안(evidence based policy)을 마련함으로써 성별역할 분리와 성별 관계의 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전체적인 각종 기본계획과 방향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국가단위의 큰 방향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단위에서 결정되고 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나 부처별 연두업무보고, 예산사업설명서, 기관장 공약사업 등을 통하여 제시된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은 해당부처나 지자체의 핵심 업무이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 시민, 주민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며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 조건과 특성,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과 사업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5조(분석평가의 대상) 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여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7조(분석평가의 시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별조건을 고려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성평등한 사업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성별요구도 파악을 위하여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 경제적 위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지,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에서의 성별특성을 반영하여 성별형평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법령, 예산, 사업내용이나 수행방식에 대한 반영 등 성평등한 정책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4.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선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의 선정) 1항에 의하면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 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 4조(분석평가의 시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간평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대단히 다양한 범위와 형태로 존재하며 중요도와 파급력에도 차이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해당부처의 사업을 담아내는 형식은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성과관리시행계획, 예산사업설명서, 기관별 주요업무계획, 국회보고용 업무계획, 부서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기관별 주요업무계획, 의회보고용 업무계획, 세출예산사업설명서, 기관장 공약사업, 중점추진과제, 중장기 비전 계획등에 제시된다.

특히 매년 2~3월경에 수립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부처의 주요업무가 모두 포함되며 법령 제·개정 계획, 주요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사업추진의 성과목표 등 연간의 업무계획이 모두 포함되므로 기관별로 대상과제 선정시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출예산사업의 단위사업을 대상과제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의 세부사업을 분석단위로 함에 따라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위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을 분석할 경우 사업규모가 적어 분석결과의 유의미 수준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분석대상과제를 단위사업 수준에서 선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의미있는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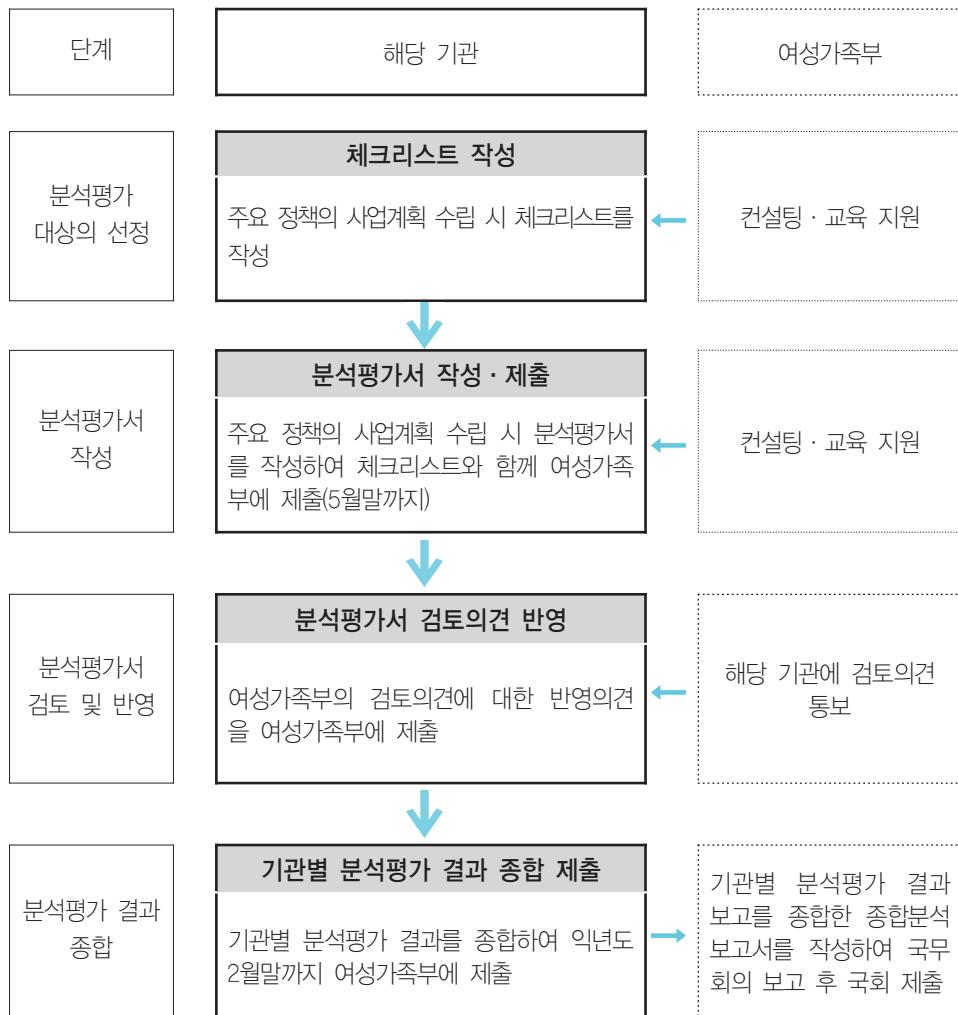
대상여부	세부항목
제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설치 ·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분석대상 선정기준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성별조건을 고려한 적극적 조치차원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대상 사업과 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기타 성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성별조건과 특성,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을 성평등하게 추진하도록 방향 전환시키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간의 인식 또는 입장이나 요구의 차이 뿐 아니라 성별 역할에 따른 경제적·사회문화적 위치의 차이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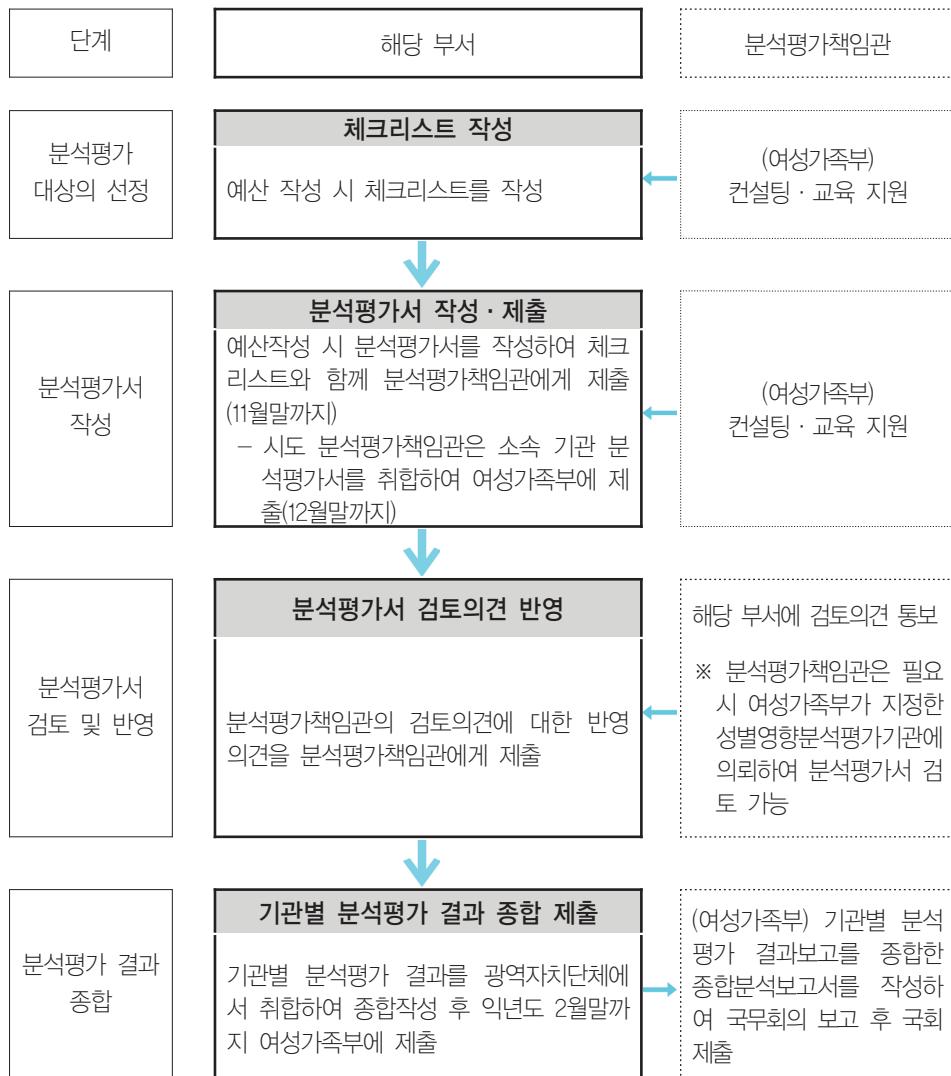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에 의하여 추진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분석대상과 제가 선정되면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 및 지시사항 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선정된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은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또한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차년도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서 작성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선정된 과제의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기관내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한다. 분석평가 책임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는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한다. 또한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차년도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성별 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3) 사업에 대한 성별특성 및 요구도 파악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조건과 특성, 요구를 반영하여 성평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이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경제적 위치·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도를 반영하고 있는지, 예산과 수혜에 있어서 성

66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교재 – 강사용

별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분석평가한다. 이러한 정책환경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추진을 성 평등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과 예산,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 사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책과 사업은 그 유형에 따라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차이가 있으며 정책영역별로 성별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정책영역별 성별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고려사항

정책 영역	고려할 사항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 정의는 가구 내 여성의 역할을 포함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인가? •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사와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가정 내에서 성별관계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는가? •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계획에서 한부모 가구와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표나 이상적 인간상의 정의가 남성을 중심으로 하여 정의된 것은 아닌가? • 여학생과 남학생은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대학 전공을 결정하는가? • 여학생과 남학생이 받은 교육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 사회는 고학력 여성들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 성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차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 진로지도나 생활지도상에 성별 조건을 고려하는가? • 남성과 여성의 교육기회는 실질적으로 동등한가? 그렇지 않다면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는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가? • 법과 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왔는가? • 인력육성의 영역별 성별 교육기회는 형평한가? •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우 성중립적으로 판단하여 참여기회나 수급의 성별차이는 없는가? • 대학교수의 성별비율은 어떠한가? 전공영역별 성별비율 및 여자대학 교수의 성별비율은 어떠한가? 보직교수의 성별비율은 어떠한가?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원인과 현황에 대하여 성별차이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는가?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고려하여 정의되는가? • 여성과 남성간의 사망률과 유병률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보험유형에 따른 성별 가입율 및 보험비용현황은 어떠한가? • 여성관련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험료 적용여부는 어떠한가? • 여성과 여학생이 건강관리나 금연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문화적인, 혹은 다른 장애물이 있는가?

정책 영역	고려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보험 수급의 성별차이는 없는가? 수급회수와 수급비용에서 성별차이는 어떠한가?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율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실업율의 산출이 여성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가? 같은 가치의 일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과 같은 보수를 받는가?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이 국가 통계에서 다루어지는가? 인구 조사와 다른 조사들이 가정 안팎의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성별로 다른 고용분야가 있는가? 성별임금격차가 있는가? 고용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규정이 있는가? 이 규정들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법이나 관습에 따라 여성의 수가 압도적이거나, 여성만 종사하는 직업이 있는가? 여성이 의사결정직에 오르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리한 시설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선반의 높이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시설이나 건축물의 이용자로 여성의 조건을 고려하는가? 시설이나 건축물 허가기준에 여성과 노인, 아동의 조건이 반영되는가? 시설이나 건축물의 안전성에 여성의 조건을 고려하는가? 건축물 위치나 실별 배치에 여성과 노인, 아동의 조건이 반영되는가? 재개발 지역의 이주민 가운데 여성 가구주 가구와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토지개발이나 지역개발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가? 공원에 마련된 운동기구가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중소 기업 및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산업종별로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이 어떠한가? 중소기업 산업종별로 성별참여율의 차이와 정부지원금의 크기는 어떠한가? 중소기업 산업종별 성별참여율과 일자리의 수에 있어 현황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중소기업 산업종별 성별참여율과 임금 및 고용안정성은 어떠한가? 중소기업의 규모별 성별참여율은 어떠한가? 중소기업 관련지원금의 성별요구도와 관련 산업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공공 질서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비행원인별 성별차이를 반영한 예방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범죄유형별로 경·검찰 공무원의 성별비율은 적절한가? 특히 여성관련 범죄담당공무원의 성별비율은 어떠한가? 폭력관련 현황조사에서 성별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범죄가해자 교육에 성별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위기청소년의 성별현황은 어떠한가? 성별로 다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가?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정책, 위기요인,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성별요구도는 어떠한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성별인식은 어떠한가?
농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구의 성별비율과 농가주(토지소유)의 성별비율은 어떠한가? 농어촌 자금지원에 대한 성별요구도는 파악하고 있는가?

정책 영역	고려할 사항
농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주민의 생활시간의 성별차이는 있는가? • 농어업 관련 기술유형의 성별요구도의 차이는 있는가? • 농기계 유형별 성별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있는가? • 농기계 훈련의 종목별 성별요구도는 파악하고 있는가? • 농촌지역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대표자의 성별은 어떠한가? • 농업 작목별 성별참여현황과 요구도는 어떠한가?
문화 체육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로 여가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 성별에 따른 관광(여행)의 특종, 유형 및 패턴은 어떠한가? • 각 지역의 공원 및 유원지의 이용자 편의, 안정성 증진 등 성별에 따른 고려를 통한 인프라가 적절한가? • 지역별로 나타나는 성별 관광유형 반영여부는 어떠한가? • 관광 분야 종사자(운영인력, 해설가 등)의 성별지위 및 임금은 어떠한가?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가구주의 성비는 어떠한가? •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중 여성가입자 비율은? • 수급권자의 성별 생활실태는 어떠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분석대상사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이 필요하다. 분석대상사업이 여성과 남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는지, 변화하는 성역할에 부응하는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는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분석대상사업의 영역, 수행수단,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통계 및 사업현황자료에 기반하여 도출된 객관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인지적 사업수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사업의 성별요구도와 성별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다.

4)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지표의 의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에 의하면 분석평가서를 작성할 때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5조(분석평가서의 작성)에 따르면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 정책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

석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년 지침에 제시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6> 201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고정관념 등에 따라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하고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경우 개선안 도출하여 반영방안 모색
		②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하고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경우 개선안 도출하여 반영방안 모색
		③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하고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경우 개선안 도출하여 반영방안 모색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④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사업수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성별특성을 고려하였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 도출하여 반영방안 모색
		⑤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예산배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성별특성을 고려하였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 도출하여 반영방안 모색
	3. 법령	⑥ 법령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도출
	4. 예산	⑦ 예산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도출
	5. 사업	⑧ 사업내용 ·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사업내용이나 수행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도출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성별요구도와 성별형평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성별요구도 분석을 위하여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 · 경제적 위치 ·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도를 반영하였는지 혹은 반영하여야 하는지 파악한다. 성평등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별로 차이가 있는 요구도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

가하는 것이다. 즉, 남녀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위치와 신체적 여건에 따라서 차별적인 생활환경, 태도, 자원 이용 및 접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성별요구의 차이는 사업 현황이나 관련분야 실태조사나 통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성별 역할에 따른 경제적·사회문화적 위치의 차이와 남성과 여성 간의 인식 또는 입장이나 요구의 차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과 연결되며 대상사업의 주제별, 유형별로 다르게 된다.

성별 형평성에 대한 분석은 사업이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경제적 위치·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를 반영하여 사업수혜의 결과와 예산배분이 형평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에 대한 성별요구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업수혜에서의 성별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업대상이 한쪽 성에 편중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비추어 그러한 경향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로 참여기회를 동일한 비율(50:50)로 배분하는 것은 성형평성(gender equity)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분야의 경우 여성참여율이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실행하는 복지사업에 참여기회를 성별로 동일하게 배분한다면 저소득층의 생계조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에서 여성의 생계보장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수혜분석은 성별특성과 조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배분에 대한 성형평성도 마찬가지로 성별로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사업설명서,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관련 분야 연구물 및 조사자료, 통계자료 등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과 사업에서의 성별조건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분리된 정보(양적, 질적)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gender segregated statistics)가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성별 요구도와 성별 형평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정책환경의 성별현황 분석결과는 법령 및 예산, 사업수행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는 객관적

자료인 각종 통계와 명확한 현황자료에 기반해야 한다. 즉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정책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며 이는 근거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 수립을 위하여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은 사업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향후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성별 요구도와 성별 형평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정책환경의 성별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며 법령이나 예산, 사업내용과 지침 등에 반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사업의 지속적 수행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은 분석대상 사업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제시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석대상사업의 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영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이 필요할 경우 법령이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제시되는 것이다. 또한 분석대상사업이 다른 사업과 시계열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성평등한 사업결과가 배가될 경우에도 관련 법적 근거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령이나 예산에 반영사항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 사항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업무이동이 잦은 공직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업무공백이 없이 성평등 조치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평등 조치사항이 법령에 반영되는 경우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등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교한 분석결과에 기반한 성평등 조치사항이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기반한 개선안이 생활체감형의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행가능한 구체적 개선안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성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 제시된 개선안이 효과적 인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통계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성인지 통계의 의미	75
2. 성인지 통계의 정책적 활용	83
3.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성인지 통계 활용	85

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통계

1. 성인지 통계의 의미

1) 성인지 통계의 개념과 의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기반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성인지 통계에 대한 생산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것은 성인지 통계가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성인지 통계의 의미와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한다.

성인지 통계(Gender Statistics)의 정책적 중요성 및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성인지 통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⁷⁾ 예컨대 Hedman et al.(1996)의 경우에는 성인지 통계를 단순한 남녀분리통계를 넘어서 남녀의 조건, 사회적 기여와 요구, 그리고 남녀의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는 통계로 정의한다. UN(2006)의 경우에는 모든 생활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차이와 불평등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통계를 성인지 통계로 정의한다. UNECE(2008)는 기존의 성인지 통계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성인지 통계를 전통적인 통계분야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통계 분야로 규정한다. 여성가족부·통계청(2011)은 성인지 통계를 협의와 광의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협의적 정의에 의하면 성인지 통계는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에서 남녀로 분리된 통계를 의미한다. 동시에 기존의 광의의 정의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제시된 일체의 통계자료로, 궁극적으로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계로 정의한다(〈표 1〉참고).

7)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별통계, 성별 분리 통계, 남녀별 통계는 성인지 통계와 그 의미가 유사하지만,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성인지 통계의 하위범주에 속한다(문유경·전기택·주재선, 2007).

〈표 1〉 성인지 통계에 대한 다양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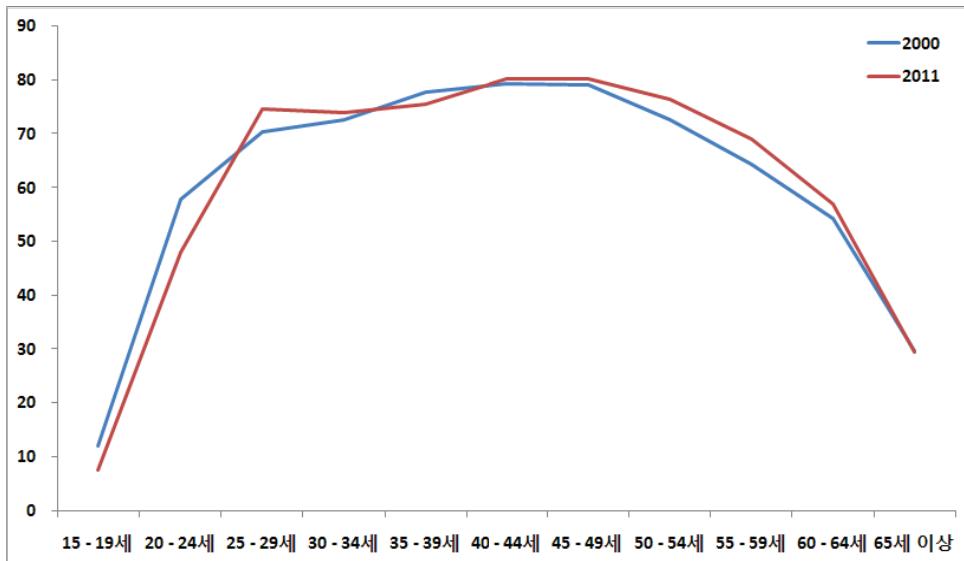
성인지 통계의 정의	
Hedman et al.(1996)	여성과 남성에 대한 통계 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조건, 사회적 기여, 요구와 남녀의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된 통계
UN(2006)	모든 생활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차이와 불평등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통계
UNECE(2008)	전통적인 통계 분야를 포괄하여 여성과 남성이 처한 삶의 현실 및 성별과 관련된 정책 이슈를 확인, 반영하여 생산, 공표되는 통계의 한 분야.
여성가족부·통계청(2011)	협의: 개별차원(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 광의: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한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

위와 같은 성인지 통계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성인지 통계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인지 통계의 기본적인 형태로서 남녀로 분리된 통계이다. 즉, 통계 생산 과정에서 남녀로 분리하여 조사, 발표된 통계가 성인지 통계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성별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수준에서 생산된 통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 현실과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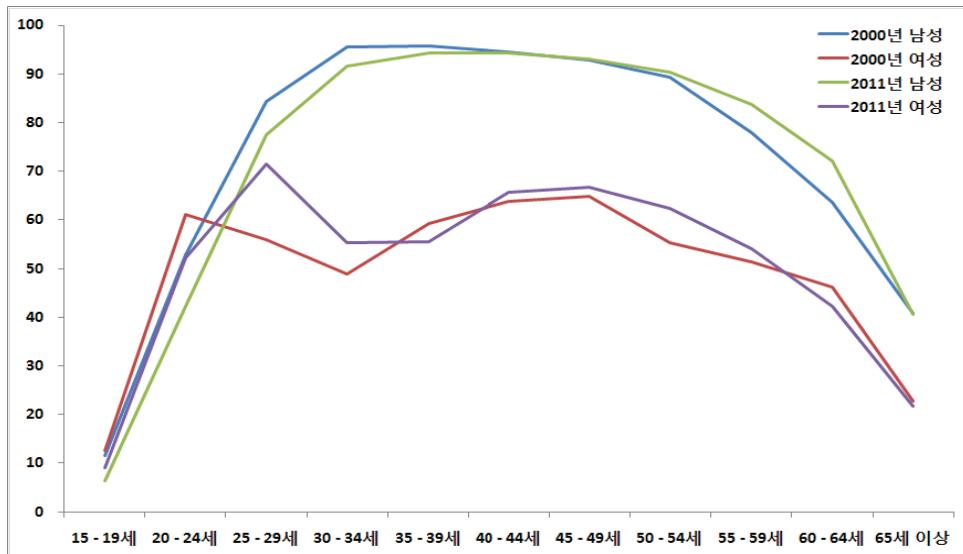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를 분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수준에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하면 역U자형으로 나타난다. 즉, 20대 초반까지 50%대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5세 이후부터 증가하여 40~44세에 절정을 이르고,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고).

그러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남녀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전체 수준에서의 결과와는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성별을 분리하지 않은 전체 인구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유사한 역U자형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 패턴이 나타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0대까지 증가하던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 초반에 감소하였다가 30대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는 M자형으로 나타난다 ([그림 2] 참고). 이처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과 다른 주된 이유로는 생애주기에서 출산·양육기에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따른 경력단절 때문이다.

[그림 1]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미분리(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그림 2]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분리(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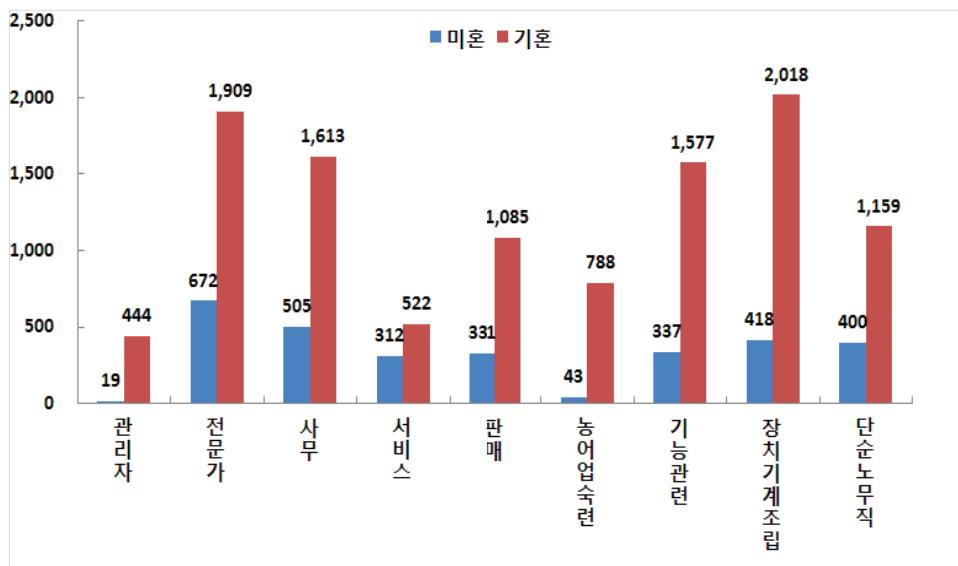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두 번째로는 조사항목이나 분석기준에서 남녀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가 성인지 통계의 범주에 속한다. 혼인상태는 남녀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예컨대, 2011년 현재 남녀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기혼남성의 경우에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서비스·판매직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등의 순으로 취업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고).

반면 기혼여성은 서비스·판매직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의 순으로 취업자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기혼남성과 달리 기혼여성은 서비스·판매직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특히 많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고). 이처럼 기혼여성이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에 많이 취업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들 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해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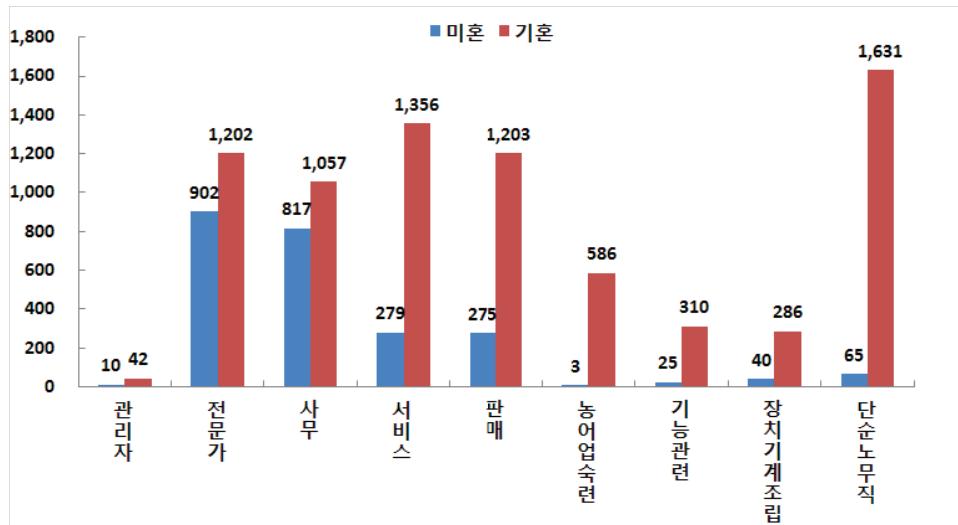
[그림 3] 2011년 남성취업자의 혼인상태별 직업분포(단위: 천명)



주. 기혼은 혼인상태가 유배우, 사별, 이혼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2012한국의 성인지 통계

[그림 4] 2011년 여성취업자의 혼인상태별 직업분포(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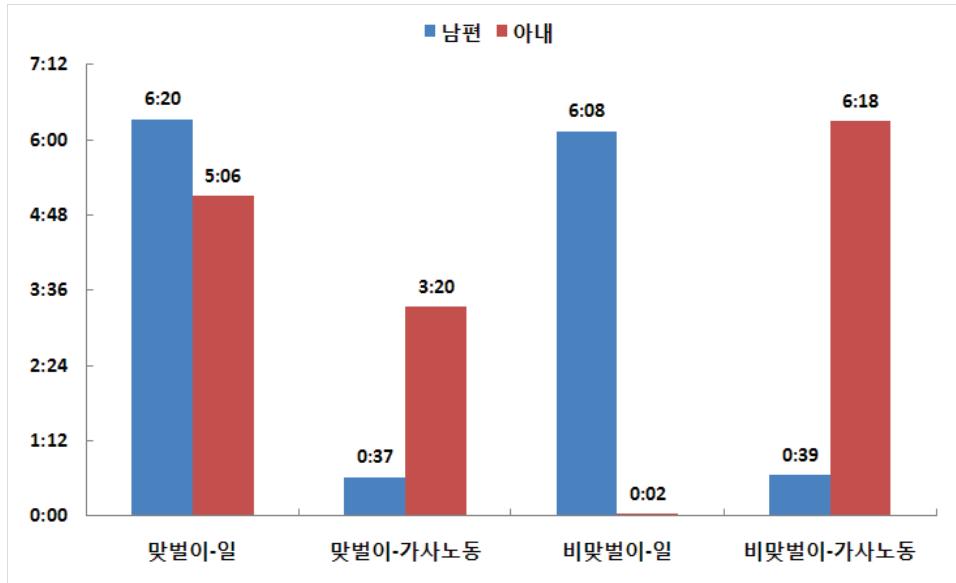
주. 기혼은 혼인상태가 유배우, 사별, 이혼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2012한국의 성인지 통계.

마지막으로 남녀가 처한 사회적, 개인적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는 통계들이 성인지 통계의 범주에 속한다. 이처럼 남녀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가 필요한 것은 기존 통계들이 상대적으로 여성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 유급노동을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공적 영역은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그와 관련된 많은 통계들이 생산된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가정에서 무급가사노동을 주로 수행하는데, 가정은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고,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그와 관련된 통계 역시 많지 않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통계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간사용조사(Time Use Survey)가 활용된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우에는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의 가사분담 실태,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자원봉사 등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 파악이 가능하다. 예컨대, 2009년 현재 맞벌이 가구 남편의 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37분, 홀벌이 가구 남편의 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39분으로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적으며, 일·가정 양립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에게도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고).

[그림 5] 2009년 맞벌이와 홀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단위: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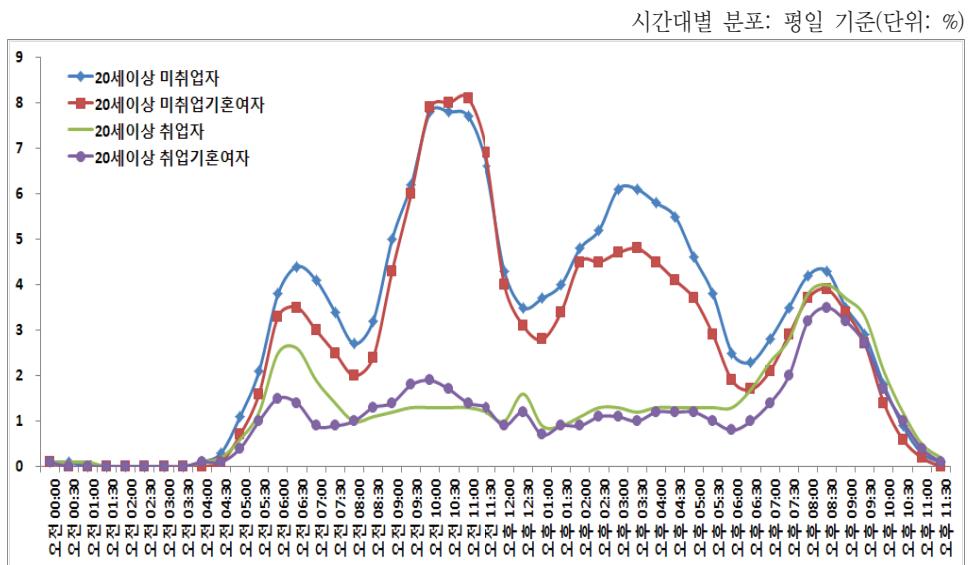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또한 2009년 20세 이상 성인의 평일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상태에 따라 시간대가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8시 등 비교적 고르게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취업자들의 경우에는 오전 6시와 오후 8시대에 주로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자신과 동일한 취업 상태에 있는 집단들과 유사한 시간대에 주로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6] 참고).

이러한 결과는 남녀 취업자대상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시간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평일 낮 시간대에 개설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취업자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남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출근 전, 퇴근 후 시간대에 개설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2009년 20세 이상 성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져 활동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시간사용조사 이외에도 가족조사,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조사 등은 가족에서의 여성지위와 삶의 만족도, 가족 내 남녀 관계, 여성의 특수한 경험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통계들이다.

2) 성인지 통계 관련법과 정책

우리나라 성인지 통계 생산은 크게 여성발전기본법과 통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등)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개정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1항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경우, 성별구분 등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의 시행령 제25조에서는 통계작성의 사항이나 대상이 자연인일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2010년 3월 통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통계책임관의 사무에 성별통계 작성을 추가함으로써 성인지 통계의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였다.

<표 2> 우리나라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통계법 및 시행령
<p>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개정 2010.1.18〉</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6.13]</p>	<p>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31〉</p> <p>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p> <p>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사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개정 2009.7.1〉</p> <p>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다면 성별구분을 포함한다.</p> <p>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다면 성별구분을 포함한다.</p>

여성발전기본법과 통계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법의 소관부처의 차이이다. 여성부가 소관부처인 여성발전기본법은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통계법은 통계주무 부처인 통계청소관법으로 다른 부처의 통계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행위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법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개인을 행위자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으로서 그 행위자가 명백하여 통계법이 보다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통계생산의 어느 단계인지 분명하지 않다. “통계를 작성한다” 함은 통계를 새로 생산하는 것에서 기존의 통계를 재분석

하는 것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통계법에서는 새로운 통계의 작성 시 조사사항에 성별구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문유경·전기택·주재선, 2007).

한편 성인지 통계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3-1-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의 일환으로 성별통계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통계의 성별분리를 포함한 '국가생산통계 중 모든 인적통계의 성별분리', 통계전담 조직·인력 확충,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성별통계 협력체제 구축을 포함한 '통계의 생산·활용 기반 정비', 통계작성 승인 심사지침에 성별통계 관련 사항 반영과 통계작성기관 배포 및 교육, 국가통계품질 진단 시 성별통계에 대한 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성별통계 생산 절차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 등도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표 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의 성인지 통계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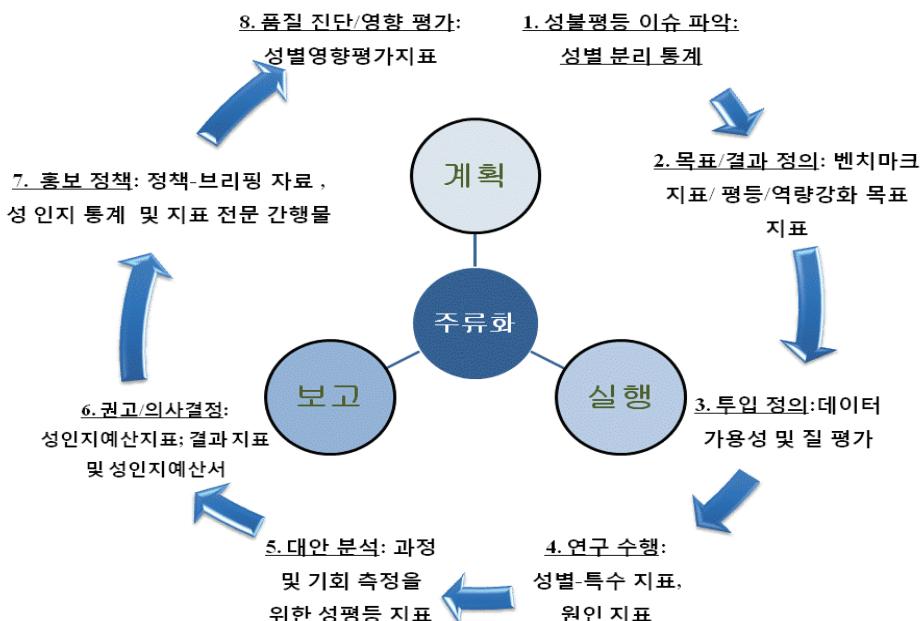
◆ 성별통계의 확립
○ 국가생산통계 중 모든 인적통계 성별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이 자체 생산하는 행정통계의 성별분리
○ 통계의 생산·활용 기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전담조직·인력확충 •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성별통계 협력체제 구축
○ 성별통계 생산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승인심사지침에 성별통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통계작성기관에 배포 및 교육 • 국가통계품질진단시 성별통계에 대한 점검 실시

2. 성인지 통계의 정책적 활용

성인지 통계는 정책단계와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성인

지 통계는 정책단계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성별분리통계를 이용하여 성불평등 현황과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양성평등정책 이슈(현안)를 파악할 수 있다. 정책목표나 결과를 정의할 경우에도 해당 정책이 지향하는 벤치마크(기준) 지표나 양성평등 목표 또는 여성역량강화 목표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성별 특수통계나 지표의 활용이 가능하다.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정책과정과 기회에서의 양성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성평등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해당 정책현안과 관련된 권고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성평등 결과 지표와 같은 성인지예산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그림 7] 참고).

[그림 7] 정책단계별 성인지 통계 및 지표 활용



자료: Jafar(2009). "Gender Indicators in Evidence-based Policymaking"Figure 1: Gender statistics and indicators in policy cycle.

한편 정책 수준에 따라 활용되는 성인지 통계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관리하는 국가비전과 전략 목표 설정 및 추진과 관련이

있는 국가수준의 국정의제는 “국정과제”로 체계화되어 관리되며, 예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정의제와 관련이 있는 성인지 통계는 정치경제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고, 남녀소득 격차 등이 대표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담당부서 수준에서 해당 부처의 정책현안과 관련된 정책의제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연간업무보고에 반영되어 관리된다. 부처의 정책과제와 관련된 성인지 통계는 정책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여성 고용 관련 담당부처 등에서 활용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담당부서의 사업단위 수준의 예산의제는 성과(관리)보고서나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 및 예산 관리지표와 연관된 성인지 통계가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 성별수혜자 통계가 대표적인 성인지 통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윤영진 외, 2008).

3.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성인지 통계 활용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재·개정 법령,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그리고 이 법의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고려사항 가운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이다. 즉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를 위해 성별통계, 성인지 통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므로 이들 일차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6조에 따라 성인지 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법령과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의 성인지 통계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의 성인지 통계 활용 사례

여성가족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수록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사례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이 85.5%”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산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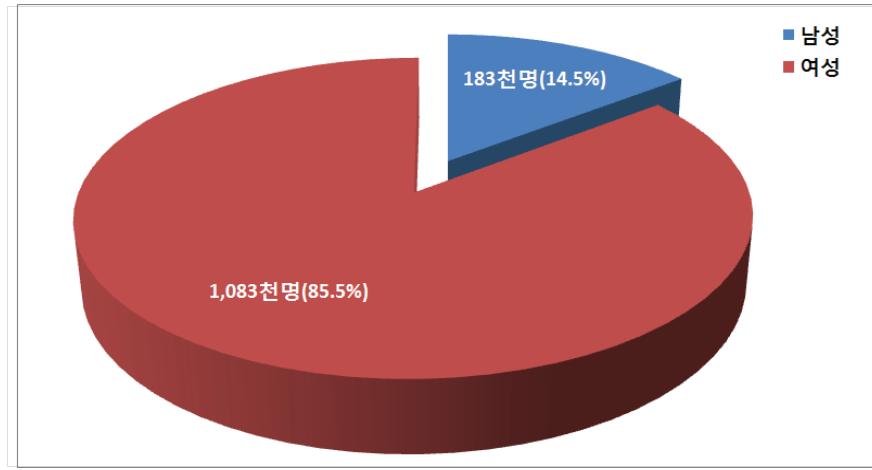
것이다. 즉,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무급가족종사자는 1,266천 명이다. 그리고 이들 무급가족종사자 가운데 남성은 183천명으로 전체 무급가족 종사자의 14.5%, 여성은 1,083천명으로 85.5%로 나타난다. 또한 2010년 전체 남성취업자 13,917천명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남성 취업자 100명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는 1명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반면 같은 해 전체 여성취업자 9,914천명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로 여성취업자 100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무급가족종사자로 나타난다. 즉, 전체 무급종사자와 전체 여성취업자 사이에서 여성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분석 근거>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적용범위이므로 무급 가족종사자(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가족 등)는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지 못함						
○ <u>2010년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이 85.5%</u> 로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옴						
□ <해당 조항>						
○ 제25조제2항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 자영업자와 공동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도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 제25조제2항제2호 개정						
□ <해당 조항 개선안>						
<table border="1"> <tr> <td>제 · 개정안</td> <td>개선안</td> </tr> <tr> <td> ○ 제25조 ②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td> <td> ○ 제25조 ②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배우자</td> </tr> </table>	제 · 개정안	개선안	○ 제25조 ②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제25조 ②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배우자		
제 · 개정안	개선안					
○ 제25조 ②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제25조 ②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배우자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p.30.

[그림 9] 2010년 무급가족종사자의 성별 구성



이미 살펴본 2010년 남녀 무급가족종사자 통계는 해당 통계의 공표기관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국가통계포털(KOSIS)을 비롯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은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통계표 조회 과정 예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홈 페이지 접속⇒전문가 템 선택⇒여성통계DB⇒경제활동⇒여성취업⇒종사상자위별 취업자(성별) 선택

88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교재 – 강사용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URL(<http://gsis.kwdi.re.kr/gsis/kr/main.html>)

◆통계표 조회화면

성별	2008			2009			2010				
	취업자(현명)	취업자(현여)	합계	취업자(현명)	취업자(현여)	합계	취업자(현명)	취업자(현여)	합계		
전체	1,491	1,341	1,355	16,296	16,454	16,371	14,096	14,491	15,154		
무급가족조사자	3,006	2,816	2,683	1,428	1,310	1,276	1,230	1,164	1,083		
임금근로자	1,776	1,652	1,601	6,888	6,955	7,230	5,899	6,042	6,393		
상시근로자(상용·임시)	5,007	9,390	10,086	상용근로자	5,079	5,101	5,068	임시근로자	2,121	1,963	1,817
일용근로자	9,874	9,772	9,914	비임금근로자	3,417	3,265	3,255	고용유지 있는 자영업자	1,428	1,310	1,276
기타근로자	1,776	1,652	1,601	고용유지 없는 자영업자	1,230	1,164	1,083	무급가족조사자	6,888	6,955	7,230
제조업자	1,491	1,341	1,355	상시근로자(상용·임시)	5,899	6,042	6,393	상용근로자	2,954	3,051	3,421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의 성인지 통계 활용 사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특히 성인지 통계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이다. 이 부분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성별 이슈(gender issue)를 점검하고, 수혜분석을 실시한다. 그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성인지 통계와 함께 해당 사업 수혜자와 관련하여 부처가 작성한 행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서 소개하고 있는 “농기계훈련사업”을 중심으로 성인지 통계 활용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남녀 농업인을 농업기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기계화영농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주요 통계는 통계청 통계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1]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조회 과정 예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접속⇒주제별 통계 선택⇒농림어업⇒농림어업총조사⇒농업⇒2010년⇒농가⇒농기계보유농가및보유대수⇒통계표 조회화면⇒특성별: 경영주 성별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KOSIS homepage with the following navigation bar:

- HOME | 나의통계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ENGLISH | 메뉴전체보기
- 국내·국제통계 | 특집통계 | 테마통계 | 지역통계 | 통계교실 | 통계알리미

In the left sidebar, under '주제별' (Subject), '농업' (Agriculture) is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shows the search results for '농업' (Agriculture) under '농림어업'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 specific link for '2010년 농가' (2010 Agricultural Household) is highlighted.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sidebar with various links and a 'QUICK MENU' section.

◆국가통계포털 URL(<http://kosis.kr/index/index.jsp>)

◆통계표 조회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results for '농가' (Household) under '2010년 농가' (2010 Agricultural Household). The results are categorized by gender (Male/Female) and include various sub-categories such as '경지규모별 농가' (Households by cultivated land area), '농지면적규모별 농가' (Households by agricultural land area), and '농업부문별 농가' (Households by agricultural sector).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sidebar with various links and a 'QUICK MENU' section.

90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교재 – 강사용

KOSIS 국가통계포털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농기계 보유농가 및 보유 대수 - KOSIS

조회기간 : 2010 ~ 2010 | 조회 | 기본통계표 | 통계설명자료 | 스크립트 | 자료문의 | 도움말

수록기간 (부정기 : 2010 ~ 2010)

한글보기 | 소수점 | 계층 칼럼 구분 | 첨단워크 | 가중치보기

승차보기 | 학년 | 농업구역별 | 품목별 | 2 | 표설정 | 시계열선택 | 경제조간당기

농기계 보유농가 및 보유 대수

설명 : 블록 또는 한글영문 마우스로 위치를 바꿔가며 피벗을 사용하고, 숨김영역으로 훑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별	특성별	2010					
		농가(가구)	경운기·농가(가구)	대수(대)	트랙터·농가(가구)		
①전국	②남자	959,064	554,481	595,322	230,544	246,801	80,99
	③여자	216,254	68,126	70,479	12,938	13,361	3,59
④동부	②남자	167,036	64,230	68,310	23,792	26,088	6,21
	③여자	35,736	6,960	7,239	1,701	1,769	50
⑤서부	②남자	183,101	97,004	103,393	40,763	43,986	13,67
	③여자	37,284	11,114	11,500	2,200	2,255	60
⑥연부	②남자	588,927	393,247	422,619	165,969	178,727	56,10
	③여자	145,234	50,052	51,740	9,107	9,359	2,46
⑦서울특별시	②남자	3,493	695	695	324	372	6
	③여자	630	56	62	29	29	
⑧부산광역시	②남자	6,886	3,493	4,097	1,883	2,170	65
	③여자	1,571	440	492	154	168	4
⑨대구광역시	②남자	14,372	6,652	7,265	1,946	2,059	68
	③여자	2,602	826	860	157	162	4
⑩인천광역시	②남자	11,641	6,703	7,057	3,520	3,775	1,46
	③여자	2,194	663	675	187	199	5
⑪광주광역시	②남자	10,304	3,407	3,855	1,503	1,694	46
	③여자	2,775	453	469	115	122	2

출처 :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농업이용조사 [2010]

문의처 :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

e : 추정치, p : 경정치, -: 자료없음, ... : 미상자로 주소록사 통계청

https://kosis.kr/ahenad/ahenad_011/list_kosislink

I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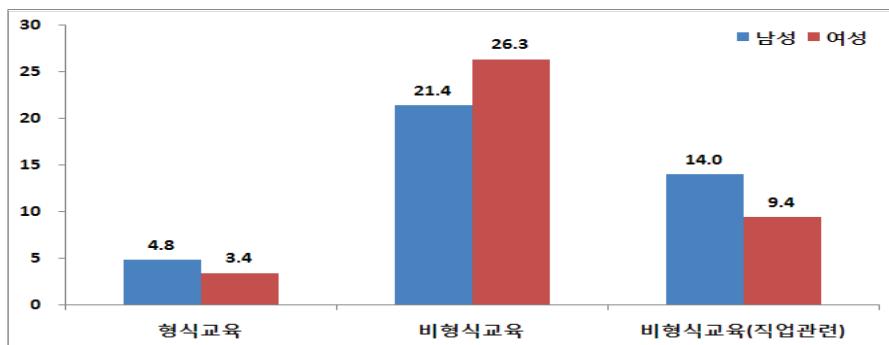
① 성별 요구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농촌문화, 노동집약적인 농사일과 가사일의 병행, 농기계 조작은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크다는 인식 등으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도에 차이 발생
 - 일반적으로 성인남녀의 평생학습참여율은 농촌에서의 농기계 교육훈련과도 관련되므로 평생학습 참여율('08년 현황)을 살펴보면,
 - 일반적인 비형식교육을 제외하고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남. 특히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여성참여율은 10%미만이며 남성은 14.0%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직업관련 교육 참여율이 낮게 나타남.

[그림 12] 2008년 25-64세 남녀의 학습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단위: %)



주. 형식교육은 학교교육과 같이 교육내용, 과정, 방식이 제도화, 표준화된 경우, 비형식 교육은 사회 교육과 같이 교육내용, 과정, 방식이 엄격하게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해당 사업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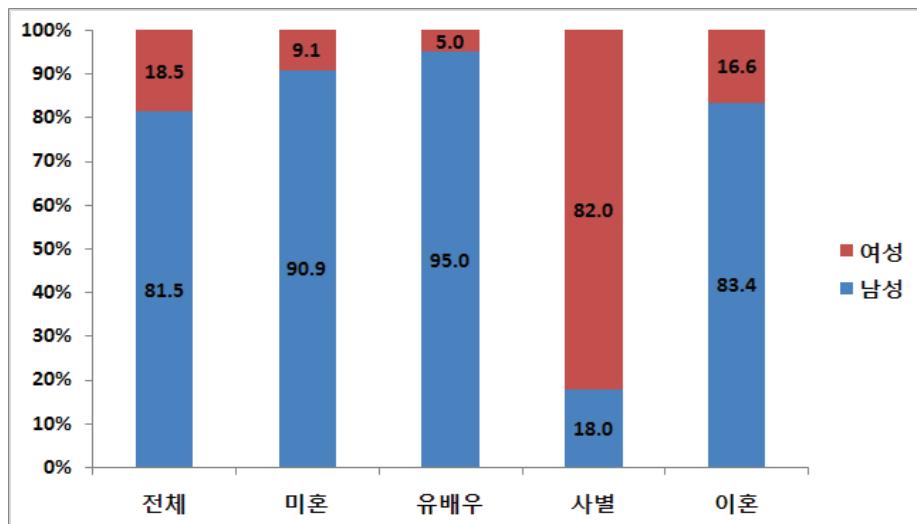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 및 시범운영 실시
-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의 교육대상에 여성농업인(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여성) 추가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대부분 농가경영주(사업주)는 남성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농기계 교육 시 농가경영주의 동업자(배우자 등) 교육에 대한 요구 발생
- 2010년 현재 남녀 농가경영주의 혼인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 농가경영 주의 90.9%, 유배우 농가경영주의 95.0%, 사별 및 이혼 농가경영주의 남성 비율은 각각 18.0%와 83.4%로 나타남.
- 따라서 유배우 남성 농가경영주들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기계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큼.

[그림 13] 2010년 남녀 농가경영주의 혼인상태별 분포(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해당 사업 개선안>

- 농기계 교육 시 농가 경영주의 동업자 교육을 독려하고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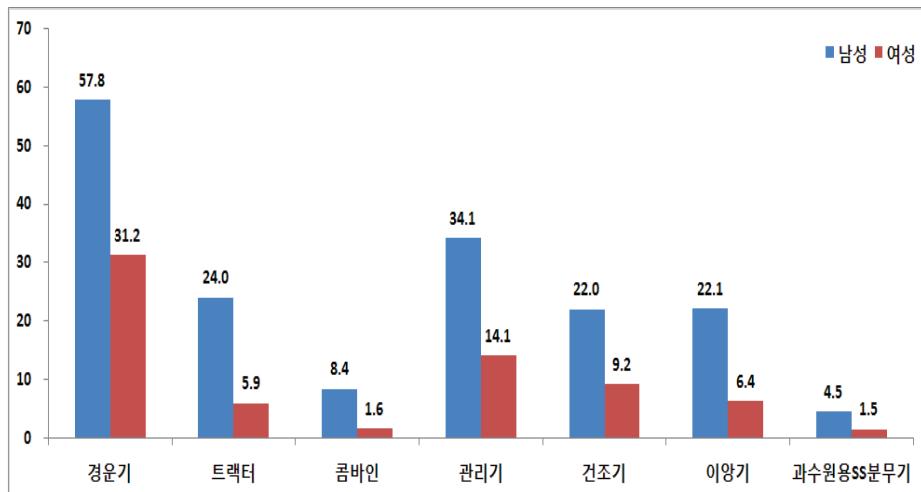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여성은 농기계 사용 및 조작에 대한 숙련도 차이 및 신체적 차이로 인해 주로 소형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남녀 농가경영주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경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두 번째로는 관리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농기계가 트랙터인 반면, 여성은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대형 농기계에 속하는 트랙터를 남성 보다 여성이 적게 보유함.

[그림 14] 2010년 농가경영주 성별 농기계 보유율

(단위: %)



주: 해당 농기계 보유구구 수/남(여)성 농가경영주 가구: *1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해당 사업 개선안>

- 농기계 사용 숙련도에 따른 수준별 · 단계별 교육과정 도입

2 성별 형평성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분석 근거>

- 최근 3년 동안 여성 수혜자 비율이 15%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16,799명	25,193명	14,400명
여성(비율)	2,140명(12.7%)	2,863명(11.4%)	2,004명(13.9%)
남성(비율)	14,659명(87.3%)	22,330명(88.6%)	12,396명(86.1%)

※남녀 사업대상자 분포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2,719,000명	2,634,000명	2,634,000명
여성(비율)	1,422,000명(52.3%)	1,356,000명(51.5%)	1,356,000명(51.5%)
남성(비율)	1,297,000명(47.7%)	1,278,000명(48.5%)	1,278,000명(48.5%)

<해당 사업 개선안>

- 2012년 여성 수혜자 비율은 17%로 상향 설정함.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분석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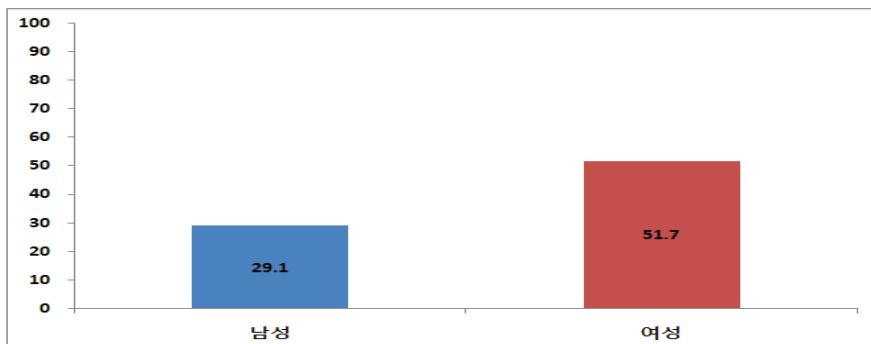
- ※ 농기계훈련사업: 2,3411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2,594백만원	2,464백만원	2,341백만원
여성(비율)	329백만원(12.7%)	281백만원(11.4%)	325백만원(13.9%)
남성(비율)	2,265백만원(87.3%)	2,183백만원(88.6%)	2,016백만원(86.1%)

□ <해당 사업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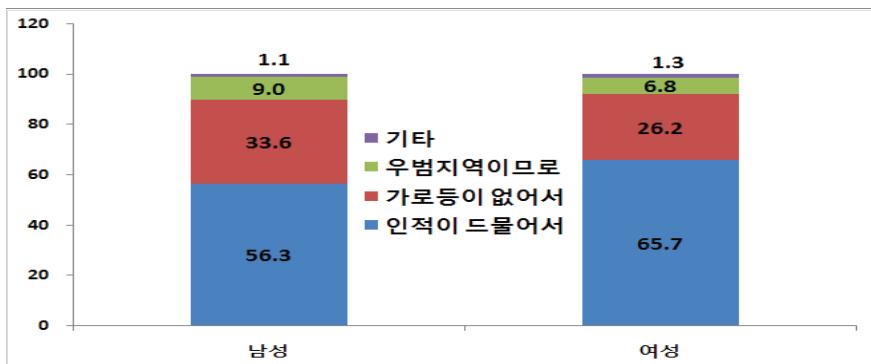
-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여성 농업인의 참여율을 제고하여 예산배분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함. 한편 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역시 중요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이다. 아래의 그림은 2010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야간에 혼자 걷기에 두려운 곳이 있는가에 대한 남녀의 응답 결과이다. 13세 이상의 사회조사 응답자 가운데 여성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혼자 걷기에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야간에 혼자 걷기 두려운 이유로 ‘인적이 드물어서’, ‘가로등이 없어서’ 등이 남녀 모두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성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을 혼자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계는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곳을 결정하거나, 도시재건축 등을 통해 인구유동을 상시화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5] 2010년 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그림 16] 2010년 성별 야간에 혼자 걷기 두려운 이유(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96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교재 – 강사용

〈붙임〉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사업명 :

I. 개요

□ 사업 목적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

□ 추진 근거

-

□ 주요 사업 내용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1년(A)	2012년(B)	증감(B-A)

* 자료자체는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작성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① 성별 요구도

※ 사업의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①~③)은 통합 작성 가능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해당 사업 개선안>

-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해당 사업 개선안>

-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해당 사업 개선안>

-

2)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분석 근거>

	2010년	2011년
전체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2012년 사업수혜 작성

○

<해당 사업 개선안>

○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분석 근거>

○ ※ 사업명 및 예산 규모 기재

<해당 사업 개선안>

○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6.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7. 예산 반영 계획	
8. 사업내용 ·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II

각 론

- | | |
|--------------------|-----|
|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103 |
|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165 |
|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233 |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고보혜(전남대학교 법학강사)

2.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1. 성평등에 관한 우리 법체계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과 법령을 성인지적으로 수립·시행·평가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마련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그리고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 대상을 법령으로까지 확대하고 법령이 제정·개정되기 전인 입법과정에서의 사전분석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입법의 기준 및 사전·사후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은 국가 내에서 최고 실정 법 규범인 헌법이며, 헌법에서의 평등원칙 및 각 영역에서의 성평등 규정과 이를 근거로 구체화 된 성평등과 관련한 각 법령 등 우리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1)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과 성차별 금지를 선언한 양성평등의 원칙

조항이다.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상의 이 기본원칙의 효력에 의해 국가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진다.

2) 정치적 · 공적 영역에서의 성평등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 제24조, 제25조는 정치적 · 공적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이 헌법정신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 노력과 지방자치제 실시 등의 정치발전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고조되어 오면서 여성정치력의 조직화와 여성의 정치적 참여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근로 영역에서의 성평등

헌법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성의 신체적 · 생리적 특성에 따른 모성보호에 근거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규정이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성평등

헌법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는 사회적 생활영역에서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한 규정으로서 현대 민주주의국가가 갖는 사회적 법치국가원칙에 근거하며,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한 국가의 이행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되는 법으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있다.

5)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관계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이며, 개인의 존엄, 혼인의 자유,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적 가족제도에 대한 하나의 제도적 보장 규정이다. 따라서 민법 중 친족·상속편에 해당하는 가족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적의 취득과 상실, 귀화 등에 관한 국적법과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 및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섭외적 생활에 관한 국제사법도 이 헌법정신에 합치되어야 한다.

1990년대에 이르면서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이에 반하는 가족법 관련 규정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지던 동성동본금혼 규정, 부성주의 규정, 호주제 규정, 약혼연령과 혼인연령에 있어 남녀차이를 둔 규정 등과 같은 가족법의 개정작업이 최근에 대폭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사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사례와 대법원의 판결 사례, 또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사례들을 성별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1) 성별구분

- 가. 동성동본금혼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현재 1997. 7. 16. 95헌가6 등

제809조(동성혼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동성동본금혼규정은 혼인금지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만으로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시인할만한 윤리적, 유전학적 이유 등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동성동본금혼규정은 이미 사회적 타당성 및 합리성을 상실하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고 하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의 위헌결정으로 민법 제809조는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로 2005년 개정되었다.

나. 부성주의(민법 제781조제1항) 위헌제청 사건; 현재 2005. 12. 22. 2003헌가5 등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민법 제781조 제1항 부성주의 조항의 위헌성은 부성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성주의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다.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 사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의식,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중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 성의 사용 기준에 대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 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 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

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현재의 위헌결정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주의 원칙은 취하되, 부성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의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로 2005년 개정되었다.

**다.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
현재 2000. 8. 31. 97헌가12**

제2조(국민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법조항은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가져온다. 이렇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배우자의 한쪽이 한국인 부인 경우와 한국인 모인 경우 사이에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모두 그 자녀는 한국의 법질서와 문화에 적응하고 공동체에서 흔 없이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동등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가족의 국적을 가부(家父)에만 연결시키고 있는 구법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모가 한국인인 자녀들은 외국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가배상청구권 및 사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법조항은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인 모의 자녀를 한국인 부의 자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

등원칙에 위배된다.

해당 구법 조항이 개정되어, 현행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라. 여성의 종회회원확인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05. 7.21 선고 2002
다1178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친회는 시조 길권의 18세손 말손을 중시조로 모시는 종회인데, 1999년 3월 종종 임야 3만여 평을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한 대금 350억원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면서 종회의 성년 남성에게 1억5천만원씩, 미성년 남성에게 1천650만원~5천500만원씩을 나눠줬다. 하지만 성년 여성에게는 3천300만원씩, 미성년 여성에게는 1천650만원~2천200만원을, `재산분배`가 아닌 `증여` 형식으로 지급했고 그나마 출가여성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출가여성 100여명은 "여성자손은 자손도 아니냐"며 종친회장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해 1인당 2천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종친회가 여성을 차별한 채 종중재산을 분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인 이원숙 외 4명은 종회를 피고로 원고가 종회의 회원임을 확인하는 소를 2000년 4월 제기하였다. 피고의 종종 규약 제3조에는 "본회는 용인 이씨 사맹공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소를 제기하면서, 위 규약에서 회원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도 피고 종회의 회원(종원) 자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관습상의 종종과 다른 종종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던 사안이다.

이 사건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0가합5711 판결)은 2001. 3. 23.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나19594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습상의 종종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여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 종중의 규약이 회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성년의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로 인하여 여자들이 피고 종중의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종중의 회의에 여자들이 참석한 적이 없었고 종종은 성년의 남자를 구성원으로 자연적으로 성립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 종중이 규약을 통하여 관습상의 종

증과는 다른 종종 유사의 사단으로 변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종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에만 의하여 생태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례는 대법원 역사상 최초로 공개변론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에만 의하여 생태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마. 서울YMCA의 여성 총회원 확인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다 19864

서울기독교청년회의 현장에 따르면 총회원은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그 자격이 정해져 있었으나, 그동안 회원부가 총회원 명단을 만들면서 여성 회원들은 모두 제외시켰기 때문에 서울기독교청년회 창설(1903년) 이래 여성 회원은 단 1명도 총회원이 되지 못했다.

서울기독교청년회의 여성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총회원으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 2003년 100차 정기총회에서는 의사결정 과정과 선거

권과 피선거권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성차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나, 이후에도 어떤 여성 회원도 총회원으로 선정된 바가 없었다.

이에 2005년 서울기독교청년회의 뜻을 모은 여성 회원들과 남성 회원 일부가 서울기독교청년회와 동회의 이사들을 상대로 여성 회원의 경우 성차별과 총회원이 되지 못한 점 등에 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남성 회원의 경우 성차별적 단체 소속이라는 비난을 듣게 된 점에 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이다.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2852 판결)은 여성을 총회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현장과 100차 총회 결의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사적인 내부 관계가 곧바로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사법상의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내부에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비법인 사단의 내부 문제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72665 판결)은 “…초기 연혁이나 정체성을 내세워 그 구성이 변경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그 구성원인 회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 오로지 그 성별만을 이유로 사단의 의사결정이나 기관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범주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11조가 선언한 평등권의 원리 및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서울기독교청년회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 YMCA)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이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차별이라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사적단체가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용인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의 근거로, 해당 단체가 어느 정도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라는 점과 이미 구성상으로 남성 중심의 단체가 아니라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 대법원 판례는, 단체의 자율성이나 사적자치 원칙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사적인 단체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바.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⁸⁾; 개선이 필요한 모니터링 사례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건국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4. 자부(子婦)로서 1948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는 유족의 범위에 일괄적으로 사위는 제외하고 며느리만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양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성별을 기준으로만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특정성이 특정한 성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념을 고정화할 위험이 있다.

국가의 안전과 안위, 또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유가족의 범위를 며느리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이라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이, 며느리와 사위를 모두 포함하되 실제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방법 등을 통하여 성별이 아닌 개인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유가족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성별 고정관념

가. 호주제(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778조) 위헌제청 사건⁹⁾; 현재 2005. 2. 2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제778조 (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8) 이 법률안의 해당조항은 ‘성별구분’과 ‘성별 고정관념’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됨.

9) 이 법 해당조항은 ‘성별구분’과 ‘성별 고정관념’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됨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남계혈통 위주로 가를 구성하고 승계한다는 것은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아들과 딸을, 즉 남녀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 또한 호주제의 남녀차별은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다.

민법 제778조는 민법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¹⁰⁾와 결합하여 호주 지위의 승계적 취득에 있어 철저히 남성우월적 서열을 매김으로써, 모든 직계비속남자를 정상적 호주승계자로 놓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가를 계승시키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호주 지위가 주어지는 잔여법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호주승계 순위에 있어 남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여자는 혼인하면 법률상 당연히 부(夫)의 가에 입적하게 되는바, 이 조항은 민법 제789조와 결합하여 호주승계에 있어서 여자의 열등적 지위와 결합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어려서는 아버지(때로는 오빠 또는 남동생)의 가에, 혼인하여서는 남편의 가에, 늙어서는 아들의 가에 귀속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예정하는 개인의 존엄에 반하며, 혼인 시 신분형성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부가(父家)에 입적된다는 것으로, 부(父)에 비하여 모의 지위를 열위에 둠으로써 부당히 차별하는 것이며,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자를 양육하는 경우, 처가 부(夫)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을 가에 입적시키려는 경우, 미혼모의 경우 등에 있어 모와 자녀가 현실적 가족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비정상적 가족으로 취급됨으로써 사회생활의 불편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10)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고통을 겪게 되어,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재의 위헌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개정된 민법은 호주와 가족의 관계 및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에의 입적 등에 관한 제778조 내지 제795조의 조문들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한편 호주승계에 관한 민법 제980조 내지 제996조를 삭제하였다.

나.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사건¹¹⁾; 현재 2009.11.26. 2008헌바58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로 낙인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남녀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로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현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법 제304조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형법 제304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모범 모니터링 사례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 한 사람은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9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중 다음 각호의 사람도 제1항

11) 이 법 해당조항은 ‘성별구분’과 ‘성별 고정관념’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됨.

과 같다.

1. 양육, 교육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2. 양육, 교육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현행 13세 미만의 의제강간죄에서 간음행위의 객체를 13세 미만의 여성으로 성별에 따라 제한하고 있던 것을 남자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13세 이상의 남녀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의제강간의 객체를 남자아동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인지적 고려가 엿보인다.

여성만을 강간죄의 객체로 삼고 있는 현행 규정은 남성이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함과 동시에 여성의 성적 순결을 남성보다 중요시하는 성별 고정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고정 관념을 탈피한 모범 모니터링 사례

제18조의2(배우자의 출산휴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만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유급화하여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부담의 분담을 촉진함으로써 성별고정관념 탈피에 일조하며, 출산 초기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 및 부성의 보장,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건강 증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영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모범 모니터링 사례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률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여성근로자 규모기준을 삭제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정함으로써 육아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두는 성별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양육에 있어 부부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²⁾; 개선이 필요한 모니터링 사례

제50조(육아휴직)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여성근로자는 3년) 이내로 한다.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만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남녀근로자간 육아 휴직 기간에서 차등이 발생하게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서의 성별 차등기준 적용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남성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다.

그리고 이는 남성은 가족 부양, 여성은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 적합하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반영하여, 이와 같은 성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여성에게 양육책임이 편중되는 현상을 보정하는 데 부작용을 미칠 우려가 있다.

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¹³⁾; 개선이 필요한 모니터링 사례

제73조의2(불임치료휴가) 사용자는 불임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불임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임치료 휴가를 줄 수 있다.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치료휴가를 여성근로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시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임신이 여성의 책임이며 불임의 주된 원인이 여성에게 있고 임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도 여성이라는 오래된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¹⁴⁾; 개선이 필요한 모니터링 사례

12) 이 법률안의 해당조항은 ‘성별구분’과 ‘성별 고정관념’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됨.

13) 이 법률안의 해당조항은 ‘성별구분’과 ‘성별 고정관념’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됨.

14) 이 법률안의 해당조항은 ‘성별구분’과 ‘성별 고정관념’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란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다.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교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버지의 참여 배제, 어머니는 자녀교육의 주담당자라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⁵⁾; 개선이 필요한 모니터링 사례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④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와의 개방접견 의무화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남성수용자의 부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여성수용자의 수유 등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취급은 적합하다 하겠으나, 연령이나 사유 등의 제한 없이 모든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별하는 차별취급은 평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여성의 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여성을 모성적 존재로서의 재현하는 태도는 전형적 성별고정관념으로 여성의 모성역할을 강조하는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남성과 특별히 구별되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제외한 사유에 의한 개방접견은 남성수용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성별특성 반영

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 모니터링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간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

15) 이 법률안의 해당조항은 ‘성별구분’과 ‘성별 고정관념’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됨.

칙, 현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되, 4급 이상의 계급에 대하여는 같은 계급 내에서 어느 한 성이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임용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되, 5급 이상의 계급에 대하여는 같은 계급 내에서 어느 한 성이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임용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08년 기준 54.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1.8%보다 낮은 수준으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여성인력의 양성을 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균형인사제도를 통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지속적인 실시와 여성관리자의 임용확대 및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이상에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게 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이 법률안은 4급, 5급 이상의 계급에 대하여 같은 계급 내에서는 어느 한 성이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임용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현실에서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일정 비율도 최저 임계질량지수에 맞추어야 적극적 조치를 하는 의미가 있다.

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모범 모니터링 사례

제14조(만화진흥위원회의 설립) ① 정부는 만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만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⑥(생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및 만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만화작가의 성별에 따른 위계가 존재하는 현실,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관행상 대부분 남성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현실에서, 본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에 성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성평등한 참여의 보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 모니터링 사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 휴가 사용 기간을 자유롭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임신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성인지적 고려가 존재한다.

출산 전 휴가(44일)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산 또는 조산의 우려, 임신 초기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임신 초기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임산부의 필요를 반영하여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 모니터링 사례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1명인 경우: 6개월
2. 자녀가 2명인 경우: 18개월
3. 자녀가 3명인 경우: 36개월
4.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50개월

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과 복귀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인 국민연금의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종국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출산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납부기간 가산제도를 더 폭넓게 부여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개별적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성별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바람직한 예라 할 수 있다.

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 모니터링 사례

제50조의2(분할연금의 수급)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기여금을 낸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이혼한 배우자에게 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른 퇴역연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된 때
 2.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그 배우자 와 이혼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간의 합의, 혼인기간 중 소득 기여수준, 이혼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50조의3(분할일시금의 수급) 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배우자였던

자에게 제46조제3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48조 제1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이 지급될 때에는 이를 분할한 일정한 금액(이하 “분할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일시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간의 합의, 혼인기간 중 소득 기여수준, 이혼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50조의4(분할연금과 퇴역연금 등과의 관계 등)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별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자의 퇴역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될 때에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6조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법률안은 현행 국민연금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서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과 국민연금법상의 분할연금을 준용한 것으로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혼인 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노후생활 불안정, 특히 이혼여성들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는 등 성별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이다.

바. 일자리영향평가법안; 개선이 필요한 모니터링 사례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②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고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은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자리영향평가법안」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에 여성 및 여성의 관점이 반영될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성 불평등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이 필요한 모니터링 사례

제3조(수급권자)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0.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한다.
 -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 나. 가 목 이외의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자
 - 다. 18세 미만인 자

임신·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과 가족의 생활불안 및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모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적 관점이 요구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여성에게도 의료급여에 있어서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개선이 필요한 모니터링 사례

제34조(복지지원 제공기관과 복지지원 제공자의 의무) ① 복지지원 제공기간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지원중개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접수하거나 복지지원 제공자가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요청을 받은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시에 있어 장애아동의 성별에 의한 차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연령이나 장애 유형 뿐 아니라 성별의 차이까지를 고려한 복지지원을 받아야 할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의 고려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있어서도 연령 및 장애유형과 함께 장애정도와 성별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제 · 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은 원칙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 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제외하도록 한다. 제외 대상 법령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의 ‘예’에 표시하고 이유를 적는다.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체크리스트를 제출한다. 각각 여성가족부와 분석평가책임관이 이를 검토하여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평가를 종료하고, 제외 법령이 아닌 경우에만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기관명 _____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법령명					
구분	제정 () 개정 ()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부서	부서장	부서명 : 성명/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 성명/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간 협의	~ (일간)			
	입법예고	~ (일간)			
	법제처 심사*	~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세부 평가항목		해당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input type="checkbox"/>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가능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및 사례

1) 분석평가 지표

제 · 개정 법령의 분석 평가 지표 항목은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성별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각각 관련 조항 유무, 개선 필요성, 개선 계획의 세 단계 세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한다.

<표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I. 성별구분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2.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3. 성별구분 개선 계획
II. 성별 고정관념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5.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III. 성별 특성 반영	7. 자격 · 요건 조항 유무
	8.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9.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먼저 제 · 개정 법령에 성별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해당 조항이 없을 때에는 평가를 종료한다. 해당 조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항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분석 근거를 기재한다.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법령명 :

I. 개요

□ 제·개정 목적

○

□ 제·개정 주요내용

○

○

II.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① 성별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성별구분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2.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 근거>

○

○

<해당 조항>

○

3. 성별구분 개선 계획

<분석 근거>

○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②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해당 조항>

○

5.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분석 근거>

○

○

<해당 조항>

○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분석 근거〉

○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③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 · 요건 조항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8.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자격 · 요건 조항 유무

〈해당 조항〉

○

8.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분석 근거〉

○

○

〈해당 조항〉

○

9.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분석 근거>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_____ / 직급: _____ 전화번호: _____
담당자	성 명: _____ / 직급: _____ 전화번호: _____

2) 성별구분

(1) 성별구분에 대한 분석평가의 의의

법령에서 성차별은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를 직접차별, 후자를 간접차별이라 한다. 직접차별이란 의도적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특정 성을 우대 ·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간접차별은 외관상 성별에 따라 명시적으로 구분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성별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초래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차별은 성별에 따른 구분이 드러나므로 성별구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면 되지만 간접차별은 성별에 따른 구분이 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항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 간접차별이 우려되는 규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과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된다.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성차별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별구분’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직접적 성차별뿐 아니라, 간접적 성차별의 여지가 있는 조항까지 선별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차별의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2) 성별구분 조항의 분석평가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성별구분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① 1단계 : 성별구분 조항 유무

먼저 직접차별에 해당하는 성별구분 조항으로, 명시적으로 성별에 따라 우대·배제·구별·불리한 대우를 하는 조항이 있는지 살핀다. 명시적인 구분이 없을 때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이 있는지 살핀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성별구분 조항 유무’의 ‘있음’에 표시하고 2단계로 넘어간다. 성별을 구분하는 조항이 없고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도 없을 경우에는 ‘없음’에 표시하고 성별구분 항목의 평가를 종료한다.

② 2단계: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2단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명시적 구분이 있거나 성별에 따른 차등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당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성별에 따라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과거로부터의 차별이 현재에까지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고자 시행하는 적극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와 같은 성별구분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당화될 수 없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있음’에 표시한 뒤 그 근거를 적고 3단계 평가를 계속하고, 정당화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면 ‘없음’에 표시하고 판단 근거를 서술한 다음 성별구분 평가를 종료한다.

③ 3단계: 성별구분 개선 계획

성별구분 조항이 부당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선 계획을 도출하도록 한다. 성별에 따른 명시적인 구분이 문제가 된다면 성별구분을 삭제하도록 하고, 명시적 성별구분은 없으나 특정 성에게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수정하거나 성별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한다. 개선 계획이 있으면 ‘있음’에 표시하고 분석 근거를 적은 다음 법령 제·개정안 원안과 개선안을 대조하여 표에 기재한다. 개선 계획이 없으면 ‘없음’에 표시하고 성별 구분 평가를 종료한다.

(3) 분석평가 사례

다음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가 한국인인 때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던 (구)국적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례이다. 해당 조항은 2000년에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고 개정되었다. 아래 ‘개선안’은 현행 조항이다. 개정 전 조항은 부가 한국인인 경우와 모가 한국인인 경우를 나누고 있어, 성별에 따라 명시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전형적인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구)국적법

II.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① 성별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성별구분 개선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2. 성별구분 타당성 및 필요성

□ <분석 근거>

- 한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원칙을 전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자는 가족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여야 함.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을 결정하는 위 대상조항이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위 대상조항은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자의 국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나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보충적으로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등대우함. 그 결과 남성 국민의 자녀에 비하여 여성 국민의 자녀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며, 이는 그 자녀의 모인 여성 국민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초래함.
-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남성이 한국인인 경우와 여성이 한국인인 경우를 구별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의 법질서와 문화에 적응하고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부가 한국인인지 아니면 모가 한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즉 한국인인 부모의 성 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근거는 없음.
- 국적 취득에 있어 혈통주의는 가족 및 국가라는 공동체로의 귀속을 담보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그런데 이러한 결속관계를 부자 관계에서만 보장하고 모자관계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절하하고 모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임.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받지 못함으로써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함. 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헌법상 공무담임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국민투표권 및 각종 사회적 기본권의 향유를 박탈당하거나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됨. 반면 이와 같이 침해되는 이익과 부계혈통주의의 관철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형량 할 때,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음.

<해당 조항>

- 제2조

3. 성별구분 개선 계획

<분석 근거>

- 자녀의 국적 취득 기준을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p>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p>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3) 성별 고정관념

(1) 성별 고정관념 평가의 의의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성별에 따른 성역할 수행에 대한 광범위한 기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대가 법령에 반영될 때, 여성의 사회활동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성역할은 더욱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주로 근로, 복지 분야에서 가정되고 있는 남성단독생계부양자 모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과 가사를 전담하는 아내를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로 본다. 때문에 남성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근로자로 인식되지만 여성 근로자는 가정 경제에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부차적인 근로자로 여겨진다. 또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자녀의 주된 양육자일 것으로 가정되기도 하고, 여성의 순결이나 외모는 남성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이해된다. 이와 같은 성별 고정관념은 어느 정도는 현실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시행될 필요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현실만을 반영하며, 성평등을 위하여 지향해야 할 지점도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여성과 남성이 성별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도리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많은 여성들은 가족의 주된 생계부양자이거나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가정 경제에 기여한다.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은 부부가 동등하게 나누기를 원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출산 이후에 양육을 전담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법령이 성별 고정관념의 현실적 반영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고정관념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철저한 현실의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이 주된 양육자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양육 활동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양육의 주된 담당자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지원은 가급적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양육 지원과 더불어 양육 책임을 남성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성에 대한 양육 지원이 남성의 양육책임의 분담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집단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법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역할 수행을 돋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성별 고정관

념을 강화할 우려를 동반하게 된다. 때문에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법령의 성차별성과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법령은 성별에 따라 부당하게 강요되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영속화 시키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되므로, 외관상 혜택을 주는 법령인 때에는 이면의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할 대책이 수반되고 있는지, 성별 고정관념을 거꾸로 강화할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성별 고정관념 조항의 분석평가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① 1단계: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먼저 해당 법령에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관련 조항이 있으면 ‘있음’에 표시하고 해당 조항을 적은 뒤 2단계 평가를 계속 한다. 관련 조항이 없으면 ‘없음’에 표시하고 성별 고정관념 항목 평가를 종료한다.

② 2단계: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정당화될 수 있어 개선이 불필요한지 검토한다. 외관상으로는 특정 성의 필요를 반영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적용 결과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있음’에 표시하고 3단계 평가로 넘어간다.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어 개선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없음’에 표시하고 성별 고정관념 평가를 마무리한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 조항과 분석 근거를 작성한다.

③ 3단계: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제·개정안이 정당화될 수 없어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에서 ‘있음’에 표시한 다음 개선 계획의 근거를 작성하고, 제·개정안 원안과 개선안을 대조하여 표에 기재한다. 개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에 표시하고 성별 고정관념 평가를 종료한다.

(3) 분석평가 사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다음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두고,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례이다. 해당 조항은 분석평가 지표 항목 중에서 ‘성별구분’과 ‘성별 고정관념’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되므로 두 항목에 대하여 각각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I.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① 성별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성별구분 개선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해당 조항>

○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여성근로자는 3년) 이내로 한다.

2.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 근거>

- 위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여성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 간의 차등을 없애기 위하여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은 종래에는 여성교육공무원의 임신출산휴가를 ‘3년 이내’로 하고 있다가, 199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에서 ‘1세 미만 영아의 육아휴직’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아래로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 여성은 3년으로 차등화되어 시행되고 있었음.
- 영아 육아휴직이 도입되기 이전의 여성교육공무원의 임신출산휴가는, 그 기간이 3년이었던 것으로 보아 단지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기간만을 상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실상 육아휴직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국 1994년 12월 개정은 남성 교육공무원에 대한 영아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하는 개정이었다고 볼 수 있음.
- (구)남녀고용평등법은 1988년 제정 당시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가 1995년 8월 4일 개정에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배우자의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를 대신하여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음.
- 위 개정안은 여성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 간의 평등대우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육아휴직만을 확대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남녀근로자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등을 유발함.
- 육아휴직 기간을 남성은 1년으로 하면서 여성만 3년으로 상향하는 차등대우는 성별을 구분하는 조항임.
- 육아휴직 기간에 있어 성별에 따른 명시적 구분을 두는 것은 남녀가 동등하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 육아휴직 기간에서의 성별 차등기준 적용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남성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임.
-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최대 3배까지 더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평가절하를 강화할 위험이 있음.

□ <해당 조항>

- 제19조 제2항

3. 성별구분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 남녀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기간을 상향하는 등, 남녀간 차등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평등실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여성근로자는 3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여성근로자는 3년) 이내로 한다.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분석 근거>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두고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을 3년으로 상향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별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 (구)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이 도입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 육아 책임은 오랫동안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었고, 법은 이를 보장하여왔음.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상향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육아 책임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라고만 이해하기에는 난점이 있음. 이는 남성은 가족 부양, 여성은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 적합하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반영하며, 그와 같은 성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성별고정관념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초래하기도 함.

- 위 개정안이 남녀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최대 3배까지 더 오랫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남성근로자보다 더 많은 여성근로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육아를 위하여 휴직할 것을 독려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임. 즉,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책임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음.
- 가족부양의 책임이 남성에게 있고 여성은 단지 남성의 피부양자로서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전통적인 성별고정관념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음.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증대될수록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가치는 더욱 평가절하되기 쉬움.
- ‘1년’과 ‘3년’이라는 기간의 차이 또한 매우 커서, 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육아휴직 사용에서 상당한 성별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조항>

- 제19조 제2항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분석 근거>

- 성별에 따른 차등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
- 이와 더불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여성근로자는 3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다음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접견할 때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

견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례이다. 해당 조항 또한 분석평가 지표 항목 중에서 ‘성별구분’과 ‘성별 고정관념’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되므로 두 항목에 대하여 각각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I.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① 성별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성별구분 개선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2.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 근거>
- 현행법은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여성수용자 처우의 일환으로 여성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소장의 재량에 따라 개방접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위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여성수용자로 하여금 모든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개방접견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미성년 자녀 접견의 조건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조항으로, 여성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개방접견을 하도록 하는 반면 남성수용자의 개방접견에 대한 규정

은 두고 있지 않음.

- 미성년 자녀와의 개방접견은 남성수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여성수용자만의 특별 처우로서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기한 성별 구별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됨. 예컨대 영유아의 수유 등 여성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남성과 달리 물리적인 개방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위 개정안은 개방접견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로 하여, 단지 수유 필요성 등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서 비롯된 개방접견 필요성만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성별에 따른 차등은 비록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성수용자의 모성을 우대하여 배려하는 반면 남성수용자의 부성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연령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모든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인 수용자와 아버지인 수용자를 구별하는 차별취급은 평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수용자의 자녀접견은 수용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와의 개방접견이라는 혜택을 남성수용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위 개정안은 자녀접견이 남성수용자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을 여성수용자에 비하여 축소시킬 것임. 이는 남성수용자에 대한 차별임.

- <해당 조항>
- 제50조 제4항

3. 성별구분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 남성수용자의 부성권 실현과 자녀접견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의 성평등한 실현을 위하여 남성수용자에게도 개방접견을 동등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남성과 특별히 구별되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제외한 사유에 의한 개방접견은 남성수용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위 조항은 ‘여성수용자의 처우’를 정한 조항이므로,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미성년 자녀와의 개방접견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00조 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분석 근거>
- 위 조항이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여성의 신체적 ·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처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
- 여성수용자의 수유 등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취급은 적합하다고 하겠으나, 위 개정안이 개방접견의 범위를 ‘미성년’자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개정안은 단지 수유 필요성 등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 취급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자녀의 연령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여성수용자에게만 미성년 자녀와의 개방 접견을 의무화하는 것은 여성의 모성역할을 강조하는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 <해당 조항>
- 제50조 제4항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 여성수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미성년 자녀의 개방접견 허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성 수용자의 부성권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부성에 대하여 모성만을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강조하는 성별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 위 조항은 ‘여성수용자의 처우’를 정한 조항이므로,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미성년 자녀 와의 개방접견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제00조 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성별 특성 반영

(1) 성별 특성 반영 평가의 의의

법령의 제 · 개정에 있어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특정 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를 걸러낸다. 명시적으로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때에는 첫 번째 평가 항목인 ‘성별구분’ 중에서 직접차별에, 명시적인 구분은 없는 경우에는 간접차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성별 특성 반영 평가’에서는 특히 자격 · 요건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예컨대 대상 선정, 선발, 혜택 부여 등의 자격 · 요건이나 정부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위원의 자격 · 요건을 정함에 있어, 외관상 성별 중립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특정 성의 참여

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규정에서 특정 성에 치우친 기준을 설정하고 반대 성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거나,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종사하는 일에서 등록상의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인 경우 성별에 따른 불이익의 제거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상의 지위만을 요구한다거나, 고위직의 여성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고위직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간접차별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실의 차별을 고착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러한 기준의 적용이 의사의 집적과 결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이다. 적극적 조치는 과거의 차별로 인한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현재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차별적 효과를 제거하기 어려울 때, 차별받는 집단에 대하여 잠정적인 우대 조치를 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 실현을 도모하는 조치를 말한다.

정부 위원회의 경우는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가족부가 위촉직의 40%를 여성으로 하도록 하는 여성비율 목표치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치의 달성여부가 기관 평가 항목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실정이다. 달성을 또한 매우 낮아서 2010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위촉직 여성비율은 22.3%로, 1999년(17.5%) 아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자격·요건 조항을 검토하여 성별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는 조항의 적용에 따른 성차별적 효과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개정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필요한 성별의 고려가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해당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살피고 필요한 수준보다 높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요건을 하향조정하거나 성별에 따른 균형 있는 고려를 요구함으로써 성별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성별 특성 반영 조항의 분석평가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 · 요건 조항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8.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① 1단계: 자격 · 요건 조항 유무

해당 제 · 개정 법령에 자격 · 요건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있음’에 표시하고 해당 조항을 적은 다음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자격 · 요건에 관한 조항이 없는 때에는 ‘없음’에 표시하고 분석평가를 종료한다.

② 2단계: 자격 · 요건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자격 · 요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을 때 성별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판단한다. 성별에 따라 처한 현실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을 때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한 조항에서는 위원 구성에 현저한 성별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한다. 자격 요건이 너무 높아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 해당 요건이 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를 살피고, 요건을 좀더 낮추어 자격을 갖춘 여성의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위원회의 성격상 여성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여성 비율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판단한다.

자격 · 요건 조항에서 연령이나 종교, 인종, 거주지역, 소득, 교육수준, 신체적 조건 등 차이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언급하고 있다면, 그 요인 중에 성별이 포함되어 있는지, 성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살핀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자격 · 요건 조항에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하고 근거를 작성한 뒤 3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으면 ‘없음’에 표시하고 분석평가를 종료한다.

③ 3단계: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자격 · 요건 조항에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별 특성을 반영

할 계획을 수립한다. 개선 계획의 ‘있음’에 표시하고 분석 근거를 작성한 후, 재·개정안과 개선안의 대비표를 만든다. 개선 계획이 없는 경우 ‘없음’에 표시 한다.

(3) 분석평가 사례

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다음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쌀 생산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시 쌀 생산지의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례이다. 성별 고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법령명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I.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3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제15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표 8명 이내
 -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위촉할 경우에는 쌀 생산지의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분석 근거>

- 위 개정안 제15조 제2항 제2호 각목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외관상 성별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음.
-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고른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이 요건을 충족하는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의 수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에 있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관행이 작동할 수 있음. 그 결과 외관상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규정이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의 참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 대상규정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두고 있음. 이는 상당 기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방식에 비하면 매우 완화된 요건이나, ‘쌀 생산지의 전국적 분포’ 고려만을 요할 뿐 여성의 참여를 고려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않으며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단지 전체 비율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성이 어떠한 지위로 참여하는가도 중요한 사안임.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여 여성 생산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으려면, 소비자단체나 언론인, ‘학식이 풍부한 사람’보다는 농업인 본인 또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로서 참여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서 남성이 농업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남

성인 경우가 대부분임.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이 없거나 남성보다 여성이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농업인 지위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임. 농업인단체의 대표 또한 대부분 남성임.

- 따라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경우,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의 지위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여성생산자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함.
- 농촌에는 고령자인 여성 1인으로 구성된 농가가 많고, 부부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여성만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경작하는 작물의 종류나 경작지의 크기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축 산농가의 여성경영주 비율은 4.2%에 불과하지만 일반밭작물농가의 여성경영주 비율은 43.8%로 축산농가의 10배에 이르며, 일반밭작물을 주로 경작하는 농가의 비율에서도 여성농민이 있는 농가와 남성농민으로만 구성된 농가는 큰 차 이를 보이는데, 2007년 농업기본통계조사에서 일반밭작물을 주로 경작하는 농가는 6%인 반면 여성농민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12.9%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남.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경작의 차이가 드러나므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농업을 수행하는 농가의 여성농민이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반영할 것이 요구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목표가격 · 고정직접지불금 · 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제14조 제2항). 이와 같은 결정에 있어서는 농업 운영과 소득에서 여성농민과 남성농민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요구됨.

- <해당 조항>
- 제15조 제2항

9.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 여성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표’에 ‘여성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를 확보.
- 또한 농업 및 경제에 대한 ‘성별의 영향’에 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참여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p>제15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표 8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표를 위촉할 경우에는 쌀 생산지의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p>제15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표 8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표를 위촉할 경우에는 쌀 생산지의 전국적 분포 및 여성농민의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매체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다음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매체의 실태조사 등을 위한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방송매체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례이다. 여론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자격 조항에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방송매체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법률안

II.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③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자격 · 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제29조(여론다양성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이하 “다양성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4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 3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방송학 · 언론학 · 법률학 · 경제학 · 통계학, 그 밖에 방송 · 언론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방송 · 언론 등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었던 자

8.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분석 근거>

- 법률안 제29조 제3항은 여론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구체적 직업과 경력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1~3호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법조인으로 15년 이상’,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등의 자격을 정함.
- 법률안에서 정한 요건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거나 차등대우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요건을 적용한 결과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게 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여론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이와 같은 요건이 위원의 직무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자격조건의 수준을 살펴보면, 예컨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1년 말 기준으로 1997년 이전부터 법조인이었어야 함. 그런데 1997년의 사법시험 여성비율은 8.11%에 불과했으며, 그 전의 여성비율은 더 낮았음. 또한 3호의 요건을 보면, ‘방송·언론 등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은 차치하고라도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의 자격을 요하고 있는데 고위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2009년 기준 1.9% 수준으로, 성비의 극심한 불균형을 보임.

- 따라서 위 법률안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매우 적으로, 위 요건은 여성의 참여에 현저한 제약을 초래한다 하겠음.
- 이와 같은 높은 자격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여론다양성 위원회와 유사한 현행 위원회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비교기준으로 설정하여보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것을 요함(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3항). 이는 위 법률안이 정하고 있는 여론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여론다양성위원회의 직무를 비교해보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관장함(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4). 이에 비하여 위 법률안 제33조의 여론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그 범위가 다소 넓기는 하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비하여 자격 요건을 대폭 상향하여야 할 정당한 필요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 오히려 여론다양성위원회의 직무에는 여론다양성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이 요구되는 직무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의 위촉 가능성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됨.

<해당 조항>

- 제29조 제3항

9.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분석 근거>

- 여론다양성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수준으로 낮추어 해당 직업을 가진 여성 전문가의 참여가 좀더 증대될 수 있도록 함.
-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균등

한 참여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보완.

- 더불어, 위원의 자격 요건 중 3호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p>제29조(여론다양성위원회의 설치 등)</p> <p>③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4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 3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학 · 언론학 · 법률학 · 경제학 · 통계학, 그 밖에 방송 · 언론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p>제29조(여론다양성위원회의 설치 등)</p> <p>③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4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 3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학 · 언론학 · 법률학 · 경제학 · 통계학, 그 밖에 방송 · 언론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분석평가서 작성 실습

□ 워크시트 활용하기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 실습준비

1. 4 ~ 5명으로 조를 구성한다.
2. 조장(발표자)과 기록자 선정한다(2분).

■ 실습시작

1. 준비된 자료를 확인
 - 자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실습을 위한 법령 또는 조례 · 규칙 관련 자료
2. 조원들의 제 · 개정이 필요한 법령 및 조례 · 규칙이 각자 다를 경우, 유사한 것들끼리 유목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토의 및 실습할 법령 또는 조례 · 규칙 1~2개를 선정 한다.
3. 실습시간은 3개의 지표항목 각각 15분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 프로그램에서 실습시간과 강사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다.

□ 성별구분

- 제 · 개정 대상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나요?

- 성별구분 조항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필요한가요?

성별구분이 추가로 필요한 조항이 있나요?

- ▶ 성별구분으로 인하여 한쪽 성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
- ▶ 직접적이진 않지만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지 점검

- 위와 같이 성별구분이 존재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할까요?

□ 성별 고정관념

- 제 · 개정 대상 법령에 전통적인 성역할과 관련한 내용이 있나요?

-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점검
- ▶ 특정 성별이 명시된 경우를 중심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반영여부 점검
- ▶ ‘법령상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인지 점검

【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 경우】

-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한 조항은 왜 문제일까요?

- 성별 고정관념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의 개선 방향은?

□ 성별 특성 반영

- 제 · 개정 대상 법령에 자격 · 요건에 관한 조항이 있나요?

→ 이 조항이 적용되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

- 제 · 개정 대상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에 성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가요?

→ 【 자격 · 요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을 때 성별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점검

→ 사회문화적인 측면, 위원회 관련 규정 및 비율등에 대한 측면 점검

- 자격 · 요건 조항에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선방향은?

□ 분석평가서 작성 사례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다음 조항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라. (내용상 ‘성별 고정관념’ 항목에도 해당되나, 아래에서는 ‘성별 구분’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서를 작성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법인정보의 공개) ③ 법인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법령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I.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①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제25조(법인정보의 공개) ③ 법인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 근거>
- 법인의 이사장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혼인한 직계비속 중 여성, 외(증)조부모, 외(증)손자녀를 배제한 것은 직계존비속의 성별에 따르 다르게 대우하는 것임.
- 과거와 달리 출생순위나 혼인여부, 성별과 무관하게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법제하에서 직계준비속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고 여성이거나 여성인 혈족의 직계준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 해당 조항은 여성이 남성과 달리 혼인과 동시에 본래의 가(家)에서 분리되어 ‘출가’한다는 과거로부터의 사회통념을 반영하는 데 불과하여 변화된 사회 상

황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성평등에도 어긋남. 해당 조항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재산의 은닉은 방지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사회통념을 강화하는 데에는 기여 할 우려가 있음.

- 〈해당 조항〉
- 제25조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 직계준비속의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직계준비속의 재산 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증)손자녀를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p>제25조(법인정보의 공개) ③ 법인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을 공개하여야 한다.</p> <p>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p>	<p>제25조(법인정보의 공개) ③ 법인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을 공개하여야 한다.</p> <p>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p>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다음 조항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라. (내용상 ‘성별 구분’ 항목에도 해당되나, 아래에서는 ‘성별 고정관념’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서를 작성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3조의2(불임치료휴가) 사용자는 불임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불임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임치료휴가를 줄 수 있다.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법령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II.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②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제73조의2(불임치료휴가) 사용자는 불임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불임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임치료 휴가를 줄 수 있다.

5.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 <분석 근거>

- 불임치료의 방법, 불임치료가 미치는 신체적 영향 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불임치료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휴가의 기간 등은 성별 차이 뿐 아니라 개인 차이 또한 큰 사항임.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불임인 남성의 수술 등과 같이 남성 근로자 또한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휴가 기간에 차이를 두는 방식은 타당할 수 있으나 성별에 따라 휴가 청구권 유무를 달리 하는 구별은 타당성이 없음.
- 제73조의2는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만 불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은 여성의 책임이며 불임의 주된 원인은 여성에게 있고 임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도 여성이라는 오래된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해당 조항>

제73조의2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분석 근거>

‘여성근로자’를 ‘근로자’로 수정하여 남성근로자도 불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제73조의2(불임치료휴가) 사용자는 불임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불임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임치료휴가를 줄 수 있다.	제73조의2(불임치료휴가) 사용자는 불임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불임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임치료휴가를 줄 수 있다.

(3)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중 다음 조항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라.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난민 등”이란 난민,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및 난민신청자를 말한다.
- “난민”이란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갖는 국가(이하 “국적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란 제2호의 난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아니하지만 폭력 · 외부침략 · 국내소요 · 인권침해 ·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

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려한 합리적인 우려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

4~7. 생략

제17조(신청인 등의 신원 등 비밀의 보장) ① 난민인정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 등에 동석하는 자 및 변호인의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그 밖에 그 신청인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신청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법령명 :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II.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③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 · 요건 조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8.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자격 · 요건 조항 유무

<해당 조항>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난민 등”이란 난민,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및 난민신청자를 말한다.
- “난민”이란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갖는 국가(이하 “국적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3.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란 제2호의 난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아니 하지만 폭력 · 외부침략 · 국내소요 · 인권침해 ·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합리적인 우려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

4~7. 생략

제17조(신청인 등의 신원 등 비밀의 보장) ① 난민인정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 등에 동석하는 자 및 변호인의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그 밖에 그 신청인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신청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분석 근거>
- 본 법률안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그 밖에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 및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와 난민,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및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 제2호는 ‘난민’을 정의함에 있어서 박해의 사유로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폭력 · 외부침략 · 국내소요 · 인권침해 ·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는 동조 제3호에서 난민이 아닌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 구별하고 있음.
- 국제조약이나 국내적 관행을 살펴볼 때, 전통적으로 난민의 개념은 ‘정치적

박해를 받은 남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난민 정의에 성인 지적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여성에 대한 폭력, 할례와 같이 문화적 이유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여성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동조 제3호의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제3호의 내용 또한 국제인권법 관행에서는 사인이 행하는 문화적 사유의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
 -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는 인정절차 및 처우에서 난민에 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나, 출입국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으며, 개념상으로도 난민과 구별되므로 난민에 비하여 일시적이고 2차적인 보호에 그칠 우려가 있음.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박해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닌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인정 사유에 그친다면,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제17조는 공무원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신청인 등의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그 밖에 그 신청인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들고 있으나, 여성의 성별이 노출될 경우 신청인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됨.
- <해당 조항>
- 제2조 제2호, 제17조 제1항

9.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박해를 난민 인정 사유로 삼고자 한다면 성인지적 관점을 법률상 명시하여야 하므로, 제2조 제2호에 ‘성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성별이 노출될 경우 신청인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제17조 제1항에 ‘성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난민”이란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갖는 국가(이하 “국적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자</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난민”이란 인종 · 종교 · 국적 · 성별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갖는 국가(이하 “국적국”이라</p>

제 · 개정안	개선안
<p>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p> <p>제17조(신청인 등의 신원 등 비밀의 보장) ① 난민인정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한 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 등에 동석하는 자 및 변호인의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그 밖에 그 신청인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한다)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p> <p>제17조(신청인 등의 신원 등 비밀의 보장) ① 난민인정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한 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 등에 동석하는 자 및 변호인의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 성별, 그 밖에 그 신청인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이선민 (동덕여대 강사)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으로서 계획의 특성은 무엇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은 대체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을 포괄적으로 기획하는 국가 계획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다수의 정책들은 이러한 국가 계획을 기본 토대로 하여 수행되고 있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김경희 외, 2011; 4).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법령상 수립근거 규정이 있는 계획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립되는 계획이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의 경우 「과학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바이오 전문 인력 육성계획」 등은 근거법령을 갖고 있지 않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은 법령상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 해당된다.

둘째, 국가 중장기 계획의 경우 여러 쳐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와 달리 부처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2차)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관부처이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관련부처이다. 또한 「(제2차)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5개년기본계획」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이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시행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국가 중장기계획은 추진기간이 다양한 연속계획의 경우 1차 계획에 대

한 사후평가를 통해서 분석결과를 2차 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 계획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면서 추진기간, 연속계획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중장기 계획의 특성에 따라서 추진기간이 3년(「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등), 5년(「과학기술기본계획」 등), 10년(「주택종합계획」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중장기 계획 중에는 연속계획(「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 비연속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이 있는데 연속계획의 경우 1차 계획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서 2차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장기 계획은 소관부처 및 협조부처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계획의 비전과 목표 뿐 아니라 전략별 실천과제 등을 살펴보면서 그 계획의 성별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보면, 비전이 “건강한 생명 중심 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 경제구현”이고 목표는 ‘과학·기술논문 창출’, ‘특허기술 경쟁력’, ‘핵심 연구개발 인력양성(석·박사)’ 등이다. 이는 여성의 참여가 낮은 분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장기 계획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본다면?

국가 중장기 계획 중 법률에 근거한 계획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계획의 소관 기관, 계획 수립 주체, 계획의 수립주기가 각기 다르다. 이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으로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시범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의 하나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선정한 다음, 2012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계획)

- 계획명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

I. 개요

□ 비전과 목표

- 비전 : 건강한 “생명 중심 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 경제”구현
 -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 기술 강국 진입 -
- 목표

목표	'05년	'07년
과학·기술 논문 창출	13위	7위
특허기술 경쟁력	14위	7위
핵심 연구개발인력 양성(석·박사)	9,600명/년	17,300명/년
산업화 시장(생산) 창출*	2,7조원(12.5조원)	60조원

* 2010년 이후는 기술융합 가속화 등으로 합성신약이 바이오의 범주에 포함되어 시장규모는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12.5조원은 합성신약을 포함한 '05년 시장규모임)

□ 전략 및 중점과제

전략	실천과제
국가 생명공학육성 추진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명공학분야 전략적 투자 강화 및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획과 연계된 예산운영 및 목적 지향적 관리체계로 전환 ② 범부처 종합조정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 사안별 역할분담, 의제별 갈등관리카드 운영 등 ③ 생명공학 정책 분석평가 체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 표준분류체계 정비, 연구기획·평가체계 강화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생명공학 기초연구 역량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원천기술, 융합기술 등 지원 강화 ②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공학 인력 양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의약학 및 융합·신생기술인력 양성 강화 ③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활동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관련 국제적 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 등 ④ 생명공학 연구개발 인프라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자원 종합관리대책 추진 등

전략	실천과제
바이오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① 생명공학 실용화/산업화 연구개발 지원 가속 – 임상단계의 정부지원 강화 ② 바이오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화 – 선진 기업 유치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③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 산업계 및 지역 수요가 높은 주요 인프라 확충 ④ 기술이전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지원 제도 정비 – 바이오 제품 생산·유통·무역 관련 제도의 재정비 등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① 생명공학 연구윤리 및 진실성 문화 정착 –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시스템 정착 ② 생명윤리 및 바이오 안전성 법·제도정비 – 기술영향평가 활성화 등 ③ 국민홍보·인지도·문화저변확대 – 정보포털 구축 및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등

II. 비전과 목표

①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분석근거>
- 비전의 성별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생명공학은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계획 추진을 통한 연구 결과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목표의 성별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과학·기술논문 창출’과 ‘핵심 연구 개발 인력 양성(석·박사)’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해당 계획 개선안>
- 향후 계획 추진 관련하여 양성을 고려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요구됨.
-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따라서 세부 목표 수립 또는 중점과제에서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반영이 필요함.
- ※ 현재 중점과제 상에 관련 사항 포함되어 있음.

III. 전략 및 중점과제

① 성별 요구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 <분석근거>

- 직업만족도의 성별 차이 여부 : 성별 직업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차이에 따라 요구도 차이가 존재함.
 - 생명공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남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녀 공통으로 ‘연구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첨단지식과 정보습득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순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인 것에 반하여 여성의 경우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한 지원체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계획 개선안>

- 연구개발 인력활용 시 세부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 차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 <분석근거>

- 성별 취업률 차이 여부

- 생명공학 분야는 공학계에 비하여 배출인력 중 여성의 차지하는 인력이 많은 분야임. 여성 인력이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위취득자의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계획 개선안>

-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전략 중 ②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공학 인력 양성강화의 경

우 기초의약학 및 융합·신생기술 인력 양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에 성별 취업률 차이가 많이 나는 분야에서의 여성인력 양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 <분석근거>
- 전략 및 중점과제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신체적 요구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②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특성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 없음
6.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 없음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 <분석근거>
- 전체 예산 배분의 성별 형평성 검토
 - 현재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행기간(2007~2016년) 동안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 투자에 총 14조 2,881억 원(국고)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분야별 투자예상액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예산이 양성평등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어려움.
- 연구투자액의 성별 형평성 검토
 - 제1차 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난 5년간 생명공학분야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연구투자액을 성별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여성 연구개발인력에 배분된 투자액 비율은 평균 10.3%임.
 - 여성연구책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연구투자액을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여성에 대한 연구 투자액은 증가하고 있지 않음. 이는 여성 연구책임자들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 규모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거나 혹은 대형투자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중 여성의 비중이 적다는 것의 반증이 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을 요하는 여성 관련 과제 포함 여부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에서 여성 생명공학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전략2]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 과제 2)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공학 인력 양성 강화
- 여성 생명공학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책 마련 추진

○ 원자료 수집 및 통계 산출 시 성별분리지표를 사용하여 성인지 통계기반을 확충
 ※ 예시 : 양성인력, R&D인력 및 투자액, 논문·특허 성과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정 등에 여성 참여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율
 ‘05년 기준 19.4%에서 2016년 25% 이상으로 제고

□〈해당 계획 개선안〉

-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을 고려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
- 여성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인력양성 강화’ 부분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향후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추진기간 동안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때 예산 편성의 성평등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6. 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분석근거〉

-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994~2007)」의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성별 수혜도 차이 검토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은 연구인력 양성, 연구개발투자, 논문과 특허성과, 산업부분의 발전 등을 주요 분석항목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검토결과 성과분석에서 성별 변수는 분석으로 도입되지 못함.
 : 이에 따라 제 1차 기본계획의 추진 기간 동안 여성 생명공학인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실태나 연구 성과 등은 별도로 파악되지 못하였고, 정책 수혜의 부진 집단에 대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지 못함.
- 생명공학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정보접근성)의 성별차이에 따른 성별수혜도 차이 발생 가능성
 - 생명공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들에게 정책 관련 인지도 설문조사 수행결과 성별격차가 나타남. (4점 척도)
 - 우리나라 생명공학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 2.49점 남성 2.71점으로 인지도가 모두 높지 않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명공학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원의 성별 차이
 - 남성과 여성 모두 ‘정부부처와 연구전문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연구자 집단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정부부처나 연구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해당 계획 개선안〉

- 성별 수혜도 및 만족도 파악을 위한 성별 분리통계 구축 방안 모색 필요
- 기본계획 추진 주요 사업 내 여성 수혜를 낮은 분야 파악 및 별도의 사업 개발 반영 필요
- 여성 연구자가 남성 연구자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연구 참여의 기회에 성별 수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임. 따라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흥 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7. 법령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 관련 학과 여교수 비율 및 국책연구소 여성 채용 목표제 이행 점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여성참여 확대 : 목표 비율제 도입
8.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시행기간(2007~2016년)동안 편성된 예산(약 14조원-국고)이 양성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성 생명공학연구인력육성 관련 전략과제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보완 필요
9. 사업내용 · 수행 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요구도 피악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의 성인지적 추진을 위한 기본 구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분야 주요 통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 · 활용 ■ 세부 사업 추진 결과 만족도 조사 및 성별을 고려한 자료 분석을 통한 성별 요구도 피악 ○ 수혜의 성별형평성 개선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은 여성의 참여를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 육성정책 비전과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여성 자문 강화 ■ 생명공학 정책 심의 및 결정 단계에 여성 참여 확대 - 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내의 여성 수혜를 제고를 위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 여학생을 위한 융합 분야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생명공학분야 학부 및 대학원 여학생을 위한 교육 · 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성 · 학위별 여성취업률이 낮은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 ■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성별 인지도 및 정보 획득원 차이를 고려한 홍보방안 마련(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의 주요 정보획득원인 정부부처나 연구 전문기관을 통한 홍보 강화) ○ 성평등한 사업 수행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 활용 시 성 차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참고 자료 】

□ 전공분야별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

단위 : %

구분		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교육계	공학계
2000	여자	73.4	61.4	72.0	70.4	89.5	61.4	78.7	-
	남자	86.4	82.9	87.2	82.8	94.6	82.7	93.0	-
2005	여자	78.6	75.6	77.9	73.0	89.3	75.2	79.2	79.3
	남자	87.3	82.2	89.9	81.1	95.8	84.6	88.6	85.8
2010	여자	68.2	58.7	71.6	60.4	80.6	47.4	73.0	67.6
	남자	82.2	78.3	87.3	72.3	90.6	61.3	81.9	81.9

주 :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군입대자)*100

2) 졸업자에서 미상제외.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 <사례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계획)

- 계획명 :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12~'16)

I. 개 요

□ 비전과 목표

- 비전 :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철도 차량 및 경량항공기 관리, 광역 해역사고 등을 줄일 필요와 국민 참여형 교통 문화 확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근거하여 도로, 철도, 항공, 해양 사고를 OECD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략 및 중점과제

- 제7차 기본계획은 5대 추진전략별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교통이용자행태개선 전략은 11개 중점 추진과제와 42개 세부 추진과제
 -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전략은 12개 중점 추진과제와 37개 세부 추진과제
 -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전략은 6개 중점 추진과제와 19개 세부 추진과제
 - 안전관리 시스템강화 전략은 4개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세부 추진과제
 -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전략은 2개 중점 추진과제와 9개 세부 추진과제임

추진전략	중점추진과과제
I. 교통이용자행태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학로어린이교통안전강화 2.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모색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 4.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위반자 처벌강화 5. 자동차보험제도의 선진화 6. 사업용자동차 운행시간제한제 도입 7. 종사자의 안전 역량강화 8. 불법행위자감을 위한제도개선 9. 적정규모의 선원배치 및 교육실시 10. 선상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11. 교통안전홍보 교육의 다각화

추진전략	중점추진과과제
II.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1.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확보
	2.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3. 안전지향형 교통안전 시설확충)
	4. 지역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추진
	5. 자전거 교통》 안전》 대책 마련
	6. 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7. 역사내 철도 사상사고 예방 시설보완
	8. 대형철도사이 예방시설확충
	9. 차세대 항행 시스템 구축 및 전환
	10. 항공교통정보 시스템의 통합 체계구축
	11. 레저스포츠항공 안전비행체계 구축
	12. 안전한 선박 통항로 확보
III.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1. 자동차 첨단안전 장치 보급 확대
	2. 사업용 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확대
	3.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자동차 안전 확보
	4. 철도차량의 예방 정비체계구축
	5. 첨단항공기 안전기술확보
	6. 인적운항과실 방지를 위한 선박설비개선
IV. 안전관리 시스템강화	1. 인간중심의 속도관리 체계변화
	2. 교통사고원인 조사의 과학화
	3. 물류안전관리 시스템강화
	4.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고도화
	5. 新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의 적용
V.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1. 분야별비상 대응체계 구축
	2. 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II. 비전과 목표

①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있음	□ 없음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분석근거>

- 신체적 건강상태, 장애, 노약자를 동반해야 하는 역할 수행 상태에 따라 통행 및 시설 이용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안전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되어야 함.
- 안전은 사망 이외에도 각종 위험으로 인한 통행 불안도 포함됨. 특히, 교통수단 이용한 이동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각종 성희롱이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련 요구를 반영할 필요 있음.

□ <해당 계획 개선안>

- 기본계획 목표 수립의 전제가 되는 분야별 위험 원인 규명에서 연령, 장애, 노약자를 동반한 사람 및 성희롱 등의 위험 등에 따른 이동 여건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

III. 전략 및 중점과제

① 성별 요구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 <분석근거>

- 교통 이용자 행태 개선은 보행자 및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함
 - 교통 분야별 종사자 교육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표〉 성별에 따른 버스 성추행 경험(2011)

성추행 경험(버스)	남성	여성	전체
있다	17(2.3%)	192(25.6%)	209(13.9%)
없다	733(97.7%)	558(74.4%)	1,291(86.1%)
전체	750(100%)	750(100%)	1,500(100%)

* 자료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2006

-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교통 약자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적절하나, 여성 및 노약자 동반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있음
 - 30~50대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도보와 대중교통에의 의존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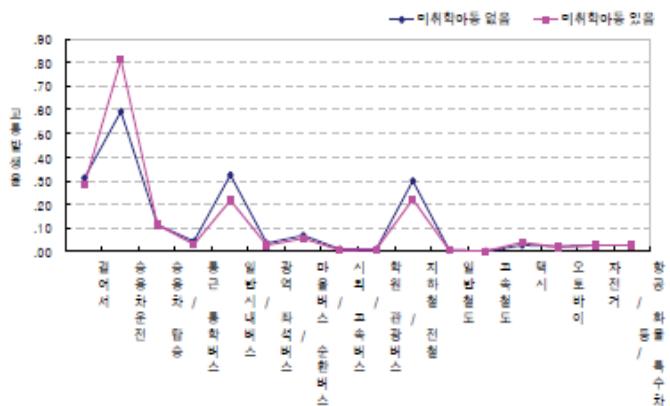
〈그림〉 연령대별 남녀 1인당 통행횟수 비교



자료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2006

- 다양한 역할-자녀의 통학 보조, 식료품 쇼핑—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일수록 짧은 거리를 자주 통행 하므로, 생활권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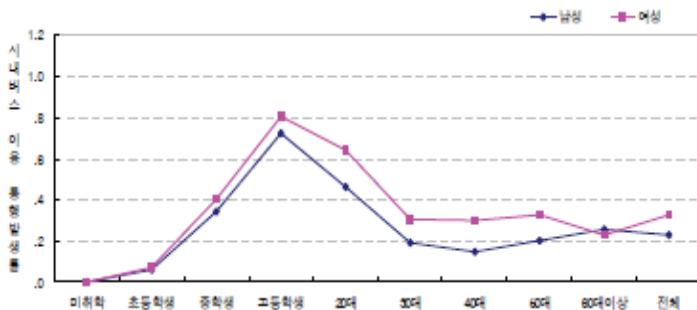
〈그림〉 미취학 자녀의 유무 및 자녀 수에 따른 통행특성



* 자료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2006

- 안전한 교통 인프라에 대중교통 안전 대책 수립 필요
 -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승용차 이용률이 낮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음

〈그림〉 시내버스 이용 통행발생률



* 자료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2006

□ 〈해당 계획 개선안〉

- 공공교통에 있어서 범죄예방기술 사례 확산 위한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침 및 교육 강화
 - 직원 훈련, 접근 가능한 도움 요청 장소, CCTV, 조명 및 정보 제공 등
- 여성들은 도보 통행을 많이 할 뿐 아니라 아이들을 동반하거나 유모차를 끌고 걷는 경우가 많아 요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요청됨.
 - 인도를 유모차를 끌 수 있는 넓이로 확장.
 - 도로 및 주차장에 충분한 조명
 - 교통경찰 계획
 - 심야 이동 안전화 계획,
 - 실시간 정보계획,
 - 안전한 역 계획
- 대중교통 관련 시설 안전 점검이 요청되며, 고령자 관련 안전 대책도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대책 수립이 요청됨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 〈분석근거〉

- 시간제 노동을 주로 하는 여성들은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있음. 여성은 또한 출퇴근 시간 이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해당 계획 개선안〉

- 시간제 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행태 및 요구 파악, 결과 반영이 필요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 〈분석근거〉

- 교통 이용자 행태 개선 및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어린이, 고령 운전자 안전 이외에 임산부의 보행 환경을 고려하여야 함
-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는 자동차 속도 규제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여건에 적합한 교차로 계획 및 신호 체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함
 - <해당 계획 개선안>
 - 생활권 도로 및 대중교통정책에 있어 임산부의 신체적 여건 고려
 - 빠른 보행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체계 등의 고려

②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특성반영	□ 있음	■ 없음
6.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있음	■ 없음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 <분석근거>
- 계획기간 5년간 전략별 총 투자 규모는 약 16조 8천억 원이나,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추진전략	계
I. 교통이용자행태개선	2,584억 원
II.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137,372억 원
III.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8,584억 원
IV. 안전관리 시스템강화	8,188억 원
V.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11,680억 원

* 전체 예산 16조 중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전략의 보행 안전 관련 사업(주택가 생활 도로 및 보도정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예산이 9조에 달함.

- <해당 계획 개선안>

- 성인지적 보행 안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원배분의 성별 형평성에 접근할 필요 있음

6. 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 <분석근거>

- 기본계획은 주로 인프라 개선과 관련되어 수혜의 성별 형평성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신체적 · 사회문화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인프라 구축으로 성별 형평성 높일 필요 있

음

□〈해당 계획 개선안〉

- 노약자 및 노약자 동반자의 안전을 고려한 인프라 설계와 우선 사업 대상 지역 선정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7. 법령 반영 계획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등 여성의 통행특성을 고려한 교통접근성 계획 ▶ 도시교통정비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지역대중교통계획 등 지역 근거 교통계획 수립에 있어 여성을 고려한 접근성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8.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도 보행안전 관련 예산 증액 필요
9. 사업내용 · 수행 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교통사고 중 특히 도로 교통사고 발생자수(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 작성 필요(현재는 연령별 분리통계 있음) ▶ 고령자 및 어린이, 보행자 및 자전거, 생활도로 및 간선도로 안전 확보에 중점 ▶ 도로 폭원을 고려한 생활권 도로에 교통안전 대책강화 ▶ 동력수단(자동차)과 비동력 수단(보행, 자전거)이 차도를 동등한 권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 개선 ▶ 교통시설(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전철역, 버스터미널, 공항, 해운 여객터미널 등)에 대해 안전감사

【 참고 자료 】

□ 대형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부상자 현황

- 수학여행 등 단체이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대형사고 사망자(-4.7%) 및 부상자(-11.9%) 감소

연도	을 주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대형사고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2010년	28,641	781	51,364	14,095	126	17,178	25,810	1,752	27,394	105	161	1,978
2009년	28,207	898	50,797	14,980	136	18,370	25,983	1,826	27,409	102	169	2,245
대비(%)	1.5	-13.0	1.1	-5.9	-7.4	-6.5	-0.7	-4.1	-0.1	2.9	-4.7	-11.9

* 대형 교통사고는 사망 3명 또는 사상 2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출처 :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 생애주기별 성별 통행률

단위: 명, (%)

생애주기	남	여	전체
학령기	94.1 (%)	94.4 (%)	156,858 94.2 (%)
청년기	84.3 (%)	73.3 (%)	115,004 78.2 (%)
장년기	89.5 (%)	62.5 (%)	202,853 75.9 (%)
은퇴기	75.9 (%)	49.8 (%)	36,530 63.7 (%)
전기 노년기	60.3 (%)	36.1 (%)	11,635 48.1 (%)
후기 노년기	36.6 (%)	18.5 (%)	1,892 24.3 (%)
초고령기	19.1 (%)	8.4 (%)	189 11.0 (%)
전체	86.9 (%)	69.7 (%)	524,961 78.1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교통약자 이동욕구 및 정책수요의 성별차이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교통약자 유형별 성별 통행횟수 (전체응답자)

단위: 회, (표준편차)

교통약자 유형	남	여	전체
지체장애	2.53 (0.84)	2.35 (1.12)	2.44 (0.99)
감각장애	2.56 (1.24)	2.58 (1.33)	2.57 (1.28)
임산부	-	-	2.51 (1.02)
고령자	2.25 (0.60)	1.79 (1.07)	2.02 (0.90)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교통약자 이동욕구 및 정책수요의 성별차이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사례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계획)

- 계획명 : (제3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08~'12)

I. 개요

□ 비전과 목표

- 비전 : “차별 없이 맘껏 일하는 사회 :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 장애인 차별 금지 법제의 안착”
- 목표
 - 고용률(15~64세) : 43.8%('05년) → 50%('12년)
 - 실 의무고용률 : 1.37%('06년) → 2%('12년)
→ 중증장애인의무고용비율 : 18.5%('06년) → 30%('12년)

□ 전략 및 중점과제

전략	추진과제
장애인일자리 확대	1)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강화 2) 장애인 다수 고용 모델 확산·지원 3) 장애인 인식개선 4) 장애인 차별예방
인적자원 고도화	5)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6)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주에 대한 지원강화	7)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다양화 8)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고용의무제도 개편	9) 중증 장애인 위주로 의무 고용제도 개편 10) 의무고용제도 운영강화
고용서비스 선진화 기반 구축	11) 장애특성별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12) 장애인 고용정책수행기반 강화

II. 비전과 목표

①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분석근거>
- 비전 및 목표의 성별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성별 장애유형·발생률 등의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실제 차별 없는 고용을 비전으로 하여도 성별 고용차별 경험 및 실질적인 고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고용율과 의무 고용률,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등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비율은 성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전체적인 목표와 함께 여성 장애인 고용율도 세부 목표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해당 계획 개선안>
- 전문가 분석 시 2차 계획의 수립배경 및 세부과제별 추진배경 검토 시 성별에 따른 현황 및 요구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별도로 고용율과 실 의무고용율의 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III. 전략 및 중점과제

① 성별 요구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 <분석근거>
-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경험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전략 및 중점과제는 ‘Ⅰ. 장애인일자리 확대’ 중 ‘Ⅰ-4. 장애인차별예방’임.
 - 여성 장애인에게 더 열악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남성과 여성의 차별 경험이 다르고, 이를 고려한 예방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장애인 권리 의식 고용 및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는 환경 분석 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차별 경험과 이에 따른 예방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부족함.
 - ‘Ⅰ-4-1. 고용상 차별예방활동 강화’와 ‘Ⅰ-4-2. 차별예방을 위한 법·제도정비’의 경우 성차별

을 고려한 예방 가이드라인, 관련 법 제정 등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환경 분석 및 이를 고려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해당 계획 개선안〉

- 장애인 고용 차별 현황을 성별로 파악하고 있는지 검토함. 예방활동 및 제도 정비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분석근거〉

- 성별 경제적 위치와 관련성이 높은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는 관련된 전략 및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성별 요구도 차이 고려가 필요하여 세부과제에 포함하고 있음.
 - ‘Ⅱ.인적자원고도화’ 전략의 ‘Ⅱ-1.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개발’ 과제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 요구도 차이가 다를 것으로 예측됨. 현재 2차 계획 추진의 한계점으로 장애인 직업경쟁력 부족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점은 파악되지 않은 부분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세부 추진과제로서 ‘Ⅱ-1-1. 개인별 적합 능력개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성 및 고령 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직업능력개발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계획 개선안〉

- 취업 현황 및 수요 파악 등 계획 수립 관련 환경 및 성과분석 시 성별통계 구축 및 활용 : ‘Ⅴ-2-1. 장애인고용통계강화’를 위한 방안에 반영 가능
- 계획 추진 시 1차 년도에 취업 중이거나 준비 중인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통하여 여성 및 고령 장애인 요구도 피악을 통한 구체적인 적합 직종 발굴, 향후 시행계획 마련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임.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분석근거〉

- ‘Ⅲ.사업주에 대한 지원강화-2.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의 경우 관련 편의시설 및 기기, 보건 환경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성별에 따른 요구도 차이가 예측됨.
 - 이에 따라 현재 세부과제로 ‘Ⅲ-2-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여성·고령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기준 개발 및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 산재 취약 근로자 보호’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계획 개선안〉

-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 산재 발생률, 성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조치 및 유해물질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정책수혜자의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및 통계정보 구축 관련 전략이 포함된 경우

□〈분석근거〉

- 현재 'V.고용서비스 선진과 기반 구축-2.장애인 고용정책수행기반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V-2-1. 장애인 고용통계강화'를 포함하고 있음.
 -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관련 통계조사 부족을 이유로 주요 통계생산 및 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그러나 현황 분석 및 성과 분석 등에서 장애인 중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이는 성별이 주요한 통계변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성별통계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 요구도 반영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자료임.

□〈해당 계획 개선안〉

- 장애인 고용 통계 강화 방안으로 성별분리통계 생산·구축을 포함시킴.
- 특히 고용패널조사 시 남녀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여부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특성반영	□있음	■없음
6.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있음	■없음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분석근거〉

- 전체 예산 배분의 성별 형평성 검토
 - 현재 계획서상에 전반적인 재원 배분 내역은 포함되지 않아 예산의 양성평등성을 검토하기 어려움.
-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을 요하는 여성 관련 과제 포함여부
 -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5개년계획」에 따르면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중 여성을 고려한 전략 및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음.

II-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확대

II-1-1. 개인별 적합 능력 개발 서비스 제공

- 여성·고령 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직업능력 개발

III-2.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III-2-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장애인·여성·고령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기준 개발 및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 산재 취약 근로자 보호

- <해당 계획 개선안>
- 정책분야별 예산편성과 시행계획 수립 시 성평등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
- 관련 전략 및 중점과제 중 여성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지 전문가 자문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성평등한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임.

6. 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 <분석근거>
- 계획 수립 배경 및 제2차 계획의 성과 분석 시 실질적인 고용 현황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에 있어서 ‘전체’ 즉 ‘비장애인+장애인’과 대비 ‘장애인’의 경제활동현황, 고용률, 맞춤훈련 제공 등을 분석하고 있고, 장애인의 성별 수혜격차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장애인의 성별 교육기회 차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고려할 때 그 차이가 예측되므로 수혜의 성별 형평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해당 계획 개선안>
- 2차 계획 성과를 성별을 고려하여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함. 여성 장애인 고용률 격차가 클 경우 여성 장애인을 위한 과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향후 3차 계획 추진 및 성과 보고 시 성별 수혜율 차이를 파악하도록 함

③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7. 법령 반영 계획	○ 별도의 개선 계획 없음
8. 예산 반영 계획	○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정책 분야별 예산 편성안을 재검토 하여 성평등한 재원배분 계획 수립.
9. 사업내용 · 수행 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요구도 파악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관련 환경 및 성과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진과제 중 ‘V-2-1. 장애인 고용 통계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인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조사,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장애인 산업자체 현황을 위한 조사에 ‘성별’을 주요 분석 변수로 반영하여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성별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생산하는 장애인 관련 주요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1차 년도에 취업 중이거나 준비 중인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및 수요 조사를 시행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여성 및 고령 장애인의 직업 능력 및 선호

세부 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p>직종에 대한 요구도 파악을 통해 구체적인 적합 직종 발굴. 이를 통하여 추진과제 ‘Ⅱ-1-1. 개인별 적합 능력 개발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인 성별 요구 차이를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Ⅰ-4-1.고용차별 예방 활동 강화’ 및 ‘Ⅰ-4-2. 차별예방을 위한 법·제도정비’ 과제 추진 시 고용에 있어서 성 차별을 고려한 예방 가이드라인, 법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의 성별형평성 개선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계획 수행에 따른 성과(고용률 향상)를 성별을 고려하여 재분석.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이 남성 장애인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을 경우, 적극적인 고용확대를 위한 과제를 마련. 여성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전체 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한 사업 수행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편의시설 및 기기, 보건환경 등의 요구도 차이가 예측됨. 이와 관련된 과제인 ‘Ⅲ-2-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한 산재취약 근로자 보호 방안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 산재 발생률 등 차이를 고려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계획서 내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

□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장애종별	2003		2006		2009		2010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전체	489,852	964,363	743,682	1,223,644	1,003,651	1,425,896	1,048,979	1,468,333
지체장애	246,712	567,204	378,334	671,062	535,661	757,670	560,311	777,411
뇌병변장애	46,452	71,062	80,034	114,311	106,564	145,254	111,147	150,599
시각장애	52,735	100,122	77,281	128,870	95,632	145,605	99,905	149,354
청각장애	51,388	75,100	78,378	105,450	109,298	136,503	116,579	143,824
언어장애	3,429	9,408	4,005	10,730	4,441	11,808	4,701	12,506
지적장애	42,856	69,187	52,842	82,610	60,781	94,172	63,441	97,808
자폐성장애	975	4,742	1,864	9,062	2,223	11,710	2,313	12,575
정신장애	20,018	26,865	33,759	41,299	44,149	50,627	44,935	50,886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해당연도)

주석 : 2008년부터 장애 명칭 변경됨. 기존의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변경됨.

□ 임금근로자 장애인의 월평균임금

성별	2008		2009	
	월평균임금 (만원)		월평균임금 (만원)	
전체		119.1		120.3
여자		74.9		77.6
남자		130.8		132.3

출처 :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 현황(성/행정구역별)

(단위 : 명)

행정구역별	시설수 (개)	연말현재재소자-전체	연말현재재소자-여자
전국	452	24,395	9,466
서울특별시	43	3,174	1,114
부산광역시	24	1,400	573
대구광역시	17	1,467	561
인천광역시	20	882	322
광주광역시	14	719	382
대전광역시	16	831	361
울산광역시	7	491	195
경기도	106	4,924	1,862
강원도	24	1,048	402
충청북도	22	1,625	665
충청남도	26	1,576	589
전라북도	39	1,617	698
전라남도	19	930	349
경상북도	35	1,747	657
경상남도	28	1,499	563
제주특별자치도	12	465	173

출처 :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1.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 매뉴얼

Step 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을 대상으로 분석평가 실시한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에 근거한다. 각 기관은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세부과제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추진절차는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회신하게 되는데 분석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분석평가서는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4개의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이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석평가의 대상 · 기준 · 방법 · 절차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근거는 영 제3조)을 말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구성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조례 ·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각각의 분석평가는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분석평가 지표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의 지표는 분석대상에 따라 상이하다.

계획에 대한 분석대상의 선정은 해당 계획의 수립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점검하고, 적정한 경우 분석평가서를 통해 실시한다. 분석평가 지표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의 4개 평가항목에 대해 9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Step 2	분석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 체크리스트 작성은 이렇게
--------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작은 체크리스트의 작성에서부터이다.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 계획 수립안 마련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기본계획, ○○종합계획, ○○5개년 계획’ 등으로 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주체인 계획으로는 산업입지수급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추진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적용, 이를 분석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는다. 선정 기준은 해당 계획의 수립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함이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의 경우 ‘제외 계획’으로 분석평가에서 제외된다. ‘제외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분야의 계획인지를 ‘대상 계획’을 통해 점검한다.

<표 1> 계획 분석평가 대상 기준 세부항목

세부 항목	
제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대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설치·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분석한 체크리스트는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서 제출 받은 체크리스트를 검토 한 후 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회신하도록 한다.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계획)			
계획명			
구분	신규 수립()	재수립()차	
근거 법령			
소관 부서	관계기관	주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부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계획 수립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일간)	
	계획안 마련	~ (일간)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일간)	
붙임 자료	1. 계획(안) 2. 관련 연구결과물		

- ‘계획명’, ‘구분’, ‘근거법령’, ‘소관부서’는 분석대상 계획에 맞추어 각각을 작성한다.
- ‘계획수립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 계획안 마련, 위원회 상정 및 결의에 대해 해당 기간과 소요 시일에 대한 제시를 한다.
 - 만약,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기 어려우면 약 0일로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붙임자료’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결과물로는 계획안 수립을 위한 각종 조사자료, 토론회 및 공청회자료, 기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계획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대상 계획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수립하는 계획이 분석평가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외 계획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예’, ‘아니오’에 체크한다.
 - 제외 계획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고, 대상 계획 작성 없이 종료한다.
- 제외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하고, ‘대상 계획’의 3 가지 세부평가 항목에 따라 대상계획의 성격을 구분한다.
 - 계획의 내용을 인적대상, 시설설치·개선, 그 외의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해당사항에 ‘예, 아니오’를 체크한다. ‘예’의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Step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서 작성은 이렇게 !

분석평가서의 작성은 해당 계획의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선정된 대상 계획에 대해 계획 수립안 마련 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5개년 계획’ 등으로 명칭하는 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주체인 계획(산업입지 수급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계획수립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분석평가 지표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의 4개 평가항목에 대해 9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2>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지표 항목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I. 전략 및 중점 과제	2. 성별 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③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3. 성별 형평성	④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⑤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⑥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⑦ 법령 반영 계획
		⑧ 예산 반영 계획
		⑨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전 】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전 검토해야 할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교육 받기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통해 제도 이해하기
 -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파악
- 분석대상 ‘계획’을 파악한다.
 - 현재 수립되고 있는 계획(안)의 수립 단계를 파악한다.
 - 계획(안) 수립을 위해 계획과 관련한 연구현황을 검토한다.
-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분석대상 계획과 유사한 성격의 계획의 통계자료를 파악한다.
 - 계획(안) 수립시의 연구 자료를 통한 성별통계 현황을 확인한다.
 - ▶ 선행연구, 민족도 및 요구도 조사등의 자료 검토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 계획명 :

I. 개요

□ 비전과 목표

○

□ 전략 및 중점과제

○

【 Point 】

❖ 개요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계획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 대상 계획의 수립안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 ‘계획명’에는 분석대상 계획수립안의 계획명을 기재한다.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는 각각 해당 계획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비전과 목표는 해당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 해당 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를 기재한다.

【작성 사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 ~ 2012)

여성가족부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서

- 기본계획명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I. 개요

- 비전과 목표

- 비전 :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전략 및 중점과제

- 전략

- 국제결혼 건전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서비스 접근성 및 질(質) 제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

- 중점과제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 국제결혼증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국제결혼증개에 대한 관리 강화
- 결혼이민자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 자립기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I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해당 여부를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어 체크한다.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분석 근거>
-

□ <해당 계획 개선안>

○

- 계획 수립 시 비전과 목표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비전과 목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 후 작성해야 한다.
 - 해당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를 파악한다.
 -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한 후 ‘해당여부’에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작성 사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 ~ 2012)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분석 근거>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이 정책과제로 포함됨.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은 결혼이민자와 가족,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과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외국인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됨.
 -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모든 성별이 그 대상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욕구반영, 정책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해당 계획 개선안>
- 다문화가족 중 외국인근로자 가족,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세부목표 등을 통한 성별화된 욕구파악, 정책제시가 필요함.

III. 전략 및 중점과제

① 성별 요구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첫 번째 분석은 ‘성별 요구도’에 대한 부분으로 3가지로 구성된다.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각각 성별 요구 차이가 있으면 ‘있음’으로,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한다.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해당 계획 개선안>

-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를 보여주는 전략 및 중점과제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한다.
- 체크리스트 작성시 ‘불임자료’로 제시된 각종 동향조사 및 연구등의 연구결과물이나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구성할 수 있다.

○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해당 계획 개선안>

○

-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를 보여주는 전략 및 중점과제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진입장벽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한다.
- 체크리스트 작성시 ‘불임자료’로 제시된 각종 동향조사 및 연구등의 연구결과물이나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구성할 수 있다.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해당 계획 개선안>

○

-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를 보여주는 전략 및 중점과제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남녀의 신체적 차이(성별에 따른 질병률, 안전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한다.
- 체크리스트 작성시 ‘불임자료’로 제시된 각종 동향조사 및 연구등의 연구결과물이나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구성할 수 있다.

【 Point 】

- ❖ 성별 요구도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해당 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로 제시된 내용을 파악해 각각 성별에 따른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사회문화적 위치, 경제적 차이, 신체적 차이에 대한 성별 요구의 차이를 보여주는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해 제시한다.
단,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②~④)은 통합 작성이 가능하므로 세부적인 구분보다는 성별 요구에 대한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계획안 수립시 해당 계획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연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의 연구 및 조사 설계에 대한 참여, 자문이 중요하다. 이는 성인지적인 계획 수립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성별 요구도 분석에 있기 때문이다.
- 관련 통계자료는 아래의 사이트나 각 계획의 수립 부처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통

계자료를 활용해 구성할 수 있다.

-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에서부터 세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 기존의 행정통계나 설문조사 결과 등 이미 생산되어 사용 중인 통계자료를 활용하거나 재구성하여 성별통계를 재생산 하는 것도 방법이다.
- ▶ 통계청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생활시간조사보고서」
(http://kosis.kr/ups/ups_01List.jsp)
 - 통계청 : e-나라지표
 - 국가 통계 포털 : <http://kosis.kr/>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통계자료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 (<http://gsis.kwdi.re.kr/>)
 - 「여성통계연보」 (<http://www.kwdi.re.kr/>)

【작성 사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 ~ 2012)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 상담 · 문화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함.
 -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및 정착기, 역량강화기, 전체단계로 구성됨.
 - 정책이 다문화가족으로 되어 있으나 대다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가 주 대상임.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대부분(89.7%), 다문화가족 자녀는 만 6세 이하가 62.1%임.
- 결혼준비 단계에서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성사되고 있으나, 이들에 의한 인권침해성 국제결혼이 양산될 우려가 큼.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상황임.
 - ’10.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81,671명으로 ‘09년도(167,090명)에 비해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이 89.7%, 국적취득자는 31.1%으로 나타남.
- 문화적 차이, 상호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족갈등, 가정폭력, 이혼 등이 급증하고 있음.
 - 국제결혼부부의 이혼 건수는 ’05년 4,171건에서 ’08년 11,255건으로 약 2.7배 급증. ’08년 전체 이혼 중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9.7%로 이혼하는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부부로 나타남.

□ <해당 계획 개선안>

-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가 다문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 잘 구조화된 욕구 및 요구조사가 필요함.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이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함.
- 결혼성사를 위한 허위정보 제공, 대량속성 결혼증개로 인해 결혼 후 가족갈등, 이혼 및 국가이미지 실추 등 사회문제 발생 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제결혼증개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함.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제3차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 '이주여성의 정착지원'을 위해 '다문화여성 사회통합 지원', '다문화여성 보호체계 구축'을 명시함.
-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09.5월 현재 103천명으로 만6세 이하는 59.6%, 만 7~12세 이하는 26.6%를 차지함.
 - 부모의 사회 경제적 취약성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학습능력 자체 등 교육의 양극화를 야기.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에대한 지원이 필요함.
 - 상급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이 저조하나,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인적 물적 인프라는 미흡함.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 이민자 남성의 경우 학력의 인정이 되지 않거나 차별적 환경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직업안정성이 확보하기 힘들 수 있음. 특히 여성의 경우 이는 성별화된 문화로 인해 남성보다 더 열악한 저임금 분야인 가사서비스업, 미용, 비숙련 노동(업무) 등 의 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
 - 월평균 기구소득은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4%,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21.3%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함. 적절한 취업지원이 부족해 취업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주지 못하고 경제적 자활에도 한계가 있음.
 - 결혼이민자의 72.8%가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직업훈련 참여 경험자는 10.4%에 불과함.
 - 결혼이민자여성 대부분이 취업을 희망하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취업하기 힘들.

□ <해당 계획 개선안>

-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 결혼이민여성이 취업시 가장 큰 장애는 자녀보육문제(28.0%)임. 보육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에선 결혼이민여성이 향후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어학 > 컴퓨터 · 정보통신 > 음식 · 조리 순서로 나타남.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취업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이 필요함.
 - 결혼이민자를 위해 운전면허시험등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다국어표기를 지원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야 함. 다국어표기 지원 확대등이 필요함. 미용, 제과, 제빵기능사 3 종목에 대한 확대방안 고려중이며 이는 타 분야까지의 확대방안을 모색해야함. 취업 욕구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정책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확대.
 - 국제결혼 남성 부부 대상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다문화사회 이해, 가정폭력 예방 등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폭력에 열악한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시함.

〈해당 계획 개선안〉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좀더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정책으로 제시 되어야 함.
- 현재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실태조사시 피해자의 성별, 연령, 범죄유형에 따른 조사는 실시되고 있음.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예방 프로그램의 성인지성을 확인해 자칫 성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함.

2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두 번째 분석은 ‘성별 형평성’에 대한 부분으로 2가지로 구성된다. 재원배분,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여부에 대한 부분을 각각 ‘있음’, ‘없음’으로 파악해 표기한다.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분석 근거〉

-

 〈해당 계획 개선안〉

-

● 계획(안) 수립 시 전략 및 중점과제별 재원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하도록 분석해야한다.

- 재원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배분을 의미한다.

6.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구분	2010년	2011년
전체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

□ <해당 계획 개선안>

○

- 계획(안) 수립 시 전략 및 중점과제별 사업 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하도록 평가해야 한다.
- 사업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수혜발생을 의미한다.

【 Point 】

- ❖ 재원배분 및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은 재원조달 계획, 각 부처 별로 편성된 예산 혹은 연도별 재정계획이 제시되어 있거나 예산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계획에 따른 편차가 크다.
- 예산에 대한 제시, 재정 계획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계획안 수립시 재원 및 수혜에 있어서의 모집단이 파악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성인지적 예산 수립의 방향을 제한하거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작성 사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 ~ 2012)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재원 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분석 근거〉			
○ 중점과제에 대한 2011년도의 예산을 살펴보면 각각 전체의 예산만을 제시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적용이나 성별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은 제시되지 않음.			
- 2011년도 다문화가족 중점과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20개)	'11년 예산	
1.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2,38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198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264	
	자립기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416	
	결혼이민자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940	
3. 결혼이민자의 인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23,866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3,072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665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4,770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995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20,202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5,868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7,972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761	

영역	중점과제 (20개)	'11년 예산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3,802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1,040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94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634
총계		88,939

□ <해당 계획 개선안>

- 성인지 예산제도의 적용이나 성별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세부 예산 편성시 성별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
 - 부처별, 사업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음. 해당 사업별 성인지 예산이 제시되어야 함.
 - 평가서 작성담당자는 성인지적인 예산 수립이 이루어졌는지, 각 사업별 예산 집행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함. 예산 집행시 모집단과 해당 사업에 대한 수혜자를 중심으로 성별예산의 집행 현황을 파악, 분석해야 함.

6. 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제3조의 3에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남성결혼이민자는 2009년 17천명에서 2020년 39천명으로 128.3%(연평균 7.5%) 증가 하며, 여성결혼 이민자는 동 기간 150천명에서 312천명으로 107.9%(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각각 전망됨. 즉, 여성결혼이민자는 남성결혼이민자에 비해 2009년 8.7 배 많으나 남성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격차는 2020년 7.9배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는 국제결혼 중 ‘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 형태가 지배적이나, 점차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남편–한국인아내’ 형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됨.

□ <해당 계획 개선안>

- 정책 대상자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의 작성이 필요함.
 - 현재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 만 성별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적별 성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의 성별 연령과 자녀의 연령별 성비에 대한 파악은 미비한 실정임.
 - 보다 많은 변수가 고려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활용이 요구됨.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7. 법령 반영 계획	
8. 예산 반영 계획	
9.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개선 포함) 등 반영 계획	

-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세 번째 분석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3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분석내용을 토대로 개선 사항을 제시하면 된다. 각각 법령, 예산,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에 대해 어떠한 개선안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법, 시기, 절차등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한다.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평가항목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토대로 작성한다.
- 분석평가를 통해 새로운 단위,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나 기존 과제나 사업에 대한 방향 전환등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의 제시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간략한 제시, 방향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도 개선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 ~ 2012)

세부 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7. 법령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4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의 구성시 성별 비율에 대한 명시가 제시되지 않음.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최소 30% 이상, 40%의 여성위원회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나 지침에서의 명문화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성별을 표기하지 않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실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건강가정지원법에는 성별통계 생산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함.
8.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부처별 예산의 경우 각 사업별 총액 만이 아닌 성별에 따른, 모집단 대비 수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자료의 제시가 필요함.
9. 사업내용 · 수행방식 (기타 제도개선 포함)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주기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 국적별, 연령, 학력 등을 중심으로 욕구, 만족도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실태조사의 실시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및 각종 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교육안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별(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등)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추진 모델 개발시 지역특성만이 아닌 성별, 연령 별에 따른 대상별로 차별화 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의 맞춤 교육안의 개발이 필요함. ○ '여성=모성적 존재=양육책임자'로서의 기존 성별 고정관념적 교육프로그램이 대다수이며 이를 통해 성별화된 역할 교육이 재생산 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인지적인 매뉴얼 등의 개발이 요구됨. ○ 일반국민들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 강화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와 온 · 오프라인 캠페인, 공익광고 등 만이 아닌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확대 - 유 · 초 · 중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가 요구됨. ○ 담당공무원 및 사업관련 종사자, 위원, 의원등을 대상으로 젠더감수성 및 성인지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

【작성 사례】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 소관 부서 및 연락처는 ‘기관/부서명’, ‘부서장’, ‘담당자’ 순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Step 4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서 작성 후 마무리까지 !
--------	------------------------------

-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중점과제별 세부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당 계획의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기관에 통보한다.
 - 각 기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개선의견의 경우 반영결과를 해당 계획 확정 전까지 여성가족부에 통보한다.
- 분석평가 결과 종합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마무리됩니다.
- 각 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제6조)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2. 실습 !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 워크시트 활용하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 실습준비

1. 실습은 4 ~ 5분씩 조를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를 만들어 주세요.
2. 각 조는 조장(발표자), 기록을 담당해 주실 2분을 정한 후 시작하세요.

■ 실습시작

1. 준비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 자료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A 기본계획’, ‘B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실습을 위한 기본자료입니다.
2. 분석대상 기본계획 파악하기

대상 기본계획

소관부처	계획명

- 1) 분석대상 기본계획을 확인하세요.
- 2)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파악하세요.
- 3) ‘개요’는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세요.

■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중점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개요	
비전과 목표	비전

개요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	전략
	중점과제

3.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찾기

- 1) ‘□□ 계획 수립안’의 개요를 통해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세요.
- 2) ‘비전과 목표’에서 나타나는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 3)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논의하신 내용은 발표, 점검하겠습니다.

■ 성별로 다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 성별에 따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어떻게 개선하면, 성별에 따른 영향의 격차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4. 성별 요구도 파악하기

- 1) 기본계획의 개요를 통해 ‘전략 및 중점과제’를 확인하세요.
- 2) ‘전략 및 중점과제’에서 나타난 ‘성별 요구도’를 아래의 표를 참고로 찾아보세요.
- 3)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논의하신 내용은 발표, 점검하겠습니다.

■ ‘□□계획 수립안’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젠더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 젠더이슈를 확인하려면 어떤 통계자료가 필요할까요?

- ▶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 ▶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 ▶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 제시된 자료 이외에 젠더이슈를 확인하려면 어떤 통계가 필요할까요?

■ 성별통계자료 이외에 추가로 검토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러한 성별요구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 ▶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 ▶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5. 성별 형평성 파악하기

- 1) 기본계획의 개요를 통해 ‘전략 및 중점과제’를 확인하세요.
- 2) ‘전략 및 중점과제’에서 나타난 ‘성별 형평성’을 아래의 표를 참고로 찾아보세요.
- 3)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논의하신 내용은 발표, 점검하겠습니다.

■ ‘□□ 계획 수립안’에서는 성별특성에 따른 재원배분은 제시되고 있습니까?

■ (제시된 경우) 성별특성에 따른 재원배분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 ▶ 사업명 및 예산규모를 파악해 보세요.
- ▶ 성별요구를 반영하도록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성별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고려, 개선되어야 할까요?

■ (제시되지 않은 경우) 성별특성에 따른 재원배분 어떻게 제시되어야 합니까?

■ ‘□□ 계획 수립안’에서는 성별특성에 따른 수혜도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 (제시된 경우) 성별특성에 따른 수혜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 ▶ 통계나 수치를 통한 제시, 성별에 따른 구분은 이루어졌나요?

- ▶ 성별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고려, 개선되어야 할까요?

■ (제시되지 않은 경우) 성별특성에 따른 수혜는 어떻게 제시되어야 합니까?

6.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작성하기

- 1) 위의 분석 3 ~ 5번을 참고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2) 아래의 표를 따라 법령, 예산, 사업내용·수행방식의 개선계획을 찾아보세요.
- 3)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논의하신 내용은 발표, 점검하겠습니다.

■ 법령, 예산,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에서 어떤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 위와 같은 단계를 통해 정책이 실행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예상해 보세요.

【 보충자료 】

□ 워크시트 활용하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본 실습시트는 교육시 담당 강사가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양식을 바탕으로 교육 대상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실습준비

1. 실습은 4 ~ 5분씩 조를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를 만들어 주세요.
2. 각 조는 조장(발표자), 기록을 담당해 주실 2분을 정한 후 시작하세요.

【Tip】 교육대상이 단일 집단일 경우 해당 부처의 기본계획이나 현재 수립중인 계획안의 자료를 중심으로 강의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습시작

▣ 강의준비는 이렇게~!!!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에 대한 분석시 ‘제3차 여성 정책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제공해야 함.
- A·B 기본계획 : 교육생에 맞춤형 기본계획을 제공해야 함.
 - 교육생이 담당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안을 사전에 전달받아 분석,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교육의 자료로 제공해야 함.
 - ‘신규수립’에 대한 교육인 경우 : 기본계획 수립안이 있는 경우 이를 중심으로 실습함. 실습에 적정 계획이 없는 경우 다수의 교육생이 속한 부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 혹은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상 유사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실습함.
 - ‘재수립’에 대한 교육인 경우 : 기본계획 수립안이 있는 경우 이를 중심으로 실습함. 해당 기본계획이 미비한 경우 이전에 수립된 계획을 중심으로 실습함.
- 〈자료 0〉 : 해당 기본계획의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근거로 관련 통계자료, 예산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함.

- 계획안 수립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자료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시 된 토론회 및 공청회자료
- 성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찾기 용이하도록 관련 분야의 성별 통계 자료 제공

1. 준비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 자료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통계청의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2008)
각종 통계자료 제시
 - ☞ 인적 현황 파악 : 농어촌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 ☞ 각종 연금(국민연금 기입비율, 지역별 국민연금 연간 급여액 수준 비교),
지역별 결혼이민자 비율 및 체류기간, 지역별 결혼이민자 (가구)소득분포
 -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황
 - ☞ 농어촌 지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급 현황
 - ☞ 보육시설 현황, 보육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지역 통계자료
 - ☞ 각종 건강관련 통계자료
 - ▶ 일반적 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인지율, 수령률 및 생활도움정도
 - ▶ 일반적 특성별 건강상태 만족도
 - ▶ 일반적 특성별 현재 의사진단 질병수등

2. 분석대상 기본계획 파악하기

◆ 대상 기본계획

소관부처	계획명
보건복지가족부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10-14)

- 1) 분석대상 기본계획을 확인하세요.
- 2)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파악하세요.
- 3) ‘개요’는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세요.

■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중점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개요	
비전과 목표	비전

전략 및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행복한 농어촌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어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강화 ◆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및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 				
	추진 방향	예방형	<input type="checkbox"/>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도모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전적 투자		
		맞춤형 · 보편형	<input type="checkbox"/>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input type="checkbox"/> 아동 · 여성 · 가족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input type="checkbox"/> 지역별 의료접근성의 격차를 최대한 완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보장 강화 - 연령 · 세대 사회 통합 - 보건의료 기반개선 및 건강증진 			
	중점과제				
	< 기본생활보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내실화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 연령 · 세대 사회 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만5세아 무상보육 조기실시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차량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 청소년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아동 그룹홈 및 아동 · 청소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다기능화 및 농수협 보유 복지자원 활용 추진 				

- < 보건의료 기반개선 및 건강증진 >
- ◆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및 민간병원 지원 육성
 -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및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민간의료기관 지원 ; 육성
 - ◆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및 특수구급차 확충
 - ◆ 구강건강서비스 강화
 - 농어촌 치과이동차량 및 장비 지원 및 노인의치보철 사업
 - ◆ 암관리 강화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및 농어촌 재가암환자 관리
 - ◆ 정신건강강화 및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농어촌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 ◆ 한의약공보건사업 활성화
 - 보건소 한방기능 보강 및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 ◆ 취약계층 영양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3.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찾기

- 1)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10-14)계획’의 개요를 통해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세요.
- 2) ‘비전과 목표’에서 나타나는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 3)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논의하신 내용은 발표, 점검하겠습니다.

■ 성별로 다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대상자는 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라 여성이 다수일 가능성 높음. 특히 농어촌 결혼이민자 증가 및 이민자가 속한 경우가 많아 성별화 된 보건, 복지 정책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농림어업인에 종사하는 남자 중 38.8%가 외국여성과 결혼함. – 복지수준, 기초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통계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stat)
■ 성별에 따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해야 함 : 통계청,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 이용.
■ 어떻게 개선하면, 성별에 따른 영향의 격차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서비스 중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등이 성별로 어떠한 접근성으로 나타나는지 통계자료를 구축해야 함.

4. 성별 요구도 파악하기

- 1) 기본계획의 개요를 통해 '전략 및 중점과제'를 확인하세요.
- 2) '전략 및 중점과제'에서 나타난 '성별 요구도'를 아래의 표를 참고로 찾아보세요.
- 3)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논의하신 내용은 발표, 점검하겠습니다.

*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10-14)계획'은 다양한 정책대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나 주로 연령에 따른 지원 및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많음.

- 성별영향에 대한 논의시 정책대상자를 확인해야함.
- 통계자료나 연구자료에서 성별 요구나 차이를 얼마나 고려하고,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함.
- 예를들어 저소득층과 노인의 구강건강수준이 낮아 구강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이 보다 저하될 가능성 높후한 것처럼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차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농어촌지역의 정신보건과 관련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엔 노인자살율에도 불구하고 예방 대책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성별차이 등을 제시하는 것도 예시가 될 수 있음.

⇒ 65세 이상 자살사망률 : '96년 28.6명 → '08년 71.7명(통계청, '09)

⇒ '08년 노인자살자수(3,561명)는 전체 자살자수(12,858명)의 27.7%를 차지

⇒ 농어촌의 고령화 심화, 노인 단독가구 증가로 인한 우울증, 생활고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보사연, '08)

■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10-14)계획'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젠더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 다양한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이를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유도해야함.

■ 젠더이슈를 확인하려면 어떤 통계자료가 필요할까요?

↳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 농어촌지역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가구는 도시지역의 두 배*

- '07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가구: 도시지역(8.5%), 농어촌(18.2%)
- 〈지역별 빈곤수준〉

구분	최저생계비 미만	상대빈곤		
		중위40%미만	중위50%미만	중위60%미만
농어촌	18.2	27.7	36.8	44.3
도시	8.5	13.2	18.7	24.3
전체	9.4	14.6	20.4	26.3

출처 : 보사연, '08

기준 : 경상소득 및 가구 및 '07년 기준

– 빈곤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07년) : 전국 74.1%, 대도시 93.5%, 농어촌 48.65%

- 농어촌지역 아동청소년의 상대빈곤율은 도시에 비해 약 두 배
〈지역별 아동청소년 상대빈곤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위소득 40% 미만	7.0	5.5	8.0	9.9
중위소득 50% 미만	11.5	8.8	13.1	17.3

출처 : 복지부 · 서울대 산학협력단, '09

▶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유병률,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높으며 건강수준 만족도는 낮은 편

〈지역별 건강 · 보건의료〉

	농어촌	도시
유병률('08)	21.8%	16.6%
월평균 보건의료비('07)	143,029원	111,985원
최근 2년 건강검진 수검률 ('08)	61.1%	61.0%
건강수준 만족도('08)	46.0%	52.8%

출처 : 통계청, '08

- 의료비용이 ‘많이 부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농어촌은 20.3%로 대도시 16.7%와 중소도시 14.6%보다 높음.
-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낮아 전체적으로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더 높음.
⇒ 전체 통계의 분포는 제시하나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가에 대한 제시가 없음.

- 농어촌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비율 및 월 보험료는 도시여성 및 농어촌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

- 농어촌의 국민연금 가입가구 비율은 53.6%, 월보험료는 82천원인 반면, 도시의 가입 가구 비율은 63.9%, 월보험료는 136천원(통계청, '08)
- 농어촌 여성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구비율은 17.3%이고 월보험료는 51천원으로 도시(20.3%/91천원) 및 농어촌 남자(43.7%/81천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통계청, '08)

▶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 열악한 의료, 건강 서비스

- 관련 통계자료 아래쪽 참고

〈일반적 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인지율, 수령률 및 생활도움정도〉

<p>〈일반적 특성별 건강상태 만족도〉</p> <p>〈일반적 특성별 현재 의사진단 질병률〉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자료 이외에 젠더이슈를 확인하려면 어떤 통계가 필요할까요? <p>* 다양한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이를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유도해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통계자료 이외에 추가로 검토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p>* 다양한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이를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유도해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가되면 좋을 사업 – 일반적인 논의속에서 성별화된 개념이나 사업등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성별요구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p>→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기본계획에 성별통계자료가 거의 인용되지 않음. ⇒ 추후 조사단계에서부터 성별통계가 생산, 관리,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복지인프라 구축 ⇒ 구체적인 성별 욕구에 따른 복지인프라는?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아동센터의 성별요구 파악을 통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보건의료기반 ⇒ 구체적인 성별욕구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엇인가? : 보건의료시설,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서비스 제공 : 성별에 따른 만성질환과 농촌형 질환에 무엇이 있는가? 	
<p>→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의 기준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의 사례를 활용한 개선안 제시 • 남성독거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생활관리사 추가파견(경기도, 2008) 	
<p>→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의 기준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의 사례를 활용한 개선안 제시 • 여성암 건강검진 조건 완화(보건복지부, 2004) • 성별 맞춤형 도민 건강검진(전라북도, 2008) 	

5. 성별 형평성 파악하기

- 1)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10-14)’의 개요를 통해 ‘전략 및 중점과제’를 확인하세요.
- 2) ‘전략 및 중점과제’에서 나타난 ‘성별 형평성’을 아래의 표를 참고로 찾아보세요.
- 3)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논의하신 내용은 발표, 점검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10-14)계획’에서는 성별특성에 따른 재원배분은 제시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재정계획은 5년간의 기본생활보장, 사회통합, 보건의료기반 개선의 영역별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음. 성별에 따른 고려나 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 계획상에서의 재정계획으로는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총 4조 5,421억원 소요됨.
 - 기본생활보장 강화 : 91억*
 - 연령 · 세대 사회통합 : 2조 4,118억*
 - 보건의료기반 개선 및 건강증진 : 2조 2,122억

■ (제시된 경우) 성별특성에 따른 재원배분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 성별 요구의 반영이나 성인지 예산으로의 편성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방향성이나 향후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가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음.

<예시>

- 진행시 통계청의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2008) 등을 활용해 해당 예산이나 재정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성별 요구를 반영하는 예산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성별로 나뉜 통계 작성이 필요한 실정임. 성별 통계 수립이 제시되어야 함.
 - 성별에 따른 요구를 재정에 반영하기 위해선 성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함.
 - 농어촌지역은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로 응급의료체계 정비는 더욱 중요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부분에서의 추가적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임을 제시해도 좋음. 특히 이러한 사업등의 예시엔 좀더 구체적인 성별현황을 함께 제시해 논리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음.
 - 응급의학 전문의의 53%가 서울, 경기도, 광역시에 근무(보사연, ‘08)
 - 인구고령화는 급사 및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증가시켜 응급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 인구10만 명 당 급사 및 심혈관 질환 발생환자 수 : 30대 30명, 50대 100명, 60대 300명, 70대 700명 수준(보사연, ‘09)

▶ 사업명 및 예산규모를 파악해 보세요.

성별요구를 반영하도록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 성별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고려, 개선되어야 할까요?

■ (제시되지 않은 경우) 성별특성에 따른 재원배분 어떻게 제시되어야 합니까?

-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10-14)계획’에서는 성별특성에 따른 수혜도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 반영되지 않음.
<p>■ (제시된 경우) 성별특성에 따른 수혜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p> <p style="margin-left: 20px;">▶ 통계나 수치를 통한 제시는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성별에 따른 구분은 이루어졌나요?</p>
<p style="margin-left: 20px;">▶ 성별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고려, 개선되어야 할까요?</p>
<p>■ (제시되지 않은 경우) 성별특성에 따른 수혜는 어떻게 제시되어야 합니까?</p>

6.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작성하기

- 1) 위의 분석 3 ~ 5번을 참고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2) 아래의 표를 따라 법령, 예산, 사업내용·수행방식의 개선계획을 찾아보세요.
- 3)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논의하신 내용은 발표, 점검하겠습니다.

* 앞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합.

- | |
|--|
| <p>– 근거법령이나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각종 지침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제안해야 함.</p> |
|--|

- | |
|--|
| <p>■ 법령, 예산,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에서의 어떤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 지역 의료서비스 이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음. 보건소나 이동 서비스 이용용이성 확보에 걸림돌이 있는지 확인 후 개정. – 예산 : 추가예산의 배정, 현재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별특성을 반영한 의료, 복지 체계 지원 사업에 예산편성. –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 지역을 감안해 온라인이나 지면을 통한 사업 홍보 보다는 직접적인 홍보, 지역의 여러 모임을 통한 전달을 꾀함. |
| <p>■ 위와 같은 단계를 통해 정책이 실행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예상해 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을 고려한 농어촌에서의 복지 증진을 꾀할 수 있음. 의료시설이나 보육시설의 확충 등. |

<표2-3> 일반적 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인지율, 수령률 및 생활도움정도

특성(2008)	인지율	수령률	생활도움 정도(도움 되지 않는다)	생활도움 정도(약간 도움 된다)	생활도움 정도(많이 도움이 된다)	계	(명)
전체		-	-	-	-	-	-
65세이상	91.9	46.1	4.4	42.1	53.6	100	4,947
성별		-	-	-	-	-	-
남성	94.1	37.4	5.7	47.9	46.5	100	1,613
여성	90.4	52	3.8	39.3	57	100	3,334
연령		-	-	-	-	-	-
65~69세	93	33.2	6	47.3	46.7	100	1,349
70~74세	93.3	48.3	4.4	42.9	52.7	100	1,475
75~79세	91.5	54.5	4.2	39.3	56.5	100	1,029
80~84세	89.8	63	1.3	39.7	59	100	653
85세이상	83	65.6	4.5	33.1	62.4	100	442
16개시도		-	-	-	-	-	-
서울	87.7	33.3	6.4	34.8	58.7	100	628
부산	94.7	50.5	5.4	27.5	67	100	390
대구	90.6	43.2	5.1	50.2	44.7	100	214
인천	90.6	48.7	4	45.8	50.2	100	222
광주	93.5	45.5	4.3	69.9	25.8	100	112
대전	94.4	39	1.1	53.4	45.5	100	99
울산	97.2	44.3	8	50.6	41.3	100	66
경기	89.7	43.1	5.7	52.3	42	100	836
강원	90.4	47.5	2	27.9	70.1	100	211
충북	95.5	52.4	0.6	57.1	42.3	100	214
충남	94.8	46.2	3.7	48.2	48.1	100	287
전북	93.1	52.1	2.5	36.8	60.8	100	298
전남	95.4	61.3	4.6	46.1	49.3	100	431
경북	94.2	53.8	2.9	35.2	62	100	460
경남	94	55	4	29.4	66.6	100	428
제주	89.6	36.3	5.1	56.1	38.9	100	50

<표2-4> 일반적 특성별 건강상태 만족도

	전혀 만족 하지 않는 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 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계	(명)
전체		-	-	-	-	-	-
65세이상	14.4	40.2	21.2	22.2	2	100	10,737
60세이상	12.6	37.6	21.4	25.9	2.5	100	15,080
성별		-	-	-	-	-	-
남성	10.7	29.4	19.9	36.1	3.9	100	6,423
여성	14	43.6	22.5	18.3	1.6	100	8,657
연령		-	-	-	-	-	-
60~64세	8.3	31	21.8	35	3.9	100	4,343
65~69세	10.6	36.9	22	27.5	3	100	4,079
70~74세	13.6	41.8	20.6	22.3	1.7	100	3,056
75~79세	19.2	43.1	19.7	16.5	1.5	100	1,893
80~84세	18.6	47.3	18.6	15.2	0.3	100	1,036
85세이상	20.7	34.1	26.8	16.8	1.6	100	673
16개시도		-	-	-	-	-	-
서울	12.9	32.2	18.5	31.4	4.9	100	2,848
부산	19.3	31.8	20.6	22.9	0.5	100	1,146
대구	10.8	38.9	26.9	22.9	0.5	100	707
인천	14.8	30.9	26.8	24.9	2.5	100	663
광주	9.7	53.3	16.1	20.4	0.5	100	363
대전	10.1	44.5	21.6	23.3	0.5	100	363
울산	6.1	34.5	26.7	31.1	1.6	100	223
경기	8.2	32.2	22.4	34	3.2	100	2,775
강원	10.4	42.1	19.5	27.1	1	100	602
충북	12.1	40.6	25.4	18.1	3.9	100	543
충남	8.7	48.8	18.8	22.5	1.1	100	813
전북	15.6	42	18.6	21	2.8	100	749
전남	20.4	44	14.4	20.2	1	100	933
경북	11.2	47.7	23.3	17.3	0.5	100	1,112
경남	17.2	35.7	28.4	16.8	1.9	100	1,052
제주	7.8	40.2	18.9	29.6	3.5	100	188

출처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과

<표2-5> 일반적 특성별 현재 의사진단 질병수

	없다	1개	2개	3개 이상	계	(명)
전체		—	—	—	—	—
65세이상	15.1	25.3	25.9	33.7	100	10,798
60세이상	17.8	27	24.7	30.5	100	15,146
성별		—	—	—	—	—
남성	24.1	31.6	23.1	21.2	100	6,452
여성	13.1	23.6	25.9	37.5	100	8,694
연령		—	—	—	—	—
60~64세	24.4	31.2	21.8	22.6	100	4,348
65~69세	18.4	27.4	25.2	28.9	100	4,098
70~74세	13.8	23.6	26	36.5	100	3,069
75~79세	11.4	23	27.1	38.5	100	1,901
80~84세	11.2	23.2	26.9	38.7	100	1,043
85세이상	16.9	29.3	24.4	29.4	100	687
16개시도		—	—	—	—	—
서울	20.4	27.1	22	30.5	100	2,860
부산	20.1	28.2	24.8	27	100	1,147
대구	17.1	24.3	24.2	34.5	100	707
인천	22.1	25.5	27.8	24.5	100	664
광주	7.1	26.6	26.3	40	100	365
대전	15.4	28.8	22.2	33.7	100	364
울산	28.5	29.8	18.4	23.3	100	223
경기	17.3	27.8	26.8	28.1	100	2,783
강원	21.6	36.8	25.1	16.5	100	603
충북	17.9	23.5	26.2	32.4	100	544
충남	15	29	25.3	90.7	100	815
전북	12.3	20.1	23.3	44.3	100	770
전남	13.3	24	26.1	36.6	100	938
경북	12.9	25.1	25.1	36.9	100	1,118
경남	21.9	29	24.4	24.7	100	1,055
제주	20.1	27.6	26.1	26.2	100	189

출처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과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김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1. 성인지 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¹⁶⁾

정보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로 이전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은 지속가능성과 글로벌화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적)다양성에 있다. 환경, 생태적 관점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의 지속가능성은 누구나 다 그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 반면, 다양성의 문제들은 개인이 지닌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인식의 전환과 재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에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간과하게 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이 가진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중요성에 비해 이제까지 매우 소홀히 다루어져 온 영역이며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책대상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카테고리의 하나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성별’이다.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 특징과 기능이 다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으며, 서로 다른 욕구와 이해(利害), 생각과 행동양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건과 경험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도 기대와 요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성별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수행의 결과, 성별로 균등한 수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성인지 정책이다.

성인지적 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와 삶의 경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국가의 정책과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양성간에 형평성과 평

16) 여성부(2012),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및 「201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내용을 재구성함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지적 정책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이다(여성부, 2009). 남녀의 요구의 적합한 충족을 위해 관습적인 영역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성별에 따른 가치를 재평가하고, 남녀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수행해온 노동과 활동의 생산성을 인정하며, 남녀가 지닌 욕구(needs)와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도시와 농촌, 아동과 성인, 장애인과 요구대상자 등 계층별, 지역별, 특성별 요소를 고려하듯이 성인지적 정책은 성별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인지적 정책의 형성과 실행은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수용하고 성·연령·직업·계층·학력·지역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 정책은 관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고려하고, 정책이 설정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극복하여 사회의 성평등 감수성 증진과 남녀가 주어진 조건 내에서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데 기여한다.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미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5조 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작성하며 예산안 작성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분석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이를 분석평가서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이를 분석평가서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주요정책과 사업은 국민생활에 밀접하여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생활체감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국민들의 삶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분야, 교육분야, 교통 및 시설분야, 경제활동 및 소득 분야, 문화 및 정보분야, 안전분야 등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분야의 대부분의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큰 방향을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전달받아 수행하며, 생활밀착형의 대민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분석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차별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별조건과 특성,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과 사업결과의 성별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성별로 다른 현실과 요구를 전제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기획, 집행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거기반 대안(evidence based policy)을 마련함으로써 성별역할 분리와 성별 관계의 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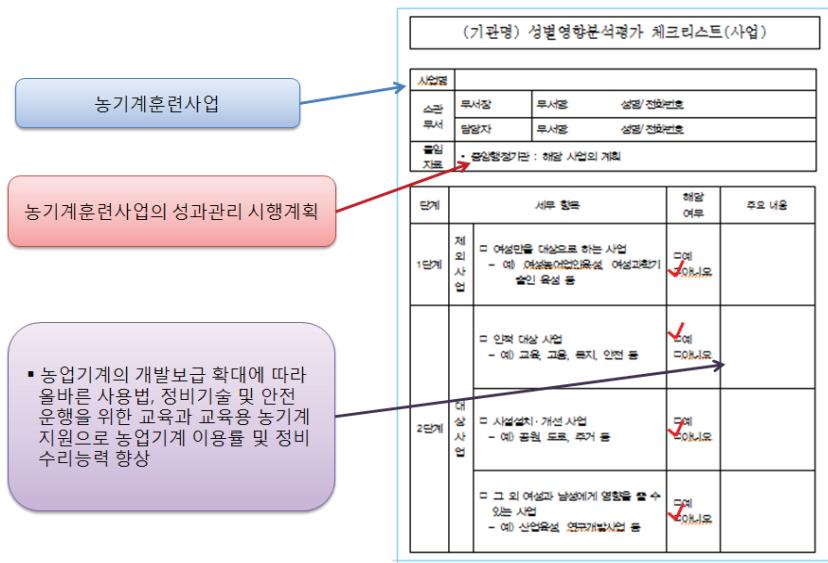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와 작성사례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항목과 체크리스트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1> 사업 분석평가 대상 기준 세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제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등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설치 · 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2)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와 작성 사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는 분석대상사업의 분석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8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대상 경영 및 내외로 작성

○ 사업명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사업 목적

- 해당 사업의 목적을 기재
-

□ 추진 근거

- 추진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 기재

□ 주요 사업 내용

-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 내용 등 기재

□ 예산 현황

사업명	예산*		
	2011년(A)	2012년(B)	증감(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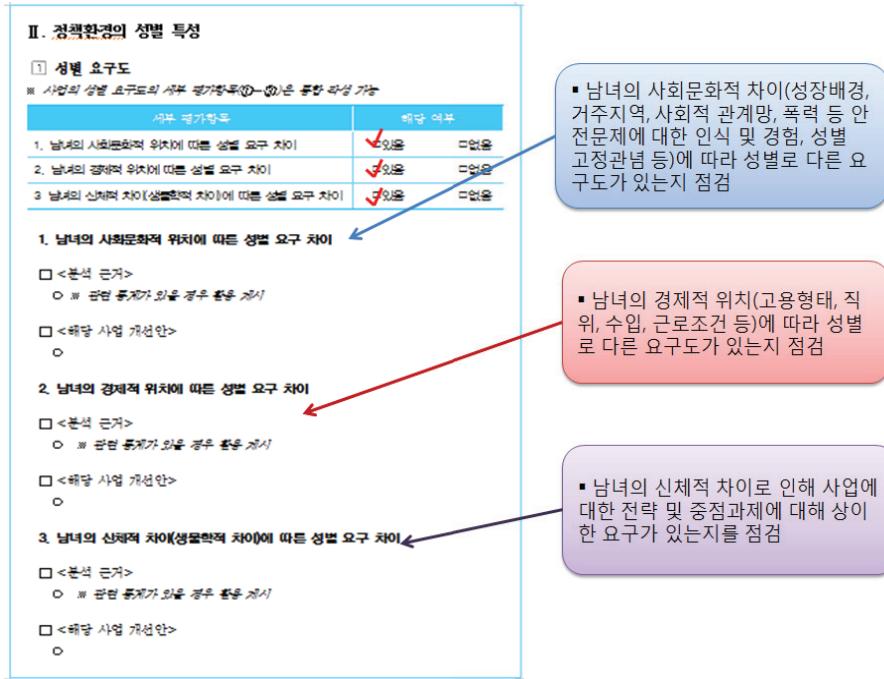
* 자료(지도자는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인(B) 작성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중소기업 인턴십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로 기업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 미취업 청년층(만15세~29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 도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

② 성별 형평성		해당 여부 □ 있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평가항목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재원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비율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배분을 의미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 <해당 사업 개선안> ○	▪ 사업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비율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수혜발생을 의미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 <해당 사업 개선안> ○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 <해당 사업 개선안> ○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해당 사업 개선안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예산 반영 계획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세부 평가항목		
6.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토대, 법령 개선 방안을 작성	
7. 예산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토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작성	
8.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토대,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의 개선 방안 작성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작성 사례】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사업명	농업인대학 교육(2009)			
소관 부서	소관 부서	부서명:농촌진흥청	성명/전화번호	
	작성자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붙임 자료	· 해당사업 계획 및 사업결과보고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결과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
1단계 제외사업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2단계 대상사업	□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① 영농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지식과 기술 및 경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 시설설치 · 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농업인 대학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서17)

- 사업명 : 농업인 대학 교육운영사업

I. 개요

사업 목적

-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경영에 대한 맞춤형 장기전문교육을 실시하며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농업인 기술지도 담당공무원의 전문 기술지도 능력 향상
- 지역별로 특성화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여 농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 평생교육법
-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주요 사업 내용

- 입학-교육-졸업 등 일련의 학사운영과정을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32개 장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
- 농업인의 요구를 기반으로 과정을 단계별로 개설하여 실시하며 졸업생동아리 모임 등 사후관리를 통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0년(A)	2011년(B)	증감(B-A)
농업인 대학운영	1,640	2,050	410

17) 본 사례는 농촌진흥청에서 2009년에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와 2012년 성인지 예산서를 토대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의한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재작성함.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① 성별 요구도

※ 사업의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①~③)은 통합 작성 가능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가사노동과 농사일의 이중적 역할, 영농을 위한 전문적 기술이나 경영에 대한 지식의 남성중심성 등으로 농업인 대학 교육사업에 대한 성별격차가 예상됨. 특히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전문적인 장기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농촌사회의 성별화된 사회문화적 조건은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일반적인 평생학습에의 참여도, 특히 직업기술과 관련된 평생학습의 여성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인 대학에의 여성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사업 개선안>

- 농업인 대학교육의 운영근거인 농업인 교육지침에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별 장기교육에 수요조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별도 개설하여 참여시간이나 품목, 기술수준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
- 여성농업인도 일정연한 이상 농사일에 종사하면 전문농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촌사회문화를 조성하고, 농업인 대학에 참여하여 농가소득향상 등 성과가 있는 여성농업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인정하도록 함.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에 보조인으로서가 아니라 전문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함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농가주가 아닌 여성의 경우 전문농업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농업인 대학에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짐.

* 대부분의 농가주는 남성(농가주가 미혼인 경우 남성 90.9%, 여성 9.1%이며 유배우농가주인 경우 남성 95%, 여성 5%)임

□ <해당 사업 개선안>

- 농업인 대학 교육에 여성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농가주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도록 하며, 품목별로 일정 비율까지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성이 주로 원하는 품목이 많은 경우 별도로 과정을 개설하도록 함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해당 사업 개선안>

-

②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11,098명	12,957명	12,257명
여성(비율)	3,278명(29.5%)	4,685명(36.2%)	4,355명(35.5%)
남성(비율)	7,820명(70.5%)	8,272명(63.8%)	7,902명(64.5%)

- 전체 농업인 가운데 여성비율이 51.5%에 해당하나 농업인 대학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은 '11년의 경우 35.5%로 예상하여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09년에 비하여 증가한 수치이나 '10년보다 0.7% 낮음. 친환경 벼, 포도재배 등의 품목에 남성참여가 많으나 식품조리 등에 여성이 많아 품목별 성별분리가 나타남 것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토대로 품목별, 수준별, 교육시간 및 기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요청됨. 도한 품목별 성별분리가 드러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전략도 필요함
- 농업인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 연 250만원의 소득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 추진되어야 함. 농업인 대학교육이 놓아 수입으로 직결되며 여성의 성공사례를 홍보하도록 함

- <해당 사업 개선안>
- 농업인 대학교육에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이 원하는 품목에 대한 전문성 수준이나 경영관련 지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토대로 품목별, 수준별, 교육시간 및 기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요청됨. 도한 품목별 성별분리가 드러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전략도 필요함
- 농업인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 연 250만원의 소득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 추진되어야 함. 농업인 대학교육이 놓아 수입으로 직결되며 여성의 성공사례를 홍보하도록 함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1,395백만원	1,640백만원	2,050백만원
여성(비율)	412백만원(29.5%)	594백만원(36.2%)	726백만원(35.5%)
남성(비율)	938백만원(70.5%)	1,046백만원(63.8%)	1,324백만원(64.5%)

- 참여인원 대비 예산사용의 성별격차는 나타나지 않음

- <해당 사업 개선안>

- 품목별 과정의 성별참여현황과 예산소요액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품목별 과정의 교육을 위한 예산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목별로 성별참여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6.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교육지침에 남녀공동참여 및 양성평등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농업인 대학의 경우 전문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농업인 대상의 교육과정별 남녀 공동참여를 지침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여성참여율이 낮은 교육에는 여성참여가 가점제를 실시 ○ 농업인 대학교육에 일부품목교육에는 여성만 참여하도록 지침에 제시
7.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대학교육의 성과 홍보를 위한 별도의 홍보 예산편성(여성농업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적극 홍보) ○ 농업인 대학교육에 일부품목교육에는 여성만 참여하는 과정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 편성
8. 사업내용 ·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대학에 대한 요구도 조사 ○ 농업인 대학교육의 성과평가 조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 ○ 성별통계 양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신청서, 성과조사 결과 등에 대한 통계 ○ 홍보를 위한 여성농업인 성공사례 발굴 및 여성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수립 운영 등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농촌진흥청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작성 사례】

보건복지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사업명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성명/전화번호 000		
	담당자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성명/전화번호 000		
붙임 자료	• 중앙행정기관 :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세출예산사업설명서			
단계	세부 항목		해당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 외 사 업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 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단계	대 상 사 업	□ 시설설치 · 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 사업명(관리과제명)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I. 개요

사업 목적

- 중증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능력과 적응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신규 일자리의 발굴, 보급 및 직업안정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도모

추진 근거

- 장애인 복지법 21조(직업)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직업재활훈련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국고 100%)
- 사업규모 : 사업수행기관 188개소, 전문인력 346명, 서비스제공건수 113,500건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1년(A)	2012년(B)	증감(B-A)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6,664	16,664	-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① 성별 요구도

* 사업의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①~③)은 통합 작성 가능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장애인의 성별현황
 - 교육수준이 낮음(무학 여성 36.6% 남성 12.1%)
 - 여성장애인은 가사, 육아의 부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늦게 나타남(40대초반에 저점)
 -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어려움
- 중증장애인은 독자적 생활이 어려우며 중복장애인 경우가 많음
 - 1~3급장애인은 여성 378,713명(39.6%) 남성 577,863명(60.4%)
 -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4.5%, 중증장애여성은 전체 장애인의 13.8%
- <해당 사업 개선안>
- 사업계획 수립 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사전 조사
 - 학력별 장애유형별 성별현황
 - 학력별 업종별 성별현황
 - 희망직종별 성별현황 등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여성장애인은 취업이 어려움
 - 저숙련 저임금의 하층노동시장에 집중됨.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종사자
 - 고용안정성도 떨어져 정규직은 33%(전체 여성 약 50%)

- 장애인 취업자의 월평균 수입
 - 여성 59.3만원, 남성 135.6만원(43.7만원 격차)
 -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은 낮은 수입, 업무과다, 직무관련능력 부족 등
- 장애 후 직업훈련
 - 장애발생 후 직업훈련 참여비율이 남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은 동일함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거나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
- 재가 장애인 성별희망업종
 - 남성 : 단순노무직 근로자 22%,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20.7%, 기능원 및 기능근로자 16.2%, 농어업숙련근로자 14.2%, 사무직원, 기계조작, 기술공 등
 - 여성 : 단순노무직 근로자 31.1%,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27%, 농어업숙련근로자 15.5%, 니은원 및 기능근로자 8.3%, 사무직원, 기술공 등
 - => 단순노무직을 선택한 것은 신체적 취약성을 지닌 장애인이 희망한다기 보다 교육 및 경제적 열악함으로 인한 선택임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해당 사업 개선안>
-

②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2010년	2011년
전체	5,500명	5,700명
여성(비율)	2,206명(40.1%)	2,394명(42.0%)
남성(비율)	3,294명(59.9%)	3,306명(58.0%)

* 자료자료/단위는 2011년, 2012년 사업수혜 작성

-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참여자 성별현황
 - 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명이 취업(여 37.6%)
 - 지원고용서비스는 사업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22명(여 29.7%)이며 취업한 798명 가운데 여성은 222명(363명 훈련, 취업률 61.2%) 남성취업률 67.1%로 남성의 훈련비율과 취업률이 높음
 - 직업훈련서비스는 기능계열훈련 여성참여율 17.7%이나 취업률은 85%(남 82%). 의상, 에니메이션 등은 여성비율 높으나 훈련인원이 적음
-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고용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선호직종의 직업훈련기회가 적음

□ <해당 사업 개선안>

- 여성선호가 높은 분야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훈련인원을 확대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 사업명 및 예산 규모 기재

	2010년	2011년
전체	16,644백만원	16,644백만원
여성(비율)	6,682백만원 40.1(%)	6,999백만원 42.0(%)
남성(비율)	9,982백만원 59.9(%)	9,665백만원 58.0(%)

- 직업능력개발서비스에서 직업훈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능훈련에 여성참여율은 23.1% 재활프로그램은 37.4%임. 재활프로그램의 경우 소모품 등 예산이 거의 필요 없어 여성참여율이 높아도 소요예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사업 개선안>

- 여성이 직업훈련(기능훈련)에 적극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6.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7.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직업훈련(기능훈련)에 적극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 의상, 애니메이션, 외식산업 분야 등
8.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와 규정, 위탁기관 관리지침 등 관리기준에 사업운영기관의 성별수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항 포함. - 여성 장애인 우선선발 - 사업운영기관 평가기준에 여성지원을 여성지원을 차등반영(현재 여성비율 40% 이상에 1점 산정하고 있으나 적용가능성 거의 없음) - 여성연수생 비율이 증가한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 사업에 대한 성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별 직종구분 성별현황 - 장애유형별 직종구분 성별현황 - 주관기관별 연수생 선정위원 성별현황 - 지원자 및 참여자 학교급별 직종별 성별현황 - 사업종료 후 취업여부(정규직 여부, 임금) 성별현황 ○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직접 홍보(방문, e-mail 등) ○ 사업 수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선호가 높은 분야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훈련인원을 확대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보건복지부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작성 사례】

고용노동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사업명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소관 부서	소관 부서	부서명: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000
	작성자	부서명: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000
붙임 자료	• 중앙행정기관 :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세출예산사업설명서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결과
1단계	제 외 사 업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 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시설설치 · 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단계	대 상 사 업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연계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 사업명(관리과제명) :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 연계강화

I. 개요

□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인턴쉽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 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흡수력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층을 유인하기 위한 중견기업 지원
-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여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창직·창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실업해소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시행형태 : 민간위탁
- 지원조건 : 만 15세~29세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6개 월간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한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의 경우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월 65만원 추가지원.
창직인턴의 경우 창직·창업 교육훈련 및 컨설팅 제공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1년(A)	2012년(B)	증감(B-A)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45,605	153,861	8,256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① 성별 요구도

* 사업의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①~③)은 통합 작성 가능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학교급별, 성별진로현황(표1)

- 진학자의 경우 여성의 진학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고학력 여성비율증가 고학력여성의 증가로 취업희망여성 증가
- 미취업자의 경우 고졸의 경우 남성이 높으며(17%)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경우 여성 미취업비율이 5%-23%까지 높음

○ 계열별 성별현황(표 2)

- 공학계열은 남성이 40% 높고, 교육계열은 여성이 크게 높음.
- 인문, 사회, 의약, 예체능계열은 여성이 약간 높으나 자연계열의 경우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남성비율이 높음
=> 중소기업 업종의 경우 공학이나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인턴 사업 참여가능성의 성별격차 예상됨

○ 사업신청자의 학력별 성별현황(표3)

- 신청자의 성별비율은 여성 35%, 신청자 전체에서 초대졸이상 남성 44.9%. 초대졸이상 여성 28.2%, 고졸남성 20.1%, 고졸여성 6.8%임

□ <해당 사업 개선안>

○ 사업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에 대한사전조사

- 학력별 계열별 미취업자의 성별현황
- 중소기업 업종별 인력의 성별현황
- 성장동력산업과 중소기업 업종과의 연계성 및 인턴사업과의 연계성 등
- 중소기업인력의 성별선후도 및 원인조사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학교급별, 계열별 취업자의 성별현황(표 4)
 - 전문대 졸의 경우 여성 취업율이 낮지만 사회, 교육, 의약계열에서 높은편임. 대졸의 경우 전제비율에서 남성이 높지만 계열별로 보면 공학계열 이외에서는 여성비율이 약간씩 높음. 대학원 졸업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남성비율이 높음
=>공학계열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에서도 기업선호분야가 유사
- 중소기업 업종별 임금의 성별현황
 - 중소기업 업종 가운데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운수업 등의 순으로 인원이 많으며 여성비율이 높은 업종은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시설관리 등으로 나타남.
 - 임금이 높은 업종은 출판 및 영상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며 임금성별격차가 큼. 숙박 및 음식업, 보건업, 운수업 등은 성별임금격차가 적은 직종이나 전체임금이 낮음
=>여성은 전체규모가 적고 임금이 낮은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예측됨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해당 사업 개선안>
-

②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2010년	2011년
전체	26,390명	15,640명
여성(비율)	10,240명 38.8(%)	5,670명 36.3(%)
남성(비율)	16,150명 61.2(%)	9,970명 63.7(%)

* 자료자치단체는 2011년 2012년 사업수혜 작성

□ 사업참여자의 성별현황(표 5)

- 사업참여자, 수료자, 정규직 취업자의 학력별 성별현황
 - 고졸자 선발비율이 높으며 대졸자 선발율의 여성비율 낮음
 - 수료비율은 대졸남성이 가장 높고 고졸남성이 가장 낮음. 미수료 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이외에 다른 이유는 파악 불가
 - 정규직 전환율은 고졸여성이 가장 낮고 대졸남성이 가장 높음
 - => 대졸여성의 선발율이 낮고 정규직 전환에서는 고졸여성이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대졸여성은 취업기회 차단, 고졸여성은 직업안정성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 참여업종별 성별현황(표 6)

- 참여기업의 업종 : 제조업 5,219개, 출판영상 2,132개로 기업의 수가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72개, 보건업 228개로 의 참여기업이 적음.
- 참여자 업종 : 제조업(44%), 출판영상(16.2%)의 순이며 숙박 및 음식(1%), 보건업(1.2%)로 참여인원이 적음. 여성참여율이 높은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 시설관리 등은 전체 인원이 적은 업종임.
- =>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이 높은 업종은 사업참여인원이 적고 기업규모가 적으며, 가사노동 및 보살핌 노동이 사회화된 분야로 임금이 적은 직종임

□ <해당 사업 개선안>

- 여성인력이 많은 전공분야의 중소기업업종(미용, 보육, 복지, 식품 등) 발굴
- 여성인력이 많은 업종의 기업이 중소기업인턴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홍보 강화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 사업명 및 예산 규모 기재

	2010년	2011년
전체	106,548백만원	145,605백만원
여성(비율)	35,267백만원 33.1(%)	52,563백만원 36.1(%)
남성(비율)	71,281백만원 66.9(%)	93,042백만원 63.9(%)

- 예산집행의 성별격차와 참여인원의 성별비율과 다른것은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에 비례해 월 8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임금이 높은 업종에 남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에게 지급되는 총비용이 인원비율과 상이함. 또한 중도탈락 등 인턴지속기간 등도 요인이 됨
- 인턴지속기간, 학력별 업종별 임금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지 않아 자세한 분석 불가

□ <해당 사업 개선안>

- 중소기업 인력선호도의 원인을 파악하여 훈련 프로그램 제공(훈련프로그램 개발 예산 배정)
-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여성이 많이 진출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운영기관에 인턴인원과 예산을 더 많이 배정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6.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7.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적합업종 발굴 및 괜찮은 일자리에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 사업운영기관 선정시 여성참여율이 높은 기업에 인턴채용을 계획하는 운영기관에 우선적 예산 배분
8. 사업내용 ·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와 규정, 위탁기관 관리지침 등 관리기준에 사업운영기관의 성별수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기관 평가시 여성선발비율에 대한 기산점 부여 - 사업운영기관 평가시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등에 대한 성별현황을 평가기준에 포함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성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별 업종별 성별참여현황과 임금현황 - 운영기관별 지원기업 선정위원회와 인턴선발 위원회의 성별현황 - 학력별 업종별 성별참여현황과 임금 현황 - 정규직 전환자의 업종별 성별현황과 고용유지를 업종별 성별현황 - 기업규모별 업종별 성별참여현황과 임금현황 등 ○ 여성적합업종 발굴 및 괜찮은 일자리에 여성 참여 확대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력이 많이 육성되어 있는 업종발굴 - 국가전략사업 가운데에는 ET 분야에 육성된 여성인력이 많으나 여성인력활용이 저조하므로 관련기업 발굴 - 여성사업주 기업이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발굴 -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기업이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 유도 -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등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은 업종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고학력 여성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처를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전공자가 많거나 여성인력이 많은 조경학, 도시공학, 에너지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식품학, 보건 의료 등의 분야의 기업을 지원. 여성비율이 높은 업종 교육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등 교육관련 업종 등에 속하는 기업 ○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많은 학교나 학과 방문, 여성관련 단체를 통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가 있는 여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기관, 청소년쉼터 운영기관 등에 청년취업인턴 사업에 참여하도록 홍보 강화 - 취업포털사이트, 고용센터 등에 청년취업인턴 사업 홍보 강화 -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업종의 기업에 적극 홍보 ○ 정규직 전환 및 고용유지를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전환기능성이 높은 30~99인 규모의 기업에 대한 집중적 관리필요 - 여성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p>세제혜택 등 정부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사업주의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을 통한 여성고용확대 및 출산, 육아,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여성선호도가 낮은 업종의 여성친화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접근성 제고
<input type="checkbox"/>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부서장	성 명: _____ /직급: _____ 전화번호: _____
담당자	성 명: _____ /직급: _____ 전화번호: _____

<첨부>

<표1> 졸업자의 학교급별 성별 진로 현황('10년)

(단위 : 명, %, %)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체 졸업자	301,274 (47.6) 100	332,265 (52.4) 100	109,314 (57.5) 100	80,719 (42.5) 100	133,973 (47.9) 100	145,630 (52.1) 100	41,302 (47.0) 100	46,568 (53.0) 100
진학자	242,587 (48.5) 80.5	257,695 (51.5) 77.6	3,635 (52.5) 3.3	3,294 (47.5) 4.1	10,537 (43.2) 7.8	13,844 (56.8) 9.5	1,787 (42.1) 4.3	2,455 (57.9) 5.3
취업자	17,403 (50.9) 5.8	16,779 (49.1) 5	56,462 (57.8) 51.7	41,255 (42.2) 51.1	57,435 (44.5) 42.9	71,574 (55.5) 49.1	26,942 (42.7) 65.2	36,188 (57.3) 77.7
미취업자	41,284 (42.3) 13.7	56,386 (57.7) 17	49,217 (58.8) 45	34,495 (41.2) 42.7	66,001 (52.6) 49.3	59,462 (47.4) 40.8	12,573 (61.6) 30.4	7,844 (38.4) 16.8
입대자	0 (0.0) 0	1,405 (100.0) 0.4	0 (0.0) 0	1,675 (100.0) 2.1	0 (0.0) 0	750 (100.0) 0.5	0 (0.0) 0	81 (100.0) 0.2
취업률	29.7	22.9	53.4	54.5	46.5	54.6	68.2	82.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 미취업자 = 졸업자-취업자-진학자-입대자,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x100

()안의 수치는 남녀비율을 의미함.

() 밑에 제시된 수치는 동일 성별내에서 진학자, 취업자, 미취업자 비율을 의미함.

- '10년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의 성별현황을 보면 고졸의 경우 여성취업자 비율이 약간 높으며 전문대는 취업자 성별비율은 차이가 없지만 미취업자 비율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학교와 대학원의 경우 취업자 비율이 남성이 높으며 미취업자 비율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볼 때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남

<표2>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성별 현황('10년)

(단위 : %)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체	100 (304,846명)	100 (462,241명)	100 (778,186명)	100 (1,250,655명)	100 (152,367명)	100 (164,266명)
인문계열	5.2	2.3	19.2	9.4	14.2	12.9
사회계열	30.9	21.1	30.9	29.9	22.1	29.7
교육계열	9.2	0.3	6.3	2.9	30.4	10.4
공학계열	6.6	46.7	9.5	36.2	4.6	24.4
자연계열	6.7	7.1	13.8	10.9	7.7	8.4
의약계열	20.7	8.2	5.8	2.6	11.0	9.0
예체능계열	20.7	14.3	14.5	8.1	9.9	5.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전문대의 경우 공학계열에서 남성비율이 40%이상 높으며 대학의 경우 사회계열은 성별차이가 거의 없고 공학계열은 남성비율이 크게 높으며 이외의 계열에서는 여성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학원의 경우 인문, 의약, 예체능 계열은 여성비율이 약간 높고 교육계열은 여성비율이 크게 높으며 공학계열은 남성비율이 크게 높고 사회, 자연계열은 남성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동일계열 내에서도 세부전공별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차이가 있음.

<표3>사업 신청자의 성별·학력별 현황('10년)

(단위: 명, %)

	전체	여성			남성	고졸	초대졸 이상
			고졸	초대졸 이상			
사업 신청자(A)	44,931 (100)	15,726 (35.0)	3,045 (19.4) 6.8	12,681 (80.6) 28.2	29,205 (65.0)	9,023 (30.9) 20.1	20,182 (69.1) 44.9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주 : '10년 사업 신청자는 61,142명이나 이 중 16,211명은 전산정보 등 미입력자로 파악 곤란

() 아래 수치는 여성과 남성 전체 가운데 성별 학력별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임

- 사업신청자 성별현황 : 사업 신청자의 학력별 현황을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대졸이상 비율이 각각 80.6%, 69.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에서도 여성 78.2%, 남성 66.4%로 대졸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남. 사업신청자의 학력별 성별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우 고졸보다 대졸이상이 훨씬 많으며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 비하여 대졸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본 사업에 참여대상이 청년실업자임을 감안할 때 고학력 여성의 신청율이 높다는 것은 일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하고자 하는 요구는 높으나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줌.

<표4> 학교급별-계열별 졸업자 취업률의 성별 현황('10년)

(단위 : 명, %)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체 졸업자	301,274 (47.6)	332,265 (52.4)	109,314 (57.5)	80,719 (42.5)	133,973 (47.9)	145,630 (52.1)	41,302 (47.0)	46,568 (53.0)	
전체	17,403 (29.7)	16,779 (22.9)							
(일반계)	1,956 (5.2)	2,310 (4.6)	56,462 (53.4)	41,255 (54.5)	57,435 (46.5)	71,574 (54.6)	26,942 100 (68.2)	36,188 (82.2)	
(실업계)	15,447 (72.8)	14,469 (63.0)							
실업계	인문 계열	378 (37.0)	215 (22.6)	2,560 (45.1) 4.5	895 (47.9) 2.2	9,310 (41.6) 16.2	4,594 (43.0) 6.4	2,732 (58.7) 10.1	3,805 (78.3) 10.5
	사회 계열	5,103 (76.3)	821 (55.2)	21,235 (55.4) 37.6	10,308 (53.4) 25	18,484 (49.5) 32.2	20,440 (50.4) 28.6	6,293 (71.6) 23.4	11,341 (87.3) 31.3
	교육 계열	47 (58.8)	0 (0.0)	6,446 (72.8) 11.4	191 (60.8) 0.5	4,245 (38.8) 7.4	1,902 (37.7) 2.7	9,498 (73.0) 35.2	3,365 (81.9) 9.3
	공학 계열	6,895 (77.7)	11,622 (66.7)	3,528 (52.7) 6.2	19,911 (60.3) 48.3	6,241 (59.8) 10.9	29,986 (63.7) 41.9	1,362 (67.6) 5.1	10,140 (81.9) 28
	자연 계열	651 (62.5)	805 (61.5)	3,180 (45.2) 5.6	2,751 (50.2) 6.7	7,643 (47.1) 13.3	6,539 (52.1) 9.1	2,054 (60.4) 7.6	2,798 (72.3) 7.7
	의약 계열	87 (79.8)	17 (70.8)	12,765 (69.7) 22.6	3,532 (58.0) 8.6	5,713 (69.0) 9.9	3,816 (79.9) 5.3	3,345 (80.6) 12.4	3,642 (90.6) 10.1
	예체능 계열	2,286 (67.4)	989 (56.4)	6,748 (32.5) 11.9	3,667 (38.0) 8.9	5,799 (32.5) 10.1	4,297 (41.4) 6	1,658 (47.4) 6.2	1,097 (61.3) 3
	교육대(국립)					2,045 (52.3) 3.6	1,012 (51.8) 1.4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 ()안의 수치는 취업률로,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x100로 계산

() 밑에 제시된 수치는 동일 성별내에서 계열별 취업비율을 의미함

- 학교급별 계열별 졸업자 취업률은 전공계열별 성별현황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 취업자수를 보면 사회계열이 가장 많으며 이는 취업기관의 사무직 등에 사회계열 전공자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전문대 졸업자가 많아 임금의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추측됨. 남성의 경우는 대졸 공학계열 취업자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졸 사회계열, 전문대 공학계열의 순으로 나타남.

<표 5>사업 신청자·참여자·수료자·정규직 취업자의 성별·학력별 현황('10년)

(단위: 명, %)

	전체	여성	고졸	초대졸 이상	남성	고졸	초대졸 이상
사업 신청자(A)	44,931 (100)	15,726 (35.0)	3,045 (19.4) 6.8	12,681 (80.6) 28.2	29,205 (65.0)	9,023 (30.9) 20.1	20,182 (69.1) 44.9
사업 참여자(B)	30,939 (100)	10,240 (33.1)	2,230 (21.8) 7.2	8,010 (78.2) 25.9	20,699 (66.9)	6,950 (33.6) 22.5	13,749 (66.4) 44.4
사업 수료자(C)	21,129 (100)	7,021 (33.2)	1,293 (18.4) 6.1	5,728 (81.6) 27.1	14,108 (66.8)	4,017 (28.5) 19	10,091 (71.5) 47.8
정규직 취업자(D)	19,071 (100)	6,106 (32.0)	1,098 (18.0) 5.8	5,008 (82.0) 26.3	12,965 (68.0)	3,651 (28.2) 19.1	9,314 (71.8) 48.8
사업 선발율(B/A)	68.9	65.1	73.2	63.2	70.9	77.0	68.1
사업 수료자 비율(C/B)	68.3	68.6	58.0	71.5	68.2	57.8	73.4
정규직 전환 비율(D/C)	90.3	87.0	84.9	87.4	91.9	90.9	92.3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주 : '10년 사업 신청자는 61,142명이나 이 중 16,211명은 전산정보 등 미입력자로 파악 곤란

() 아래 수치는 여성과 남성 전체 가운데 성별 학력별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임

- 사업 참여자 선발의 성별현황 : 인턴으로 선발된 참여자의 학력별 성별현황을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고졸자가 대졸자 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대졸이상의 선발율에 성별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대졸여성의 사업참여기회가 남성보다 적어 사회에서의 일자리 참여기회의 차단으로 인한 여성의 요구가 인턴사업에서도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에 비하여 저학력자의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허용될 것으로 추측

- 사업 수료자의 성별현황 : 사업수료자의 학력별 성별현황을 보면 고졸남성이 가장 낮으며 대졸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수료여부에 대한 성별격차는 거의 없으며 미수료 사유에 대한 성별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인지적 해석이 불가함. 사업 미수료의 원인이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인 경우는 바람직하지만 사업자체의 불만 때문이라면 개선이 필요함.
- 정규직 전환의 성별현황 : 인턴참여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자의 학력별 성별현황을 보면 고졸여성이 가장 낮고 대졸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정규직 전환은 직업안정성을 나타내므로 정규직 전환비율이 고졸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사업을 통하여 저학력 여성의 직업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저학력 여성일자는 불안정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며, 대졸남성의 일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6>사업 참여자의 업종별 현황('10년)

(단위: 명, %, %)

업종	업체수	참여자		
		전체	여성	남성
합계	13,437	30,939 (100.0)	10,240 (33.1)	20,699 (66.9)
제조업*	5,219	13,623 (44.0)	3,011 (22.1) 9.7	10,612 (77.9) 34.3
건설업, 운수업	926	1,895 (6.1)	668 (35.3) 2.1	1,227 (64.7) 4.0
도소매업	1,815	3,214 (10.4)	1,290 (40.1) 4.2	1,924 (59.9) 6.2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2,132	5,016 (16.2)	1,832 (36.5) 5.9	3,184 (63.5) 1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83	3,047 (9.8)	1,373 (45.1) 4.4	1,674 (54.9) 5.4
숙박 및 음식점업	72	315 (1.0)	159 (50.5) 0.5	156 (49.5) 0.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497	1,315 (4.3)	661 (50.3) 2.1	654 (49.7) 2.1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228	381 (1.2)	241 (63.3) 0.7	140 (36.7) 0.4
기타	965	2,133 (6.9)	1,005 (47.1) 3.2	1,128 (52.9) 3.6

* 제조업의 중분류 항목(24개)은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코크스·연탄 및 석유제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으로 구성

** 마지막 수치는 업종별성별 교차요인 비율임. () 아래 수치는 성별참여자 가운데 업종별 비율을 나타냄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이 높은 업종은 사업참여자의 비율이 적고 기업규모가 적으며 가사 및 보살핌에 관련된 노동이 사회화된 분야로 임금이 적은 직종임. 여성의 경제적 지위확보에 기여하기 어려움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1. 대상과제 선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

Step 1	분석대상 선정 : 체크리스트 작성
--------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시행령 2조 1항 및 4조)은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 및 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시행령 4조)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분석평가 대상기준을 보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하며 인적대상사업, 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분석평가 대상이 된다. 분석평가 대상기준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기준 세부항목

세부항목	
제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시설설치 ·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1)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사업명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붙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 해당 사업의 계획 			
단계	세부 항목			해당 여부
1단계	제 외 사 업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단계	대 상 사 업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대상사업이 제외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제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제외사업이 아닌 경우 ‘아니오’에 체크한다.
 - 제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고, 종료한다.
-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하고, ‘대상사업’의 3가지 내용에 각각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 사업의 내용을 인적대상, 시설설치·개선, 그 외의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해당사항에 ‘예, 아니오’를 체크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2) 작성 실습

ooooo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사업명				
소관 부서	부서장 담당자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흥○○/031-299-0000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흥○○/031-299-0000		
붙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훈련사업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단계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외 사업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2단계 대상 사업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Step 2**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서의 작성은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작성하며 대상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한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을 위하여 사업의 성별요구도와 성별형평성을 파악한다.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법령, 예산, 사업내용과 수행방식에 대한 반영계획을 제시한다.

<표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③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④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⑤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⑥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⑦ 법령 반영 계획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⑧ 예산 반영 계획
	⑨ 사업내용 ·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1)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사업명 :

I. 개요

□ 사업 목적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

□ 추진 근거

-

□ 주요 사업 내용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1년(A)	2012년(B)	증감(B-A)

* 자/빙자/단체는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작성

(2) 분석평가서 작성 방법

I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① 성별 요구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은 ‘성별 요구도’에 대한 부분으로 3가지로 구성된다. 각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각각 성별 요구 차이가 있으면 ‘있음’으로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한다.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해당 계획 개선안〉

○

-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를 보여주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한다.

- 체크리스트 작성시 ‘불임자료’로 제시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나 연두업무보고 자료, 세출사업예산서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 <해당 계획 개선안>

○

-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를 보여주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진입장벽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한다.
- 체크리스트 작성시 ‘불임자료’로 제시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나 연두업무보고 자료, 세출사업예산서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해당 계획 개선안>

○

-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를 보여주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남녀의 신체적 차이(성별에 따른 질병률, 안전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한다.
- 체크리스트 작성시 ‘불임자료’로 제시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나 연두업무보고 자료, 세출사업예산서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 Point 】

❖ 성별 요구도는 사회문화적·경제적 위치, 신체적 차이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제시된 내용을 파악해 각각 성별에 따른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사회문화적 위치, 경제적 위치, 신체적 차이에 기반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성별 요구의 차이를 보여주는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해 제시한다. 단,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②~④)은 통합 작성이 가능하다.
- 대상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개선안 도출근거가 성별 요구도 분석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 관련 통계자료는 아래의 사이트나 각 계획의 수립 부처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 관련 분야의 조사연구 등에 나타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기존의 행정통계나 설문조사 결과 등 이미 생산되어 사용 중인 통계자료를 활용 또는 재구성하여 성별통계를 생산 및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 통계청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통계자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http://gsis.kwdi.re.kr/>\) 활용](http://gsis.kwdi.re.kr/)

2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파악을 위하여 ‘성별 형평성’에 대한 사항을 분석한다.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여부에 대한 부분을 각각 ‘있음’, ‘없음’으로 파악해 표기한다.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2010년	2011년
전체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 <해당 계획 개선안>

○

-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사업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수혜발생을 의미한다.

5. 예산배분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 <해당 계획 개선안>

○

-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여 반영하도록 분석해야한다.
 -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배분을 의미한다.

【 Point 】

- ❖ 사업수혜와 예산에서의 성별특성 반영은 수혜도나 예산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편차가 있다.
 - 예산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 수립시 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모집단이 파악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성인지적 예산 수립의 방향을 제한하거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7. 법령 반영 계획	
8. 예산 반영 계획	
9. 사업내용 · 수행방식(기타 제도개선 포함) 등 반영 계획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은 3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분석내용을 토대로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각각 법령, 예산,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에 대해 어떠한 개선안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법, 시기, 절차등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한다.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은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토대로 작성한다.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_____ /직급: 전화번호: _____
담당자	성 명: _____ /직급: 전화번호: _____

- 소관 부서 및 연락처는 ‘기관/부서명’, ‘부서장’, ‘담당자’ 순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Step 4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후
--------	---------------

-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여성 가족부로부터 받으며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해당부서는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분석평가 결과 종합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마무리된다.
 - 각 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실습

□ 워크시트 활용하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하기	
<p>■ 실습준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 ~ 5명으로 조를 구성. 2. 조장(발표자), 기록자 선정. 	
<p>■ 실습시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비된 자료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실습을 위한 사업관련 자료, 각종 통계 등 2. 분석대상 사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 파악하기 3. 성별 요구도 파악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내용과 사업의 성별요구도 파악. 2) 사회문화적 위치의 성별차이, 경제적 위치의 성별차이, 신체적 차이 파악 3) 토론 시간은 10분 	
<p>■ 해당대상사업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젠더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p>	
<p>■ 젠더이슈를 확인하려면 어떤 관련 현황과 통계자료가 필요할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p>■ 이러한 성별요구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의 차이 	

4. 성별 형평성 파악하기

- 1) 사업관련 자료(성과관리기본계획, 연두업무보고자료,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통해 성별형평성 확인하기.
- 2) 사업수혜의 성별 형평성과 예산배분의 성별 형평성 찾기.
- 3) 토론 시간 10분

■ 분석대상사업에서 성별특성에 따른 수혜도가 반영되고 있는가?

■ (제시된 경우) 성별특성에 따른 수혜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

▶ 통계나 수치를 통한 제시는 가능한지 확인하기.

성별에 따른 구분은 이루어졌나?

▶ 성별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고려, 개선되어야 하는가?

■ (제시되지 않은 경우) 성별특성에 따른 수혜는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가?

■ 분석대상사업에서 성별특성에 따른 예산배분이 반영되고 있는가?

5.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작성하기

- 1) 위의 분석 3 ~ 5번을 참고로 작성하는 부분이다. 다시 한 번 검토할 것.
- 2) 아래의 표를 따라 법령, 예산, 사업내용 · 수행방식의 개선계획을 찾아보기.
- 3)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논의하신 내용은 발표, 점검.

■ 법령, 예산,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에서의 어떤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 위와 같은 단계를 통해 정책이 실행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보증 자료】

법무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사업명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소관 부서	소관 부서	부서명: 법무부 소년과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작성자	부서명: 법무부 소년과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불임 자료	· 중앙행정기관 :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결과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
1단계	제외 사업 대상 사업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비행예방기능을 강화하여 비행원인 조기진단, 선도하며, 대안교육, 상담조사 및 보호자교육을 확대, 지역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비행예방센터를 위기청소년 교육거점으로 운영 ■ 소년원생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소년원생의 사회복귀역량 배양 및 재범방지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 · 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소년원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 사업명(관리과제명) :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소년원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

I. 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비행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 ·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의 비행원인을 조기 진단 · 선도
- 위기 ·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상담조사 및 보호자교육 등 비행 예방교육 확대,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비행예방센터를 위기청소년 교육거점으로 운영
- 소년원생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소년원생의 사회복귀역량 배양 및 재범방지

□ 추진 근거

- 「소년법」 제32조의2 · 제49조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2조의2 · 제50조의 2에 근거하여 소년법에 대한 비행원인진단 및 부적응 학생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기능 수행

□ 주요 사업 내용

-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위기청소년과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심리상담, 법교육 등 비행예방교육 강화 및 사법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비행원인진단 강화
- 불구속 소년보호사건 대상자 상담조사, 위탁소년 분류심사 등 비행원인진단 확대 실시
- 보호처분 대상자 보호자 교육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사회환경의 변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시행으로 내실 있는 교육 실시 및 정보화시스템 구현
- 사회정책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및 외부지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1년(A)	2012년(B)	증감(B-A)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소년원교육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① 성별 요구도

* 사업의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①~③)은 통합 작성 가능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최근 3년간 비행유형별 소년원생 신수용 현황을 보면, 강간, 폭력행위 등에 대한 비행이 증가. 특히 남자의 경우 강간은 2009년 181명에서 2011년 37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2009년 204명에서 2010년 222명, 2011년 211명으로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2009년 2337명, 2011년 2404명, 2011년 2534명으로 지속적으로 소년원생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09년 438명, 2010년 418명, 2011년 426명으로, 남녀별 수용인원은 2011년 기준 남성 약 85.6%, 여성 14.4% 정도로 나타나 여성의 범죄 인한 수용인원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여성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청소년이 범죄로 인해 소년원에 수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기광도(2011)의 가정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분석 연구에 의하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이 비해 비행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애착,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정도, 처벌의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행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김정규(2009)의 청소년비행 원인분석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 비행원인에 있어 남녀 별 차이가 있음.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가부장적 성향이 강할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09) 결과에 의하면, 비행유형별, 남녀별 기간에 따라 비행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재학기간동안 폭력 가해 경험에 있어서 10명 중 2명이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스·본드·마약류 흡입경험은 기간에 상관없이 남학생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흡연 경험은 남녀별 기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데 일년에 1~2번, 한달에 한번 등은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으나 1주일에 1번, 지속적으로는 남학생이 음주,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무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각 프로그램별 참여율(2011)을 보면, 상담조사 남 4314명, 여 982명, 대안교육 남 4945명, 여 1667명, 심리상담 남 5619명, 여 2174명으로 나타남
- 소년원 교육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료인원 현황(2011)을 보면, 남성은 카일렉트로닉스, 자동화용접, 중장비운전, 건축설비, 측량, 사진영상은 수료자가 모두 남성이며, 피부미용, 텔레마케팅은 수료자가 모두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훈련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남녀별 선호도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사업 개선안>

- 사업계획 시 비행예방교육, 비행원인진단 관련 통계자료와 매년 실시한 대안교육, 상담수료자를 성별통계를 바탕으로 비행원인 및 폭력정도, 기간 등에 대한 남녀별 차이가 있으므로 비행예방교육 등 프로그램 구성 시 성별 특성 및 요구도 반영 필요
- 비행 예방 프로그램 구성 시 범죄 지속 기간, 범죄 유형 등 남녀별 차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회기 등 반영 필요
- 특히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관계가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 교육 시 보호자 성별 파악 및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프로그램 구성 필요
- 소년원 교육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 특정 성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성별 요구도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해당 사업 개선안>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구성이 자동화용접, 중장비운전, 건축설비 등 남성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건축설비(남 28명, 여 0명), 자동화 용접(남 45명, 여 0명), 건축설비(남 28명, 여 0명), 피부미용(남 0명, 여 26명), 텔레마케팅(남 0명, 여 26명)
- <해당 사업 개선안>
- 직업 훈련프로그램의 성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필요

2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상담조사	대안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보호자교육
전체	5,296명	6,612	7,793	
여성(비율)	982명	1,667	2,174	
남성(비율)	4,314명	4,945	5,619	7,498

-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상담조사, 대안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수혜자 성비는 남성 14,878명, 여성 4,823명으로 남성 비율이 매우 높음.
- 여성수혜비율이 낮은 원인은 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비행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 소년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의 각 과정별 수료 인원을 보면, 건축설비(남 28명, 여 0명), 자동화 용접(남 45명, 여 0명), 건축설비(남 28명, 여 0명), 피부미용(남 0명, 여 26명), 텔레마케팅(남 0명, 여 26명), 헤어디자인(남 55명, 여 24명), 제과제빵(남 68명, 여 23명) 등으로 역시 남성의 수혜율이 높으며, 프로그램의 성역할 고정화가 나타남.

□ <해당 사업 개선안>

- 실질적인 비행 예방과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현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비행 예방 프로그램 및 훈련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여성비율이 낮은 교육과정에의 여성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필요.
- 남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직업 훈련과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남녀의 직업 선호를 반영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은 사회적 기업들이 펀드를 만들어 소년범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함.
- 직업 훈련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 즉 미국의 IAP(Intensive Aftercare Program)이 좋은 예로, 이 프로그램은 교사 등 멘토가 소년원 출원을 한달 앞둔 소년원생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귀향해 돋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지역마다 상담센터를 배치하여 소년원생의 사회적응을 도움.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일반적으로 청소년 위기 및 비행 관련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원인으로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갈등,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허용적 태도, 낮은 학업 성취도, 부모의 낮은 참여 등을 비행원인으로 보고하고 있음.
-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현황을 보면, 부산, 광주, 청주, 창원, 안산, 대전 등 6곳에서 운영되고 있음.
- 재범 방지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소년원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소년원 교사 1인당 관리하는 학생의 수가 많으므로 효과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우리나라 소년원 교사 1인당 관리하는 학생 숫자는 5.3명,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1명 안팎임(중앙일보, 2011. 3. 30일자)

□ <해당 사업 개선안>

- 청소년 비행은 부모 등 가정의 영향이 크므로 보호자 교육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고, 효과적인 가족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필요
-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지역별, 성별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 소년원 교사 수 확대를 위한 예산 배분뿐만 아니라 교사 및 비행예방센터 담당 직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예산 확보 필요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6.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없음
7.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및 비행초기 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상담조사 등 비행예방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남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 사업이므로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과 성별에 따른 비행유형을 고려한 예산계획 필요. 실질적인 비행 예방과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현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비행 예방 프로그램 및 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 계획 필요. 소년원 교사 확충과 교사 및 비행예방센터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 편성 필요 비행예방센터의 지역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센터 운영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센터 확충 예산 필요
8. 사업내용 ·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심리상담(6,819명), 대안교육(12,541명)은 비행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여학생 이가해자가 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비행 예방사업은 피해, 가해자 및 남녀 동시 대상사업 이므로 남녀 성별 영향을 고려한 정책 필요. 보호처분 보호자 교육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가해 학생 가족의 성별 참여도 및 만족도 분석 필요 또한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 등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간 친밀감 형성과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 가족상담을 활성화하여 가족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 이와함께 보호자 및 가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강화 필요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성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 필요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법무부 / 소년과
부서장	성 명: _____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_____ /직급: 전화번호:

【보증 자료】

서울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사업명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2009)			
소관 부서	소관 부서	부서명: ○○구청	성명/전화번호	
	작성자	부서명: 산업환경과	성명/전화번호	
붙임 자료	· 해당사업 계획 및 사업결과보고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결과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
1단계 제외사업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2단계 대상사업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 · 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중소기업체의 지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육성기 금 조기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18)

- 사업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I. 개 요

사업 목적

-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의욕 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조기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00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주요 사업 내용

-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육성기금 조기지원
- 신청업체에 지원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지원(연리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대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년(A)	20**년(B)	증감(B-A)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2,037	2,000	△37

18) 본 사례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의한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재작성함.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① 성별 요구도

※ 사업의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①~③)은 통합 작성 가능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관내중소기업인 170명의 성별비율은 남성 78%, 여성 22%로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지원 업체 총 26개 업체 중 여성기업은 3개소(11.5%), 남성기업은 23개소(88.5%)로 모집단인 관내 중소기업체의 성비 여성 22%, 남성 78%와 비교하였을 때 여성기업인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남성기업인과 여성기업인 모두 사업장 운영 시 경영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경영자금에 대한 어려움은 여성기업인이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여성기업의기금지원 혜택이 낮은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남성기업인은 사업홍보에서 여성기업인보다 높은 비율로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사업홍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 개선안>

- 여성기업인의 사업참여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절차 간소화, 지원 시기 조정, 신청서류 및 보고서류 작성 컨설팅 등이 필요함
- 여성기업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의 다양화하고 ‘여성기업인을 위한 간담회’ 실시와 SMS 발송을 통한 홍보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용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항목당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점수를 매긴 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지원 순위를 결정. 평가항목은 용자지원, 기업형태, 지적재산권, 기업표창, 부실징후, 대출신청액, 종업원수, 매출액 등

- 평가항목 중 종업원수(배점 3점~10점)와 매출액(배점 2점~10점) 부분에 있어 남성기업인보다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종업원수와 매출액이 적은 여성기업인에게 불리한 항목
- 대출담보액 면에서 재산상의 명의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아 여성에게 불리함

□ <해당 사업 개선안>

-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개선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해당 사업 개선안>

-

②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있음	□ 없음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있음	□ 없음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20**년
전체	26개소
여성(비율)	3(12)개소(%)
남성(비율)	23(88)개소(%)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20**년 00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성별 예산배분 현황

00구 중소기업 구성		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실적		2008년 용자지원액
남성기업인	여성기업인	남성기업인	여성기업인	
78.2%	21.8%	84.8% (1,727 백만원)	15.2% (310 백만원)	2,037백만원

* 00구 내부자료(2008)

□ <해당 사업 개선안>

(단위: 백만원)

년도별	성별			대출금액	비고 (여성기업 대출액)
	남	여	계		
2010	000 (78.2%)	000 (21.8%)	000 (100%)	0000000	0000000 21.8%

- 관내 중소기업인의 성별비율과 신청자의 성별비율을 감안하여 모집단 성별비율 대비 참여자의 성별비율을 확보
- 여성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그 규모를 포함하면 여성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비율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6.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소상공인 및 여성 중소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 차년도 사업지침에 정책개선안에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7.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중소기업인의 성별비율과 신청자의 성별비율을 감안하여 모집단 성별비율 대비 참여자의 성별비율을 확보 ○ 여성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
8. 사업내용 ·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및 성인지력을 갖춘 위원 위촉 ○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중소기업/여성친화기업 가점제 시행 ○ 홍보방식 다양화 ○ 지표 검토 및 성별분리통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개발된 지표 검토 및 성별분리통계 생산

<input type="checkbox"/>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구청 / 산업환경과
부서장	성 명: _____ / 직급: _____ 전화번호: _____
담당자	성 명: _____ / 직급: _____ 전화번호: _____

1.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 ○○구 중소기업인 성별 현황

- ○○구상공회에 가입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집단인 중소기업인의 성별 분리 통계와 신청 및 지원대상의 대상인원 및 지원금액 등의 항목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현황 조사
- 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대상 모집단과 참여자의 성별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여성		남성		여성비율
	모집단	37(명)	모집단	133(명)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참여자 성별비율	참여자	3(명)	참여자	23(명)	11%
	참여비율	8.1(%)	참여비율	17.3(%)	-

- 모집단인 관내중소기업인 170명의 성별비율은 남성 78%, 여성 22%로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지원 업체 총 26개 업체 중 여성 기업은 3개소(11.5%), 남성기업은 23개소(88.5%)로 모집단인 관내 중소기업체의 성비 여성 22%, 남성 78%와 비교하였을 때 여성기업인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지원사업 개선 요구사항

- ○구에 등록된 중소기업인(남 30명, 여 20명)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남성기업인과 여성기업인 모두 사업장 운영 시 경영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경영자금에 대한 어려움은 여성기업인이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여성기업의 기금지원 혜택이 낮은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남성기업인은 사업홍보에서 여성기업인보다 높은 비율로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사업홍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별 중소기업 애로사항 >

구분	인력관리	경영자금	사업홍보	기타	합계
남성기업	20%	50%	23%	7%	100%
여성기업	20%	60%	10%	10%	100%

* ○ ○구 내부자료(20**)

- ○구에 등록된 중소기업인(남 30명, 여 20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지원금액의 상향조정 > 신청절차의 간소화 > 지원 시기 > 지원금 상환기간 연장 순서로 답하였고 남성 기업인의 경우 사후 관리 보고 간소화에 대한 개선도 희망하고 있었음

< 성별 중소기업융자지원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

구분	신청절차의 간소화	지원금액상향 조정	지원 시기	지원금 상환기간 연장	사후관리보고 간소화
남	18.5	59.3	11.1	7.4	3.4
녀	29.4	47.1	17.6	5.9	0.0

* ○ ○구 내부자료(20**)

▶ 정책결정 및 집행자의 성별현황

구 분	위 원 현 황				
	여성	남성	계	여성비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당연직(공무원)	0	3	3	0%
	위촉직(민간위원)	4	4	8	50%
	전 체	4	7	11	36%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총인원	33	1	5	15	6	2	4
여직원	14	0	0	7	4	1	2

* 도봉구 내부자료(2008)

- ○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심의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11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4명(36%)으로 구성되어있음
 - 당연직은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현재 남성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육성에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 8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여성위원으로(기업인, 주부환경연합회장, 동북여성민우회생활협동조합이사, 산돌여성모인대표) 구성되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인 산업환경과의 인력구성을 보면 33명 가운데 여성은 14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직에는 여성이 한명도 없으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자는 2명에 불과함

▶ 중소기업인 지원사업 홍보방법 현황

- 대상기업 개별안내,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시판이나 홍보물 등을 활용
 - 홈페이지나 홍보물,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는 남성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주위사람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용한 홍보방법과 성별참여자의 정보습득통로가 다르므로 여성기업인 대상의 홍보를 위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2.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응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항목당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점수를 매긴 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지원 순위를 결정. 평가항목은 응자지원, 기업형태, 지적재산권, 기업표창, 부실징후, 대출신청액, 종업원수, 매출액 등
- 평가항목 중 종업원수(배점 3점~10점)와 매출액(배점 2점~10점) 부분에 있어 남성기업인보다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종업원수와 매출액이 적은 여성기업인에게 불리한 항목
- 대출담보액 면에서 재산상의 명의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아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

<200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대상 업종별 성별현황>

구분	합계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합계	1,689	506	343	265	190	267	170
남성	1,232	286 (23.2%)	273 (22.2%)	213 (17.3%)	110 (8.9%)	228 (18.4%)	123 (10.0%)
여성	457	169 (36.9%)	70 (15.3%)	52 (11.4%)	80 (17.5%)	39 (8.6%)	47 (10.3%)

* ○○구 내부자료(20**)(○○구상공회 가입한 회원수 기준)

- 업종별 현황을 보면 여성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음식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고 교육 서비스업 분야가 다음으로 많으며 중소기업의 주를 이루는 제조업 분야는 8.6%에 그쳐 남성 제조업자의 수 18.4%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에서 종업원 수에서도 평균 5.2명으로 남성기업 종업원수 평균 13.7명에 비교하였을 때 규모면에서도 열악한 상황임

②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업 개선안
	해당 여부	근거	
4. 사업수혜의 성별 형평성	■ 있음 □ 없음		* 5. 예산배분의 성별 형평성과 동일
5. 예산배분의 성별 형평성	■ 있음 □ 없음	■ 최근 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실적 성별현황	예산 배분의 성별 현황을 볼 수 있는 통계 생산 및 활용 필요

4. 사업 수혜의 성별 형평성

5. 예산 배분의 성별 형평성

▶ 중소기업인 지원 예산 규모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

년도별	성별			대출금액	비고 (여성기업 대출액)
	남	여	계		
합계	125 (93%)	9 (7%)	134 (100%)	12,494	760(6%)
2004	31	2 (6%)	33	3,600	270(8%)
2005	21	2 (8%)	23	2,037	120(6%)
2006	24	0	24	2,396	0
2007	26	2 (7%)	28	2,424	60(3%)
2008	23	3 (12%)	26	2,037	310(15%)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지원 업체는 대부분이 남성 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참여율이 7%에 그치고 용자지원 금액도 6%에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정임

- 2004년과 2008년은 여성참여율 대비 예산 수혜율이 높지만 2006년에는 여성중소기업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의 부동산 보유현황, 기업의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담보력과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금액을 결정하므로 여성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임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6. 법령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소상공인 및 여성 중소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 차년도 사업지침에 정책개선안에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7.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중소기업인의 성별비율과 신청자의 성별비율을 감안하여 모집단 성별비율 대비 참여자의 성별비율 확보 ○ 여성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
8. 사업내용 ·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및 성인지력을 갖춘 위원 위촉 ○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중소기업/여성친화기업 가점제 시행 ○ 홍보방식 다양화 ○ 지표 검토 및 성별분리통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개발된 지표 검토 및 성별분리통계 생산

6. 법령 반영 계획

- 현재 중소기업자금지원의 일부로 시행중인 여성중소기업인 지원은 사업규모나 경쟁력이 낮은 여성들에게 불리하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아래와 같이 시행중이나 이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여성기업인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여성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간접지원하고 있음. 이는 사업규모가 적은 여성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원조건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조건은 연 3%,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이나, 여성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은 연 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어서 다소 불리한 조건임. 여성소상공인 창업강좌를 실시하여 150명의 창업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준비절차, 자금지원제도, 아이템 선정, 입지선정 및 마케팅 전략 등의 내용을 교육함

7. 예산 반영 계획

○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산편성

(단위: 백만원)

년도별	성별			대출금액	비고 (여성기업 대출액)
	남	여	계		
2010	000 (78.2%)	000 (21.8%)	000 (100%)	0000000	0000000 21.8%

- 관내 중소기업인의 성별비율과 신청자의 성별비율을 감안하여 모집단 성별 비율 대비 참여자의 성별비율을 확보하고자 함
 - : 응자금 상환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수입지출을 운용하고 응자규모를 결정하므로 예산편성은 지원가능한 기금액수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사업지침에 따른 선정기준에 기반한 우선순위에 따라 가용한 예산만큼 지원하는 상황임.
- 여성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그 규모를 포함하면 여성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비율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것임
- 여성중소기업인과 더불어 여성친화적 기업에 대한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예산의 성별비율은 달라짐

8.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 빛 성인지력을 갖춘 위원 위촉

-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은 36%로 신규위원회 위촉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 여성위원을 40%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성인지력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하여 양성평등 정책 수행에 기여할 수 있게 함

▶ 여성임원비율 및 여직원 비율에 따른 가점제 실시

-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에 일정비율(업종에 따라 기준설정 필요)을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임원비율을 점검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여성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함. 자금지원기업의 성과평가 및 향후 자금지원시 우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

▶ 성별분리통계 생산 방안

-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위하여 기금운용현황, 지원실적 총괄표에 성별구분 항목을 삽입

<기금운용현황 : 협행>

기금총액		대출금액현황		통장잔액	
출연금	이자수입	총계	업체수	대출금액	

<기금운용현황 : 개선안>

기금총액			대출금액현황				통장잔액	
출연금	이자수입	총계	업체수		대출금액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대장에 성별 구분항목을 삽입

< 중소기업육성기금 유통신체서 접수대장: 협행>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신청서 접수대장: 개선안>

연번	접수 일자	업체명	등록 여부	대표자		소재지	업종	대출 신청액	거래 은행	연락처	비고
				성명	성별						

- 기금심의 결과를 기입하는 항목에 성별구분을 할 수 있는 항목 삽입

<심의결과 : 현행>

신청현황		지원결정		비고
업체수	신청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심의결과 : 개선안>

신청현황				지원결정				비고
업체수		신청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신청서 양식에 현재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 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등록번호만 기입하는 경우 성별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성별 구분항목 추가하는 한편 종업원 수도 남녀 구분 가능한 서식으로 변경하여 성별 분리 통계 활용을 용이하게 함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산업구조와 경영실태, 여성경영자 기업의 조사 시 성별 항목을 추가 조사하여 관내 산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를 생산 및 활용하도록 개선
- 향후 수요도 및 만족도 조사 시 응답자의 성별구분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성별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하고 다양한 업종 종사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넓힘

▶ 홍보방식 다양화

- 여성의 경우 주변 사람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기업인 육성방안으로 마련된 ‘여성기업인을 위한 간담회’를 기금 지원 전에 열어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지원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율을 높임
-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인의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여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한 홍보로 기업인이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홍보방법인 홈페이지 공고(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신문보도, 우편물 발송, 주민센터 게시판 홍보 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역사, 병원, 취업정보센터 등에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상시적인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현재 ○○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존재하지만 링크메뉴가 눈에 띄지 않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찾기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내 기업 정보 및 각종 지원 시책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도록 최신 자료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함

▶ 사업수행방식 개선

- 지원 시기 조정을 통한 지원 기회의 확대
 - : 매년 신청시기가 유동적이며 연 2회 시행하고 있어 신청시기예측이 불가하거나 놓친 경우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분기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년 4회) 신청 시기를 ‘매 분기 초 15일 이내 신청’ 등 신청 시기를 예측하기 쉽게 정하여 기업인들의 경영 계획에 맞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신청 절차 간소화
 - : 응자신청을 위해서는 응자신청서에 은행에서 담보력을 확인을 받은 후

구청에 구비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은행에 제반 서류를 갖추고 담보 물건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응자 신청·접수를 할 수 있게 하고, 은행에서 담보력에 대한 확인 후 접수한 서류를 구청으로 이송하도록 하면, 서류를 송부 받은 구청 담당직원은 현장 확인을 통한 실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응자 신청을 마칠 수 있음. 이를 통해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던 여성기업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신청서류 및 사후관리 보고 서류 작성 컨설팅

: 일부 기업인들이 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청서류 및 사후관리 보고 서류 작성을 도울 수 있는 안내서를 작성하고 응자지원 신청 시 사후관리 보고 서류 작성에 대하여 컨설팅 해줌으로써 서류 작성에 관한 부담감 해소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소관 부처/ 부서명	부처명: ○○구청 부서명: 산업환경과 성 명: /직급: 전화번호:
작성자	부서명: 성 명: /직급: 전화번호:

참 고 문 헌

- 김경희(2005)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 주류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 김경희 외(2011)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김근세 · 김양희 · 송인자 · 김대건(2010)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양희(2008) “한국의 성 주류화 제도와 과제”,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2008. 4. 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마경희 · 송인자 · 김효선(2009),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역량 진단 및 교육안 개발 부록: 성인지 예산 강의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유경·전기택 (2001) 「성인지적 통계 생산방안: 행정부문」 서울: 여성부.
- 문유경·주재선 외 (2004) 「성인지통계혁신전략」. 서울: 여성부.
- 문유경·전기택·주재선 (2006) 「남녀별 통계 국제적 추진실태 비교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문유경 · 전기택 · 주재선(2007) 「통계법 개정에 따른 성별통계 활성화 방안」 서울: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0),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석재은외(2008)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성 불평등영향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송인자외(2006) 「성별영향평가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 윤영진 · 이재인 · 이재원 · 김은정. 2008.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05~2011),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해당연도),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6), 「성별영향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2010),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센터(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

서 작성메뉴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센터.

여성가족부(2011), 여성친화지정도시 이행점검 및 컨설팅,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통계청(2011)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 안내서.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이은아(2007) “젠더와 여성정책”, 이재경 외, 『여성학』 11장, 미래M&B.

이재경·정진주·이은아·유정미(2009) 대 「학(원)생을 위한 성 주류화 정책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부.

전기택·주재선·정윤지(2008) 「성별통계 생산활용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여성부.

정경아 외(2006),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정진주외(2008)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산재보험급여의 성불평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진주·김형렬·임준·정최경희·나성은(2008) 「산재보험급여 지급의 성불평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정원·김경희·송인자·김안나(2008)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국내·외 우수사례집 개발」.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과정 1기」 교육 교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 「2012년 법령 제·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교육」 교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허라금·강선미·정진주·정미숙(2009) 「KOICA ODA 성주류화 방안 연구」 한
국국제협력단

BMFSFJ, Working Aid: Gender Impact Assessment – “Gender Mainstreaming and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2007
Development for Women and Men, Salzburg.

Evaluation der Wirksamkeit des Gleichstellungsgesetzes, im Auftrag des Bundesamtes für Justiz. Büro. 2005
Gender Practice and Criteria in Spatial Planning. Salzburg.

Hedman, B., Perucci, F., and Sundström, P. 1996. Engendering

- Statistics: A Tool for Change. Stockholm: Statistics Sweden.
- Jafar, N.2009. "Gender Indicators in Evidence-based Policymaking" Paper presented at GLOBAL FORUM ON GENDER STATISTICS(Accra, 26–28 January 2009).
- Land SALZBURG(Ed), (2006): Requirement oriented spatial planning.
- Office for Women' Affairs & Gender Equality, (2006), Gender Alp!. Spatial
- PROJECT MANAGEMENT AUSTRIA – PMA-Austria: (2006) : Project – management baseline. Knowledge elements on project and programm management and for the management of project oriented organisations. Vienna.
- Rake, K.(2000), "Into the Mainstreaming?: Why gender audit is an essential tool for policymakers?", New Economy, London School of Economics.
- United Nations. 2006.The World's Women2005: Progress in Statistics. New York: United Nations.
- UNECE.2008. "What Is Gender Statistics And Gender Analysis?" Paper presented at Work session on gender statistics(Geneva, 6–8 October 2008).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현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보건복지부,<http://www.frauen-aktiv.de/aktiv/2/amster2.php>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220251&SEARCHKEY=&SEARCHVALUE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1.jsp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교재 **- 강사용 -**

2012년 4월 6일 인쇄

2012년 4월 6일 발행

발행인 : 김 금 래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특별시 종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전화 / 02-2075-4500(代)

인쇄처 : 삼신인쇄

전화 / 02-2285-6477~9(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257-01

